

발 간 등 록 번 호

11-1480000-100066-01

www.me.go.kr



# 2025 질의회신 사례집

2025. 7.



환경부



## 일러두기

본 사례집에 수록된 민원 질의·회신 사례는 최근 3년간(2023~2025) 우리 부에 제기된 질의 가운데 주요하고 질의 빈도가 높아 민원 업무에 참고가 될 만한 사항들을 일부 수정·편집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일반화하거나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 또는 각종 신고 및 불복 등의 근거자료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질의회신 내용이 제도·지침 등의 변경으로 현 시점에서는 다소 해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수사결과 등에 따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참고용으로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I

## 기후변화

### 기후전략과

01. 기후 위기 대응 정책 .....	2
02.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관련 .....	3
03. 지자체 탄소중립 기본계획 및 온실가스 배출량 확인 .....	4
04. 지방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및 탄소중립 지원센터 설립 .....	5
05.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대상 기준 .....	6
06. 공공부문 온실가스 기준배출량 설정 및 조정 기준 .....	7
07. 공공부문 외부감축사업 실적 사용을 위한 등록 승인 기준 .....	8
08. 냉매사용기기의 냉매관리기록부 작성·보존에 관한 문의 .....	9
09. 냉매관리기록부 제출 방법 및 관련 규정 확인 방법 문의 .....	10
10. 20RT 미만 냉동기의 냉매 회수·처리 확인에 관한 사항 .....	11
11. R22 냉매를 이용하는 냉동·냉장고의 교체 필요 여부 .....	12
12. 소화약제 사용 수소불화탄소(HFCs) 물질 전환 계획 .....	13

### 기후경제과

13.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시 배출량 차감 인정 절차 .....	14
14. 배출권거래제 조직경계 결정방법 .....	15
15.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시 연료별 발열량 적용 기준 .....	16
16.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제외 관련 .....	17
17. 바이오가스 사용자에게 부여하는 Scope1 차감 혜택 .....	18
18. 할당대상업체 지정 기준 .....	19
19. 배출권 할당 취소 사유 발생일 기준 .....	20
20.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기간 및 거래방법 .....	21
21. 온실가스 배출권 이월 조건 .....	22
22. 유상할당 경매 .....	23
23. 메탄의 감축량만큼 탄소배출권을 부여 가능 여부 .....	24



## 기후적응과

24.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관련 문의	25
25.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분야 포인트 및 인센티브 문의	26
26.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분야 참여 신청 및 포인트·인센티브 지급 문의	27
27. 탄소중립포인트(녹색생활 실천) 제도 참여 방법	28
28. 탄소중립포인트(녹색생활 실천) 실천 항목	29
29. 탄소중립포인트(녹색생활 실천) 소상공인 인센티브	30
30. 탄소중립포인트(녹색생활 실천) 기업 참여 방법	31
31. 그린카드 적립 문의	32
32. 탄소중립 실천 관련 정보 확인 방법	33
33. 기후변화주간 행사 관련 문의	34
34. 생활실천 안내서 관련 문의	35
35. 기후변화 대응의 개념	36
36. 국민 실천적 기후위기 적응 방법 문의	37
37. 지역 차원의 기후위기 적응 대책 문의	38
38.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 여부① (규모 산정)	39
39.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 여부② (적용 시점)	40

## II

## 녹색전환

## 녹색산업혁신과

01. 환경전문공사사업자의 업무 범위 관련 문의	42
02. 대기관리기술사의 대체인력 인정 가능 여부	43
03. 환경전문공사 해당 여부	44
04. 환경컨설팅회사의 업무범위	45
05. 환경컨설팅회사의 인력요건 문의	46

### 녹색기술개발과

06. 측정대행업 기술인력 등록 관련 문의①	47
07. 측정대행업 기술인력 등록 관련 문의②	48
08. 측정대행업 기술인력 등록 관련 문의③	49
09. 환경분야 시험·검사의 표준처리기간 관련 문의	50
10. 측정대행업 기술인력 휴직 시 대체인력 보완 관련 문의	51

### 통합허가제도과

11. 통합허가 대상 문의	52
12. 통합환경관리인 선임 자격 및 조건	53
13. 통합허가 신고 전 사전협의 절차 문의	54
14. 통합허가 전 시설 설치 가능 여부	55
15. 통합허가사업장으로서 개별법 운영일지 작성 여부	56
16. 통합허가 시 최초 자가측정 시기 주기 적용 기준 문의	57
17. 복합업종 사업장의 통합허가 대상 여부에 관한 질의	58
18. 허가재검토 주기 산정 기산일에 대한 질의	59
19. 시설 설치 또는 변경 시 가동개시 신고 관련 문의	60
20. 가동개시 신고 내용과 현장의 불일치에 대한 질의	61
21. 자체 개선계획서 제출 사유 발생 시 통지 시점 관련 질의	62
22. 통합허가사업장 정기검사 주기 결정 및 통보에 대한 질의	63
23. 연간 보고서 작성방법 및 제출 절차에 관한 질의	64

### 환경교육팀

24. 친환경 표시·광고 문구 사용의 기준	65
25. 환경표지의 인증 절차	66
26. 재활용 소재 적용 제품의 환경성 표시·광고 및 사전검토 관련	67
27. 환경교육사 교육기관 운영 관련 문의	68



Ⅲ  
**대기환경**

**대기미래전략과**

- 01. 저공해자동차 표지 발급 대상 및 혜택 ..... 70
- 02.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임차제 대상기관 관련 문의① ..... 71
- 03.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임차제 대상기관 관련 문의② ..... 72
- 04. 의무 구매·임차 실적 달성 기준 ..... 73
- 05. 생애 최초 청년 전기차 구매 대상 ..... 74
- 06. 다자녀가구 전기차 구매 시 지원 기준 ..... 75
- 07. 수소차 보조금 환수액 적용 기준 ..... 76

**대기관리과**

- 08. 대기환경기술인 교육 관련 문의 ..... 77
- 09. 대기배출허용기준 적용 관련 문의① ..... 78
- 10. 대기배출허용기준 적용 관련 문의② ..... 79
- 11. 대기전문공사업 시공 관련 문의 ..... 80
- 12. 적산전력계 부착 대상 관련 문의 ..... 81
- 13. 대기배출시설 운영기록부 작성 관련 문의 ..... 82
- 14.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부 작성 방법 ..... 83
- 15. 비산배출시설 설치 신고 대상 여부 ..... 84
- 16. 젤 타입 연료의 사용금지 고체연료 해당 여부 ..... 85

**교통환경과**

- 17. 제작차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보증기간 문의 ..... 86
- 18.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가능 대수 ..... 87
- 19. 공동명의 차량의 조기폐차 지원 가능 여부 ..... 88
- 20. 공동명의 차량의 소상공인 추가 지원 가능 여부 ..... 89
- 21.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 대상 여부 ..... 90
- 22.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관련 문의 ..... 91
- 23.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관련 문의 ..... 92

### 생활환경과

24. 신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측정 시기	93
25. 건축자재 사용제한 관련 문의	94
26.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의 교육	95
27. 폐업 예정 시 실내공기질 측정 의무	96
28. 실내공기질 측정 대상	97
29. 사업장 실외기 소음 규제	98
30. 종교시설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관련 민원	99
31. 위층 아파트 실외기 소음의 층간소음 해당 여부	100
32. 규모 미만 소음 배출시설의 설치에 관한 문의	101
33. 병원 광고 조명의 「빛공해방지법」 적용 여부	102

### IV

### 수자원

### 수자원개발과

01.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지원 대상	104
02.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지원금 배분기준	105
03. 수상 레저사업 점용허가에 관한 사항	106

### 하천계획과

04. 하천의 구분	107
05. 하천기본계획의 변경 절차 관련 문의	108
06.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관련 문의	109

### 하천안전팀

07. 하천점용허가 대상 여부 문의①	110
08. 하천점용허가 대상 여부 문의②	111
09. 하천구역 내 행위의 불법 여부①	112
10. 하천구역 내 행위의 불법 여부②	113



**V**  
**물환경**

**물환경정책과**

- 01. 낚시제한구역에 관한 문의 ..... 115
- 02.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 여부 ..... 116
- 03. 비점오염원 변경신고 대상 여부 ..... 117
- 04. 비점오염저감시설 공동사용 가능 여부 ..... 118

**수질수생태과**

- 05. 환경기술인의 보수교육 주기 ..... 119
- 06. 환경기술인 선임 기준 ..... 120
- 07. 환경기술인의 이직 시 교육 이수 관련 문의 ..... 121
- 08. 제조공정 내 냉각수 적정 처리 방법 문의 ..... 122
- 09. 레미콘 펌프카의 폐수배출시설 신고 대상 여부 및 유출 시 위반 여부 .. 123
- 10. 기타수질오염원 해당여부 문의 ..... 124
- 11. 폐수배출시설 운영일지 작성 관련 문의 ..... 125
- 12. 공장 내 순수(RO정제수)제조장치에서 발생한 폐수 재활용 가능 여부 ... 126
- 13.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 대상 여부 ..... 127
- 14. 완충저류시설 기술진단 대상 여부 ..... 128
- 15. 폐수배출시설 적산유량계 부착 대상 ..... 129
- 16. 수질배출부과금 산정 기간 ..... 130
- 17. 완충저류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문의 ..... 131
- 18. 유기견 보호센터의 「가축분뇨법」 적용 문의 ..... 132
- 19.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신고)규모 산정 ..... 133
- 20. 가축분뇨 자원화시설을 임차하여 재활용 신고 가능 여부 ..... 134
- 21. 화재로 소실된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재축 가능 여부 ..... 135
- 22. 「가축분뇨법」 상 제외되는 가축의 분뇨처리 ..... 136

### 생활하수과

23. 하수처리시설의 구분 관련 문의 .....	137
24. 공공하수도 설치인가 변경 대상 여부 .....	138
25. 공공하수도 사용 지역의 개인하수처리시설 폐쇄 의무 관련 문의 .....	139
26. 정확조 폐쇄 가능 여부 .....	140
27. 증축에 따라 변경된 오수발생량 산정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	141
28. 방류수수질기준 초과 시 과태료 부과 대상 .....	142
29. 대표이사의 기술인력 등록 가능 여부 .....	143
30. 타행위 원인자부담금 부과 기준 .....	144
31. 공공하수도 준설공사 자격 기준 .....	145
32. 하수도 설치를 위한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기준에서 지하시설물 대상범위 .....	146
33. 아파트 신축 시 오수발생량 산정 방법 .....	147
34. 주방용 오물분쇄기 설치 가능 여부 .....	148
35.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사용금지」 제2조의 일반가정의 공동주택 포함 여부 .....	149
36. 기술진단의 대행 금지에 관한 질의 .....	150
37.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 점검의 평가 세부 항목 기준 .....	151
38.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수질검사 주기 .....	152
39.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 범위 및 확인 방법 .....	153
40. 민간의무생산자의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 달성 방법 .....	154



**VI**  
**물이용**

**물이용정책과**

- 01. 샤워기 헤드 및 교체필터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대상 여부 ..... 156
- 02. 수도용 외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대상 여부 ..... 157
- 03. 정수시설에 사용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대상 여부 ..... 158
- 04. 일반 건축물의 수도용 자재나 제품 관련 문의 ..... 159
- 05. 다중이용시설 내 정수기 설치 신고 관련 문의 ..... 160
- 06. 다중이용시설 내 정수기 관리주체 및 관리 방법 ..... 161
- 07. 정수기 수질기준 문의 ..... 162
- 08. 정수기 설치금지 장소 ..... 163
- 09. 정수기 필터의 인증 등 대상 여부 ..... 164

**수도기획과**

- 10. 공장설립승인제1호지역 내 공장 설립 가능 여부 ..... 165
- 11. 공장설립제한지역 및 공장설립승인지역 관련 문의 ..... 166
- 12. 공장설립제한지역 내 공장부지 증설 가능 여부 ..... 167
- 13.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허가기준 관련 문의 ..... 168
- 14. 환경정비구역 내 주택의 증축 및 재축 가능 여부 ..... 169
- 15. 환경정비구역 내 가설건축물 신축 가능 여부 ..... 170
- 16. 공장설립제한지역 내 업종 변경 가능 여부 ..... 171
- 17. 공장설립제한지역 내 시설 설치 가능 여부 ..... 172
- 18. 상수원보호구역 내 벌채 가능 여부 ..... 173
- 19. 공장설립승인제2호지역에서 가능한 제조업 범위 ..... 174
- 20. 수도용 자재 및 제품 위생안전기준 미인증 제품 신고 관련 문의 ..... 175
- 21. 저수조 설치 시 이격거리 기준 문의 ..... 176
- 22. 저수조 소독 등 위생조치 대상 ..... 177
- 23. 저수조청소업 기준 ..... 178
- 24.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 ..... 179

25. 절수설비의 절수 등급 및 표시에 관한 기준 관련 .....	180
26. 절수설비 설치 의무 대상 관련 .....	181
27.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시 상수도관망관리 대행업 기술 인력 변경 조치 .....	182
28. 현장제조염소 사용 시 자가품질검사 관련 문의 .....	183
29.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시행 관련 문의 .....	184
30.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등록 요건 .....	185

### 토양지하수과

31.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기술 인력 .....	186
32. 유출지하수 관련 건축물 기준 .....	187
33. 수질분석기관 기술인력 관련 .....	188
34. 먹는샘물(생수) 내 침전물 .....	189
35. 지하수 관정 폐공 및 신고 절차 .....	190
36. 지하수 수질 검사 관련 문의 .....	191
37. 토양오염신고 .....	192
38. 정화토의 사용기준 .....	193
39.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도 검사 주기 .....	194
40.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범위 .....	195

### VII

### 자연보전

### 자연생태정책과

01.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대상 .....	197
02. 생태계보전부담금 훼손면적 .....	198
03.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보상방식 .....	199
04. 생태·자연도 이의신청 절차 .....	200



## 생물다양성과

05. 인공증식된 멸종위기 야생생물 가공·유통·보관 .....	201
06. 생태계 교란종 지정 방법 .....	202
07. 포획된 생태계교란 생물(동물) 처리 방법 .....	203
08.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수확기 피해방지단 참여 가능 여부 .....	204
09. 수렵면허 필기시험 합격증 및 수렵 강습 이수증 유효 기간 .....	205
10. C코드 CITES 부속서 I 의 상업적 거래 .....	206
11. 동물원 허가 .....	207

## 자연공원과

12. 국립공원 내 사유지에 대한 지정 해제 요청 .....	208
13. 국립공원 내 농막 설치 가능 여부 .....	209
14. 공원자연환경지구 내 벌채 조림 및 임산물 채취 가능 여부 .....	210
15. 공원구역 변경 및 지정 해제 관련 문의 .....	211
16. 국립공원 지정 및 공원시설 조성 요건 .....	212

## 국토환경정책과

17.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	213
18.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및 변경 협의 .....	214
19. 토지이용계획 변경률 산정방법 .....	215
20. 도시개발사업 운영 시 사후환경영향조사 전환 시점 .....	216
21.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 .....	217
22. 가설건축물 단순 신고의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 .....	218
23. 조례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 .....	219
24. 건축물 연 면적에 따른 조례 환경영향평가 시 대상 면적 범위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생략 여부 .....	220
25. 자연경관영향 협의 대상 .....	221
26. 자연경관영향 협의 제외 .....	222

### 환경영향평가과

- 27. 환경영향평가 중점평가사업 ..... 223
- 28. 사전공사 사업장에 대한 협의 기준 문의 ..... 224
- 29. 환경영향평가서 등 보완 시 공휴일 및 토요일 산입 여부 ..... 225
- 30. 연안육역 포함 사업의 반려 사유 ..... 226
- 31. 생태자연도 등급의 적용 시점 ..... 227
- 32. 환경영향평가 절차 중 생태자연도 변경 고시의 적용 여부 ..... 228
- 33. 환경영향평가 취하 후 재평가 시 기존 자료 활용 여부 ..... 229
- 34. 열병합발전소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유효 기간 ..... 230

### VIII

### 자원순환

### 자원순환정책과

- 01. 과대포장 과태료 관련 문의 ..... 232
- 02. 포장제품의 재포장 관련 문의 ..... 233
- 03. 폐기물 해당 여부 문의 ..... 234
- 04. 순환자원 인정된 원료의 식품원료 사용 가능 여부 ..... 235
- 05. 순환자원 인정 신청 가능 여부 ..... 236

### 폐자원관리과

- 06. 폐기물처리업 적합성확인제도의 유효기간 산정 ..... 237
- 07. 건설폐기물 처리비용 부담주체 ..... 238
- 08. 건설폐기물 외부 보관 가능 여부 ..... 239
- 09. 순환골재 재사용 가능 여부 ..... 240
- 10. 과거 매립된 폐기물의 처리 ..... 241
- 11. 폐기물의 분류 ..... 242
- 12. 사업장폐기물 공동처리 관련 ..... 243



13.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대상 여부 .....	244
14. 지정폐기물 처리종류 문의 .....	245
15.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 대상 문의 .....	246
16. 의료폐기물 발생 기관 해당 여부 문의 .....	247

### 생활폐기물과

17. 폐기물재활용업 허가 업체의 생활폐기물 처리 관련 .....	248
18. 지방자치단체의 생활폐기물 처리대행 자격 관련 .....	249
19. 폐기물 수출입 자격 요건 .....	250
20. 폐기물 수입 시 방사성물질 비오염 확인서류 관련 문의 .....	251
21.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 문의 .....	252
22. 공공재활용기반시설 지하화 문의 .....	253
23. 공공재활용기반시설 운영위탁 자격 문의 .....	254
24. 광학선별기 범위에 관한 질의 .....	255
25. 업소용 음식물류폐기물 처리기의 배출방식 .....	256
26.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방법 .....	257

### 자원재활용과

27. 폐기물처리업에 등록된 자가 차량 이용범위 .....	258
28. 폐기물처리업(재활용업) 변경허가 대상 여부 .....	259
29. 종합재활용업에서 가공시설을 폐쇄하고 중간가공폐기물만 생산하는 경우 허가사항 .....	260
30. 일반식품 제조시 PVC 포장재 사용 가능 여부 .....	261
31. 성토재·복토재로 사용 가능 여부 .....	262
32. 부숙토나 지령이 분변토를 일반 농지에 사용 가능 여부 .....	263
33. 재활용환경성평가 대상 여부 .....	264
34.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분담금과 부과금의 차이 .....	265
35. 업소용 빈용기의 회수의무 주체 .....	266
36. 포장재·제품을 주문제작(주문자상표부착, OEM)하여 판매할 경우 재활용의무 주체 .....	267

## 폐자원에너지과

- 37. 폐기물처리시설 현황 확인방법 ..... 268
- 38. 주변영향지역 중 간접 영향권 범위 ..... 269
- 39.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의미 ..... 270
- 40. 주변영향지역으로 이사 온 주민에 대한 지원 ..... 271
- 41. 고품연료제품과 가축분뇨의 혼합 제조 가능 여부 ..... 272

## IX

## 환경보건

## 환경보건정책과

- 01. 어린이활동공간 실내공기질 안전기준 ..... 274
- 02.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 275
- 03.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함유 표시제도 ..... 276

## 환경피해구제과

- 04.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지정 및 관리 ..... 277
- 05. 석면비산정도 측정을 위한 석면건축자재 면적 계산 ..... 278
- 06. 폐석면 임시보관장소 석면비산정도 측정 ..... 279
- 07. 우천 시 석면해체·제거 작업에 따른 석면 시료채취 여부 ..... 280
- 08.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인 지정 기준 및 감리원 배치기간 ..... 281
- 09.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관련법 적용 여부 ..... 282
- 10.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지원신청 절차 ..... 283
- 11. 환경책임보험 가입 및 납부 주체 ..... 284
- 12. 환경책임보험 가입대상 시설 및 보장 범위 ..... 285
- 13. 인·허가 변경사항 발생 시 환경책임보험 갱신 시기 ..... 286
- 14. 휴업 사업장의 환경책임보험 가입 의무 발생 여부 ..... 287



## 화학물질정책과

- 15.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작성대상 ..... 288
- 16. 유독물질 수입신고 면제 기준 ..... 289
- 19. PCBs 함유기기 폐기 관련 문의 ..... 292
- 20. 국내 과불화합물 국내 규제 질문 ..... 293

## 화학제품관리과

- 21.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대상 여부 문의 ..... 294
- 22. 살생물제품 승인 유예기간 문의 ..... 295
- 23. 살생물제품 판매 유예기간 문의 ..... 296
- 24. 화학제품안전법 적용 범위 ..... 297
- 25.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 표시·광고 문의 ..... 298
- 26. 생활화학제품 표시·광고 제한 여부 ..... 299
- 27. 생활화학제품 필수 표시사항 문의 ..... 300

## 화학안전과

- 28.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여 제품 제작 시 영업의 구분 ..... 301
- 29. 유해화학물질 상·하차 시 입회자 범위 ..... 302
- 30. 유해화학물질을 포함한 지정폐기물 취급 과정 중의 「화학물질관리법」  
적용 범위 ..... 303
- 31. 화학사고 즉시 신고 대상 ..... 304
- 32. 화학사고 즉시 신고 시점 ..... 305
- 33. 유해화학물질 표시 기준 ..... 306
- 34.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점검 ..... 307
- 35. 「화학물질관리법」 적용 범위 ..... 308
- 36.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대상 ..... 309

# I

## 기후변화

2025 질의회신 사례집

1. 기후전략과
2. 기후경제과
3. 기후적응과

# 01

## 기후 위기 대응 정책

분야 기후변화

담당 부서 기후전략과

### 질의내용



☑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추진 중인 정책이 무엇이 있나요?

### 답변



- 정부는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3년 4월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 동 국가 기본계획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원전과 재생에너지가 조화되는 저탄소 에너지 전환을 토대로 산업 부문의 탄소 감축 혁신기술을 도입하고, 전기차·수소차 등 무공해차 중심의 수송 체계로 전환하며, 폐기물을 자원으로 하는 순환 경제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탄소포집·활용·저장(CCUS)과 국제감축 사업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중장기 감축목표 및 국가 기본계획에 대해 매년 이행점검을 실시하여 이행력을 제고하는 등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 계획의 세부적인 내용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홈페이지([www.2050cnc.go.kr](http://www.2050cnc.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제7조 및 제10조

## 02

#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관련

분야 기후변화

담당 부서 기후전략과

## 질의내용



☑ 기후 위기의 주요 원인인 온실가스의 우리나라 배출량이 줄어들고 있나요?

## 답변



-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산업화 및 경제발전으로 인해 '18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다가 '19년부터는 감소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 특히, '22년도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724.3백만톤으로 '18년 대비 7.6%, 전년 대비 2.3% 감소하였습니다.
- 이는 배출권거래제, 무공해차 보급 등 국내의 온실가스감축 정책이 충실히 이행되었기 때문입니다.
- 연도별·부문별 상세 온실가스 배출량과 주요 증감 원인에 대한 자료는 '온실가스종합정보 센터 홈페이지([www.gir.go.kr](http://www.gir.go.kr))>정보마당>온실가스 통계'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제7조 및 제10조

# 03

## 지자체 탄소중립 기본계획 및 온실가스 배출량 확인

분야 기후변화

담당 부서 기후전략과

### 질의내용



- ☑ 전국 지자체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 지자체별 온실가스 배출량은 어디에서 확인 가능한가요?

### 답변



- 전국 지자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은 탄소중립정책포털(<https://www.gihoo.or.kr>, 정책정보-탄소중립기본계획)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전국 지자체별 온실가스 배출량(연단위)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www.gir.go.kr>, 정보마당-온실가스통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제11조 및 제12조

# 04

## 지방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및 탄소중립 지원센터 설립

분야 기후변화

담당 부서 기후전략과

### 질의내용



- ☑ 시·군·구에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또는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설립 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를 알려주세요.

### 답변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제2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지방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기능 등 필요한 사항은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자체의 관련 조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제68조에 따른 탄소중립 지원센터는 · 시행령 제63조 및 탄소중립 지원센터 지정·운영 지침('24.7)\*에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니 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환경공단-핵심사업-기후대기 - 온실가스감축정책지원 - 지자체탄소중립지원자료실에 지침 게시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제22조 및 제68조

# 05

##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대상 기준

분야 기후변화

담당 부서 기후전략과

### 질의내용



☑ 공공기관 지정 해제 시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이행 대상에 해당되나요?

### 답변



-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공공기관 지정 해제된 경우 제도 이행의 법적 의무가 제외됩니다.
- 다만, 온실가스 배출 기준량 이상일 경우, 타 제도(사업장 목표관리제, 배출권거래제) 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탄소중립기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 제2024-23호) 제6조

# 06

## 공공부문 온실가스 기준배출량 설정 및 조정 기준

분야 기후변화

담당 부서 기후전략과

### 질의내용



☑ 감축 목표 기준연도 변경('07~'09년→'18년)에 따른 기준 설정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 답변



- 각 시설별 '18년도 배출량을 기준연도 배출량으로 설정하고, '19년 이후 시설 변동사항(증축, 필수설비 증가 등) 확인을 통해 산출된 조정량을 합산하여 최종 기준배출량으로 합니다.
- 이때 '18년도에 시설 개선공사 등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증빙자료(공문 등)를 구비하여 차년도 배출량으로 설정이 가능하며, 이행 연도 중 신규 진입한 경우 월별 배출량만 입력 후 평가에서 제외하고, 차년도 배출량으로 기준배출량을 설정하여 평가합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11조 및 [별표 5]

# 07

## 공공부문 외부감축사업 실적 사용을 위한 등록 승인 기준

분야 기후변화

담당 부서 기후전략과

### 질의내용



- ☑ 공공부문 및 배출권거래제 외부감축사업 간 중복문제 해소를 위한 감축 실적 배분 방안이 있나요?

### 답변



- 공공부문 외부감축사업 등록 시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공공이 투자한 비율대로 감축실적 사용이 가능합니다.('25년부터 모든 사업 적용)
  - 다만, 공공부문 외부감축사업으로 민간 비율을 포함한 전체 감축실적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민간으로부터 감축실적 활용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하여야만 전체 감축실적을 공공부문으로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기존 등록사업이 배출권거래제의 외부사업과 중복된 경우, 공공부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감축실적으로 축소 변경하여야 하며, 공공부문 투자비율을 적용한 감축실적 이상으로 이미 실적을 사용한 경우 추가 인증(사용)이 불가하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24조~29조

08

## 냉매사용기기의 냉매관리기록부 작성·보존에 관한 문의

분야 기후변화

담당 부서 기후전략과

### 질의내용



- ❑ 냉매사용기기의 유지·보수 및 냉매 회수·처리 등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 냉매관리 기록부 기록·보존 의무가 있나요?

### 답변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4조의8제3항에 따라 신규 설치, 교체 또는 폐기하는 등의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로 유지·보수 및 회수·처리 현황이 없으면 냉매 관리기록부를 기록·제출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4조의8제3항

# 09

## 냉매관리기록부 제출 방법 및 관련 규정 확인 방법 문의

분야 기후변화

담당 부서 기후전략과

### 질의내용



- ❖ 냉매관리기록부는 어느 기관에 어떤 절차로 제출하며, 관리 기준이 제시된 규정 등은 어디서 확인 할 수 있나요?

### 답변



- 냉매관리기록부는 냉매사용기기 소유자 등이 작성하며, 다음 해 2월말까지 냉매정보관리 시스템(www.rims.or.kr) 입력 또는 우편 및 전자메일 등을 통해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제출처: 한국환경공단 불소계온실가스관리부
- 냉매관리제도 관련 법령 등은 냉매정보관리시스템(www.rims.or.kr)의 '제도안내' 및 '참여마당 - 자료실'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4조의8제3항

10

## 20RT 미만 냉동기의 냉매 회수·처리 확인에 관한 사항

분야 기후변화

담당 부서 기후전략과

### 질의내용



- ✓ 1일 냉동능력이 20톤 미만인 냉동기에서 회수·처리한 냉매에 대한 확인서 발급 주체 등을 알려주세요.

### 답변



- 1일 냉동능력이 20톤 미만인 냉매사용기기에서 회수한 냉매의 회수·처리확인서 발급 주체 및 양식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다만, 1일 냉동능력이 20톤 미만인 냉매사용기기에서 회수한 냉매가 폐냉매로 판단될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18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해당 법령에서 규정하는 세부 사항을 참고해야 합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의11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5의2]

# 11

## R22 냉매를 이용하는 냉동·냉장고의 교체 필요 여부

분야 기후변화

담당 부서 기후전략과

### 질의내용



- ✓ R22 냉매를 이용하는 냉동·냉장고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키갈리 개정서’에 따라 2030년 전까지 해당 냉장·냉동고 교체 여부 및 법적 근거를 알려주세요.

### 답변



- R-22 냉매의 경우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 물질로서,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 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라 다음과 같이 2030년의 생산량과 소비량 기준한도가 공고되어 있습니다.
-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특정물질(HCFC류)의 생산량 및 소비량 기준한도’가 공고(환경부공고 제2012-518호,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0-219호)되어 있으며, 2030년부터는 특정물질(HCFC류)의 생산량 및 소비량이 각 0으로 공고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 12

## 소화약제 사용 수소불화탄소(HFCs) 물질 전환 계획

분야 기후변화

담당 부서 기후전략과

### 질의내용



-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수소불화탄소 관리제도 개선방안(’24.12, 관계부처합동)」에 포함된 제품군별 물질 전환 일정(안)에 따른 소화약제 물질 전환 계획이 있나요?

### 답변



- HFC-23 소화약제는 2028년, HFC-227ea와 HFC-125 소화약제는 2030년 이후 신규로 제작·판매되는 소화기 및 소화시설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기존에 설치된 HFC계열의 소화약제 시스템에 HFC-23, HFC-227ea, HFC-125 소화약제를 보충·사용하는 것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수소불화탄소 관리제도 개선방안(’24.12, 관계부처합동)’ [붙임1]

# 13

##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시 배출량 차감 인정 절차

분야 기후변화

담당 부서 기후경제과

### 질의내용



- ☑ 타 기업 제조공정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상품으로 활용 시 배출량을 차감받는 절차와 실제 배출량 차감을 인정받은 사례가 있나요?

### 답변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이하 '인증지침') [별표 6] 배출활동별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세부산정방법 및 기준 「41. 이산화탄소 포집, 이동 저장 및 활용」에 따라 배출량 차감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산화탄소 포집, 이동 저장 및 활용 배출시설은 할당대상업체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가 순수한 물질로 사용되거나 생산품, 원료로 사용 또는 결합되는 경우와 격리시설에 저장한 경우에 한하여 그에 따른 포집 방법과 인증지침에서 정한 이산화탄소 사용시설에서 사용되는 사용량의 증빙(명세서 제출 시)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포집한 할당대상업체 또는 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차감하며, 이산화탄소 포집 및 이동에 관한 구체적인 명세서 작성 방법은 「배출권거래제 명세서 작성 가이드라인」 제3장 명세서 작성방법(이산화탄소 포집 및 이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인증지침 [별표 6] 배출활동별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세부산정방법 및 기준 「41. 이산화탄소 포집, 이동 저장 및 활용」에서 배출량 차감을 인정하고 있는 8가지 사용시설은 모두 배출량 차감 받은 사례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별표 6] 41.이산화탄소 포집, 이동 저장 및 활용

# 14

## 배출권거래제 조직경계 결정방법

분야 기후변화

담당 부서 기후경제과

### 질의내용



- ❖ 할당대상업체 건물 내 공공부문 목표관리업체가 임차하는 경우 배출량 제외가 가능한지, 할당대상업체 건물 내 목표관리업체 및 할당대상업체가 임차하는 경우 냉난방 가스사용량(LNG, LPG)을 건물소유주 조직경계에서 제외 가능한가요?

### 답변



-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8조제3항의 규정으로 보아 임차인인 공공부문 목표관리업체의 배출량은 임대인인 할당대상업체의 배출량에서 제외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12조제4항 및 제61조제2항의 규정으로 보아 할당대상업체 건물 내에 임차하고 있는 할당대상업체 및 관리업체의 냉난방용 기체연료 사용량(LNG, LPG 등)은 임대인인 할당대상업체의 배출량에서 제외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이 경우에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별표 4] 규정에 따라 제외하는 조직경계에 대하여 운영통제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해당 배출시설, 에너지 사용시설에 대한 정보 및 활동자료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하고, 조직경계 제외에 대한 타당한 사유를 배출량 산정계획에 포함·제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별표 4]

# 15

##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시 연료별 발열량 적용 기준

분야 기후변화

담당 부서 기후경제과

### 질의내용



-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별표 12]의 '연료별 국가 고유 발열량'과 「에너지법 시행규칙」 [별표] '에너지열량 환산기준'에 따른 에너지원별 발열량이 상이한데 어느 기준을 적용해야 하나요?

### 답변



- 「에너지법 시행규칙」 [별표] '에너지열량 환산기준'에 따른 에너지원별 발열량은 에너지 수급에 관한 통계 작성 시 적용하며, 할당대상업체가 산정등급 2(Tier 2)에 따라 배출량 등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 제2023-221호)」 제15조제2항에 따라 [별표 12]의 '연료별 국가 고유 발열량'을 적용·산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제15조제2항

# 16

##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제외 관련

분야 기후변화

담당 부서 기후경제과

### 질의내용



- ☑ 재생에너지 사용확인서를 발급받아 온실가스 감축실적으로 활용하려는 경우 해당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량에 대한 온실가스 간접배출량을 제외할 수 있다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이하 ‘인증지침’) 제18조제6항에 대해 해석해주세요.

### 답변



-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간접배출량에 관한 세부 산정방법 및 기준은 인증지침 [별표 6]의 ‘39. 외부에서 공급된 전기사용’에서 정하고 있으며, Scope2(전력)에 대하여 배출량 산정을 제외할 수 있고 전력 사용 외 Scope1(병커C유) 및 Scope2(외부스팀) 배출량 등은 산정하여야 합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제18조제6항

# 17

## 바이오가스 사용자에게 부여하는 Scope1 차감 혜택

분야 기후변화

담당 부서 기후경제과

### 질의내용



- ☑ 폐수처리 후 발생하는 슬러지를 이용한 바이오가스에 대해 배출량 산정 제외가 가능한가요?

### 답변



- 바이오매스 사용에 따른 이산화탄소의 직접배출량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제18조에 따라 배출량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이산화탄소 이외의 기타 온실가스는 총배출량 산정에 포함합니다.
- 따라서, 배출권거래제 상에서는 폐수처리 공정에서 슬러지의 소화 공정 등을 통해 생성된 바이오가스를 연료 연소에 사용할 경우, 사용자의 바이오가스 사용량을 토대로 이산화탄소 직접배출량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별도의 배관을 이용하여 정도관리를 받은 유량계를 통해 활동자료를 수집한 후 배출량 산정을 할 수 있으며, 바이오가스 중 바이오 외 성분의 혼입 여부 및 계측 지점 등의 현장 검증 등을 진행하여 배출량을 산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제18조

# 18

## 할당대상업체 지정 기준

분야 기후변화

담당 부서 기후경제과

### 질의내용



☑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의 지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답변



- 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125,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sub>2</sub>-eq) 이상인 업체이거나 25,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sub>2</sub>-eq) 이상인 사업장을 하나 이상 보유한 업체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업체는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 직전 계획기간 당시 할당대상업체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관리업체
    - \* 최근 3년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50,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sub>2</sub>-eq) 이상인 업체이거나 5,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sub>2</sub>-eq) 이상인 사업장을 하나 이상 보유하고 있는 업체
- 또한 상기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체 중에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받기 위하여 신청한 업체로서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 19

## 배출권 할당 취소 사유 발생일 기준

분야 기후변화

담당 부서 기후경제과

### 질의내용



-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라 배출권 할당의 취소사유가 발생한 할당대상업체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함, 배출권 할당의 취소사유 발생일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답변



- 사업장 폐쇄 및 할당량 대비 배출량 감소 사유 발생 시\* 취소사유를 1개월 이내에 보고하지 않은 사업장은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25.2.7.)에 따라, '사유발생일'은 취소사유통보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준일로 아래와 같이 정의됩니다.
  - 법 제17조제1항제2호(사업장 폐쇄)의 경우 할당단위 사업장이 물리적으로 제거되거나 온실가스 배출활동이 중지된 날.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장 폐쇄일 입증을 위한 증빙자료를 기한 내 준비하기 어려운 경우 이행연도 명세서 제출 기한
  - 법 제17조제1항제3호(배출량 감소)의 경우 이행연도 명세서를 제출하거나 이행연도 배출량 인증결과를 통보받은 날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제2조

# 20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기간 및 거래방법

분야 기후변화

담당 부서 기후경제과

### 질의내용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에 관한 세부 사항(거래기간, 거래방법)을 알려주세요.

### 답변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기간
  - 온실가스 배출권 매매거래기간은 계획기간이 시작되는 최초 매매거래일부터 해당 이행연도 다음해의 8월 31일(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 직전 매매거래일)까지입니다.
  - 즉, 2025 이행연도 배출권(KAU25)는 3차 계획기간('21~'25)이 시작되는 2021년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 거래가 가능합니다.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방법
  - 배출권의 거래방법은 배출권 거래소(한국거래소)를 통한 장내거래와 거래 당사자 간의 장외거래로 구분되며, 배출권 장외거래를 한 경우 거래신고서 및 양도인과 양수인 간 배출권 거래 합의 공증서류 등을 전자적 방식을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할당대상업체가 합병·분할하거나 해당 사업장 또는 시설을 양도·임대한 경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라 관계된 할당대상업체 간 배출권 이전이 가능합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25-23호)」

# 21

## 온실가스 배출권 이월 조건

분야 기후변화

담당 부서 기후경제과

### 질의내용



☑ **할당대상업체의 온실가스 배출권 이월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3차 계획기간 5차 이행연도('25년) → 4차 계획기간 1차 이행연도('26년)]

### 답변



- 해당 업체의 5차 이행연도 배출권(KAU25)과 상쇄배출권(KCU25) 순매도량\*의 5배만큼만 이월 가능하며, 해당 이행연도의 무상할당량이 배출량보다 적은 업체의 경우, 보유한 5차 이행연도 배출권(KAU)과 상쇄배출권(KCU)이 이월 가능합니다.
  - 여기서 순매도량은 해당 업체가 제4차 계획기간으로 이월을 신청한 날의 전날까지 배출권등록부 및 상쇄등록부에 등록된 '매도량 - 매수량'이며,
  - 배출권 거래·제출 후 잔여량의 처리가 가능하도록 할당대상업체당 총 100tCO<sub>2</sub>-eq 미만의 KAU·KCU는 위 기준과 무관하게 이월 신청 시 승인이 허용됩니다.(이월 신청하지 않을 경우 소멸됨)
    - ※ KAU21~25 및 KCU21~25를 다른 계획기간의 KAU나 KCU와 교환하거나, 경매를 통해 유상할당받은 수량은 계산에서 제외
    - ※ 5차 이행연도의 KAU 및 KCU를 다른 계획기간의 KAU나 KCU와 교환한 수량은 보유량에서 제외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8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2021~2025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Ⅶ.배출권 제출의 유연성 기제)

# 22

## 유상할당 경매

분야 기후변화

담당 부서 기후경제과

### 질의내용



- ✔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경매)에 관한 세부사항을 알려주세요.  
(경매참가자격, 경매주기, 입찰방법)

### 답변



-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경매)의 참가 자격은 「배출권 유상할당 및 시장안정화 조치를 위한 배출권 추가할당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 경매 주기는 매월 1회(두번째 수요일) 13:00~14:00 1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 또한, 입찰방법은 한국거래소(KRX) 배출권 거래시장 호가제출시스템(K-ETS) 내 경매 입력창을 통해 응찰 가격 및 수량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  
「배출권 유상할당 및 시장안정화 조치를 위한 배출권 추가할당에 관한 규정」 제3조,  
‘2025년도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 계획’(환경부 공고 제2024-813호)

# 23

## 메탄의 감축량만큼 탄소배출권을 부여 가능 여부

분야 기후변화

담당 부서 기후경제과

### 질의내용



☑ 직매립하는 종량제 생활쓰레기를 직매립하지 않고 고형연료로 만들 수 있는 설비로 재활용할 경우, 직매립으로 인해 발생하는 메탄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음. 해당 사업자는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자’에 포함되어 탄소배출권을 부여받을 수 있나요?

### 답변



- 외부사업은 온실가스 배출원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고형연료의 원료가 되는 생활쓰레기가 소각되지 않고 매립되었는지 증명이 필요하며,
  - 또한 매립되었을 경우 매립가스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인과적인 증명이 있을 경우 외부사업이 가능합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외부사업 타당성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제8조

# 24

##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관련 문의

분야 기후변화

담당 부서 기후적응과

### 질의내용



☑ 탄소중립포인트 제도의 분야별 운영 및 참여 방법을 알려주세요.

### 답변



- 탄소중립포인트 제도는 에너지, 자동차, 녹색생활 실천 세 분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에너지 분야는 가정, 상업에서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등 에너지 사용량 절감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자동차 분야는 매년 참여자를 모집하여 참여 기간 내 일 평균 주행거리 감축량 및 감축률에 따른 포인트를 산정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이며,
  - 녹색생활 실천 분야는 전자영수증 발급, 다회용기 이용 등 국민 일상 속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 각 분야의 참여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에너지 분야는 누리집(<https://cpoint.or.kr>) 온라인 회원가입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참여신청서 제출의 방법으로 참여가 가능하고,
  - 자동차 분야는 매년 공고문에 기재된 지역별 모집기간을 확인하여 누리집(<https://car.cpoint.or.kr>) 온라인 회원가입 및 신청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 녹색생활 실천 분야는 누리집(<https://www.cpoint.or.kr/netzero>) 온라인 또는 모바일 앱(Carbon Pay) 회원가입을 통해 참여 가능합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7조제3항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3조

# 25

##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분야 포인트 및 인센티브 문의

분야 기후변화

담당 부서 기후적응과

### 질의내용



- ☑ 에너지 분야 탄소중립포인트 산정 방법과 인센티브 유형 및 지급 시기, 참여 가구의 에너지 사용량 확인 방법을 알려주세요.

### 답변



- 에너지 분야 탄소중립포인트는 참여 가구(가정, 상업시설)에 대해 아래 기준에 따라 반기별로 산정됩니다.
  - 참여 자원별(전기, 수도, 도시가스)로 과거 2년간 같은 시기의 월 사용량 평균값을 합산한 값(기준사용량)과 현재 산정 시점의 사용량을 합산한 값(확인사용량)을 비교하여 감축률을 평가
    - ※ 감축률 = (기준사용량 - 확인사용량) ÷ 기준사용량 × 100
  - 예를 들면, 2025년도 상반기(1월~6월) 에너지 사용에 대한 포인트 산정은 해당 가구의 2023년도, 2024년도 상반기 사용량의 평균값과 비교하여 평가
- 에너지 분야 인센티브 유형은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별표 4]에 기재된 11가지(현금, 그린카드, 상품권 등) 내에서 지자체별로 시행하는 유형이 상이하므로 확인 후 한 가지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반기별 정산을 통해 감축 대상자에게 매년 6월, 12월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참여자의 에너지 사용량은 반기별 포인트 및 인센티브 정산이 완료된 후 '나의 사용량 조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8조

# 26

##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분야 참여 신청 및 포인트·인센티브 지급 문의

분야 기후변화

담당 부서 기후적응과

### 질의내용



- ☑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분야 참여 신청 방법과 포인트 산정 방법 및 인센티브 지급 시기를 알려주세요.

### 답변



- 자동차 분야의 경우 매년 모집대수 및 시기가 상이하어, 매년 2월경 자동차 누리집(<https://car.cpoint.or.kr>)에 게시되는 공고문을 참고하여 온라인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지역별 선착순으로 진행되어 조기 마감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 분야는 참여기간 전·후의 일평균 주행거리를 비교하여 감축률과 감축량을 산정하고,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별표 2]의 포인트 산정기준에 더 유리한 실적을 적용하여 포인트를 산정합니다.
  - 참여기간은 3·4월~10월 말이며, 포인트 산정에 따른 인센티브는 매년 12월 중에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 ※ 감축량(km) = 기준주행거리 - 확인주행거리
  - ※ 감축률(%) = (기준주행거리 - 확인주행거리) ÷ 기준주행거리 × 100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15조

# 27

## 탄소중립포인트(녹색생활 실천) 제도 참여 방법

분야 기후변화

담당 부서 기후적응과

### 질의내용



☑️ 녹색생활 실천으로 탄소중립포인트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 녹색생활 실천활동 수행에 따른 탄소중립포인트를 받으려면 먼저 제도 회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 제도 가입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 ① 제도 누리집(cpoint.or.kr/netzero) 접속 후 회원가입
    - ② 모바일 앱(카본페이) 다운로드 후 회원가입
- 제도 회원가입 이후에는 제도 참여기업을 확인하고, 참여기업별 매뉴얼\*에 따라 실천 활동을 수행하면 됩니다.
  - \* 누리집 또는 카본페이앱에서 참여기업 매뉴얼 확인 가능
  - 이번 달에 참여한 실천활동에 대한 탄소중립포인트는 다음 달 말경에 적립 및 지급됩니다.
  - 제도 가입 전에 실천한 활동에 대해서는 탄소중립포인트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18조

분야 기후변화

담당 부서 기후적응과

## 질의내용



- ❖ 실천항목에 무엇이 있고 포인트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실천항목을 추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 답변



- '25.3월 기준, 탄소중립포인트 제도에서 인정하는 녹색생활 실천 항목은 총 10개이며, 항목별로 포인트 단가가 상이합니다.

연번	실천항목	포인트 단가
1	전자영수증 발급	100원/회
2	텀블러·다회용컵 이용	300원/개
3	일회용컵 반환	200원/개
4	리필스테이션 이용	2,000원/회
5	다회용기 이용	1,000원/회
6	무공해차 대여	100원/km
7	친환경제품 구매	1,000원/건
8	고품질 재활용품 배출	100원/kg
9	폐휴대폰 수거	1,000원/건
10	미래세대실천행동	상장 또는 상금

- 실천항목은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항목 신설은 정책적 필요성, 타당성, 시행 효과 등을 검토하고,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제도 규정(환경부고시)에 반영(개정) 후 시행됩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17조

## 탄소중립포인트(녹색생활 실천) 소상공인 인센티브

분야 기후변화

담당 부서 기후적응과

### 질의내용



- ☑ 탄소중립포인트 녹색생활 실천 분야에서 소상공인 인센티브(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려주세요.

### 답변



- 소상공인은 탄소중립포인트의 텀블러·다회용컵 이용, 다회용기 이용 등 2가지 항목에 한하여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참여를 원하는 소상공인은 제도 회원가입 후 카본페이 앱에서 '그린파트너스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신청 시 '소상공인확인서'와 '사업자등록증'을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 운영기관(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등록된 서류와 정보를 확인하여 적합한 경우 '그린파트너스'로 승인합니다.
- 소상공인 인센티브는 개인 참여자가 참여 소상공인 매장에서 실천 활동을 수행한 실적을 기반으로 산정하며, 연간 15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됩니다.
  - 소상공인 인센티브 단가는 텀블러·다회용컵 이용 30원/개, 다회용기 이용 100원/건입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19조

분야 기후변화

담당 부서 기후적응과

## 질의내용



- ☑ 탄소중립포인트제 녹색생활 실천 분야 참여기업으로 등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 탄소중립포인트제 녹색생활 실천 분야 기업 참여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제도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운영기관(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 (신청서류) 공문, 신청서(별도 양식), 사업자등록증, 사업설명자료
  - 신청기업 중 제도 참여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선정위원회 운영) '예비 참여기업'의 지위를 부여합니다.
  - 예비 참여기업이 시스템 연계 등 제도 참여 준비를 완료하면 '참여기업'으로 확정하고, 누리집 등을 통해 국민에게 안내합니다.

## 〈기업 참여 절차〉

업무 절차	주요 내용	주체
참여 신청	- 신청서류 제출 (공문, 신청서, 사업 설명자료 등)	신청기업 → 운영기관(기술원)
예비 참여기업 선정위원회 운영	- 제도 참여 적합성 검토 및 '예비 참여기업' 선정	운영기관(기술원)
제도 참여 준비	- 제도-기업 시스템 간 연계(참여자 정보 송수신 등) - 참여기업 매뉴얼 작성	예비 참여기업 ↔ 운영기관(기술원)
참여기업 확정	- 참여기업 확정 및 등록(누리집 등 공지) (예비 참여기업 → 참여기업)	운영기관(기술원)
업무협약 체결	- 환경부와 업무협약 체결	참여기업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19조

# 31

## 그린카드 적립 문의

분야 기후변화

담당 부서 기후적응과

### 질의내용



☑️ 그린카드 적립 대상 제품 및 적립 가능 매장, 발급 방법을 알려주세요.

### 답변



- 그린카드는 녹색제품을 구매 시 적립이 가능하며, 환경표지, 저탄소제품, 환경성적표지 등 환경부 인증 제품과 저탄소 농산물 등 농림부 인증 제품이 포함됩니다. 상세한 제품 목록은 '그린카드 홈페이지-그린서비스-녹색소비' 메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그린카드는 대형마트(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백화점(롯데, 한화갤러리아, NC), 편의점(CU, GS25, 세븐일레븐) 등 그린POS가 설치된 매장에서 친환경 제품을 구매 시 적립이 가능합니다.
- 그린카드는 20개 금융사(홈페이지, 영업점 방문)에서 발급가능하며, '그린카드 홈페이지-그린카드' 메뉴에서 원하는 그린카드 발급사 홈페이지 연결을 통해 발급 신청 가능합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6조

# 32

## 탄소중립 실천 관련 정보 확인 방법

분야 기후변화

담당 부서 기후적응과

### 질의내용



☑ 탄소중립 생활실천과 관련된 영상이나 카드뉴스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 답변



- 환경부에서는 탄소중립 실천포털(www.gihoo.or.kr)을 통해, 실생활에서 적극적으로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도록 에너지, 소비, 수송, 자원순환, 흡수원 5대 분야별 구체적인 방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 이외에도 탄소중립 행사·캠페인, 탄소중립포인트제 혜택 소개, 카드뉴스, 영상 등 탄소중립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

# 33

## 기후변화주간 행사 관련 문의

분야 기후변화

담당 부서 기후적응과

### 질의내용



- 기후변화주간 행사 기간은 언제이고,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요?

### 답변



- 정부에서는 2009년도부터 지구의 날(4.22)을 기념하여, 해당 기념일 전·후 일주일간 ‘기후 변화주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기후변화주간에는 탄소중립과 관련된 공모전, 캠페인, 간담회 및 지자체별 기념행사와 더불어 전국 소등 행사 등 다양한 행사와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

# 34

## 생활실천 안내서 관련 문의

분야 기후변화

담당 부서 기후적응과

### 질의내용



☑ 탄소중립 생활실천 안내서는 무엇이고,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 답변



- 탄소중립 생활실천 안내서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생활 속 온실가스를 줄이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 및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가이드북으로,
  - 가정·학교·기업편 3개 부문별로 실천 주제를 나누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수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탄소중립 생활실천 안내서는 탄소중립 실천포털([www.gihoo.or.kr](http://www.gihoo.or.kr))을 통해 PDF 파일로 누구나 다운로드 및 열람할 수 있습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

# 35

## 기후변화 대응의 개념

분야 기후변화

담당 부서 기후적응과

### 질의내용



- 기후위기 적응은 기후변화 대응과 어떤 차이가 있고, 실제 정책이나 행동 측면에서 어떻게 구분되는지 알려주세요.

### 답변



- 기후변화 대응은 일반적으로 ‘완화(Mitigation)’와 ‘적응(Adaptation)’으로 구분됩니다. 완화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기후변화를 늦추거나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대표적인 예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탄소흡수원 확대, 에너지 효율 향상 등이 있습니다. 반면, 적응은 이미 나타나고 있거나 예측되는 기후변화의 영향을 완화하고 이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와 대응을 말합니다.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정부는 기후영향을 고려한 적응대책을 수립·이행 중이며, 대표적인 적응 정책으로는 폭염에 대응한 무더위쉼터 운영, 해수면 상승에 대비한 해안 방재시설 설치 등이 있습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8조

# 36

## 국민 실천적 기후위기 적응 방법 문의

분야 기후변화

담당 부서 기후적응과

### 질의내용



☑ 국민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기후위기 적응 행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답변



- 기후위기 적응은 국가나 지자체의 정책뿐 아니라 개인의 실천을 통해서도 실현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실천 예시가 있습니다.
  - 폭염 대응을 위한 여름철 주거환경 개선 : 단열 필름, 차양막 설치 등으로 실내 온도 상승 억제
  - 건강관리를 위한 기후질환 대비 : 고온에 민감한 가족(어린이, 노인 등)의 여름철 식단과 활동 조절
  - 도심 열섬 완화를 위한 녹지 공간 확대 참여 : 아파트 단지 내 나무 심기, 옥상 정원 조성 등
- 이러한 실천은 기후변화로부터 나와 가족, 지역사회를 보호하는 생활 기반의 적응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

# 37

## 지역 차원의 기후위기 적응 대책 문의

분야 기후변화

담당 부서 기후적응과

### 질의내용



☑ 기후변화로 인한 지역 맞춤형 적응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답변



- 각 지자체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40조에 따라 5년 단위의 ‘지역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 예를 들어, 해안 지역은 해수면 상승에 따른 침수 대비를 위해 방재시설 강화, 모래언덕 복원, 해안선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내륙지역은 폭염 쉼터 확대, 열지도 관리, 도시녹지 조성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40조

분야 기후변화

담당 부서 기후적응과

### 질의내용



- 권역별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해당권역 내 16개 하천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 16개 하천은 각 하천별 길이가 1.5~12.4km로 총 71.57km에 해당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바목에 하천의 길이가 20km 이상인 경우만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에 해당됨.  
 동 계획은 20km 이상의 하천이 없으므로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이 아닌지, 총 길이가 71.57km이므로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에 해당되는지 알려주세요.

### 답변



-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계획에 해당하는 ‘하천의 이용 및 개발’ 관련 계획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자목의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 「하천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에 해당하면서 하천의 길이가 20km 이상인 경우입니다.
-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 규모는 행정계획의 수립(「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승인등” 포함)이 이루어지는 규모이므로, 총길이가 71.57km에 해당하는 하천기본계획은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에 해당됩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15조

# 39

##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 여부② (적용 시점)

분야 기후변화

담당 부서 기후적응과

### 질의내용



-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16.12월 환경영향평가(전략포함) 용역 계약 및 착수하여 '21년에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협의 완료함.  
 본 사업은 '22년에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회를 개최하여 '23년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하였으나,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 등 관련 법령 저촉으로 초안이 반려됨에 따라 '23.11월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다시 함.  
 이 경우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에 해당되나요?

### 답변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3조는 부칙 제4조(기후변화영향 평가에 관한 적용례)에 따라 시행일 이후 평가준비서를 최초로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시점부터'로 간주합니다.
- 따라서, 질의한 사업의 경우,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 시행일 이전에 환경영향평가 대행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부칙 제4조

# II

## 녹색전환

2025 질의회신 사례집

1. 녹색산업혁신과
2. 녹색기술개발과
3. 통합허가제도과
4. 환경교육팀

# 01

## 환경전문공사사업자의 업무 범위 관련 문의

분야 녹색전환

담당 부서 녹색산업혁신과

### 질의내용



☑ 환경전문공사사업자가 인·허가 행정업무를 대행 가능한가요?

### 답변



- 환경전문공사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환경기술산업법)」 제2조제4호에 따라 대기오염방지시설, 소음진동방지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계·시공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 또한, 환경 관련 등록 및 인·허가 등 환경행정 절차에 대한 상담, 정보제공 및 대행 등은 같은 법 제16조의4제1항제2호에 환경컨설팅회사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으며, 환경컨설팅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인력에 대한 교육의 지원을 받으려면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8에서 정하고 있는 인력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환경전문공사업, 환경컨설팅회사가 각각 별도의 업무범위 및 등록기준을 규정하고 있어, 환경 관련 등록 및 인·허가 등 환경행정 절차에 대한 상담, 정보제공 및 대행업무는 환경전문공사업의 업무범위에 포함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4호, 제16조의4제1항제2호

## 02

# 대기관리기술사의 대체인력 인정 가능 여부

분야 녹색전환

담당 부서 녹색산업혁신과

## 질의내용



- ☑ 다수의 현장실무 경험이 있는 이학박사(대기 분야 전공)를 대기관리기술사 대체인력으로 인정 가능한가요?

## 답변



- 대기분야 환경전문공사업의 기술인력 요건 중 대기관리기술사는 대기오염방지시설 설계·시공에 필요한 전반적인 능력을 갖추어야 요구됩니다.
  - 이에 대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별표4]의 비교1에서는 화공기술사·산업위생관리기술사·산업기계설비기술사·공조냉동기계기술사·공학박사(대기분야를 전공한 사람만 해당한다) 또는 대기환경기사 자격 취득 후 대기오염방지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대기관리기술사 대체인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대기분야를 전공했더라도 이학박사는 대기관리기술사 대체인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별표4]

# 03

## 환경전문공사 해당 여부

분야 녹색전환

담당 부서 녹색산업혁신과

### 질의내용



- ☑ 대기오염방지시설의 배관 교체·추가 등 부대설비만을 공사하는 경우에도 대기 분야 환경전문공사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나요?

### 답변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르면 대기분야 환경전문공사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계·시공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 이때, 대기오염방지시설에는 대기오염물질을 포집하기 위한 장치(후드), 오염물질이 통과하는 관로(덕트), 오염물질을 이송하기 위한 송풍기 및 각종 펌프 등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기구류(예비용을 포함) 등이 포함됩니다.
- 따라서, 대기오염방지시설의 배관교체·추가 등 부대설비만을 공사하는 경우에도 대기분야 환경전문공사업자가 시공하여야 합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4호

# 04

## 환경컨설팅회사의 업무범위

분야 녹색전환

담당 부서 녹색산업혁신과

### 질의내용



- ☑ 당사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4에 따라 환경컨설팅회사로 등록하여 대기오염방지시설 증설 관련 인·허가 대행 업무 등을 수행 중입니다. 이 경우 대기오염방지시설 관련 인·허가 대행 업무와 함께 대기오염방지시설 설계·시공이 가능한가요?

### 답변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4제1항제2호에 따라 환경컨설팅회사는 환경 관련 등록 및 인·허가 등 환경행정 절차에 대한 상담, 정보제공 및 대행업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 아울러,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에 따라 방지시설의 설치나 변경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자가 설계·시공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환경컨설팅회사가 대기오염방지시설 관련 인·허가 대행 업무와 함께 대기오염방지 시설 설계·시공을 하려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환경전문 공사업으로 등록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

# 05

## 환경컨설팅회사의 인력요건 문의

분야 녹색전환

담당 부서 녹색산업혁신과

### 질의내용



- ☑ 환경컨설팅회사의 인력요건에 대한 세부기준을 알려주세요.

### 답변



- 환경컨설팅회사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환경기술산업법) 시행령」 [별표1]의 기준에 따라 고급인력을 1명 이상, 일반인력을 2명 이상 갖추어야 합니다.
- 다만, 「환경기술산업법」 제16조의4제1항제4호 및 제7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환경컨설팅 회사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고급인력으로 환경 분야의 기술사 자격을 가진 사람 1명을 포함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의8제1항 [별표 1]

# 06

## 측정대행업 기술인력 등록 관련 문의①

분야 녹색전환

담당 부서 녹색기술개발과

### 질의내용



- ✓ 측정대행업 기술능력 중 기술인력 관련하여, 대기환경기사 취득 후 5년 이상 실내 공기질 또는 악취의 측정분석 업무를 수행한 사람을 대기, 실내공기질, 악취분야의 기술인력으로 할 수 있나요?

### 답변



- 측정대행업의 분야별 기술인력 등록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9]에 기술인력 요건을 갖춘 사람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 대기 및 악취, 실내공기질의 책임기술인력은 대기환경기사 등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대기분야 측정분석 업무를 수행한 사람 등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또한, 대기분야 측정 분석업무는 대기를 포함하여 실내공기질 및 악취분야의 측정분석 업무경력도 인정될 것으로 판단되며, 세부 경력 등에 대한 자료를 토대로 등록권자인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9]

# 07

## 측정대행업 기술인력 등록 관련 문의②

분야 녹색전환

담당 부서 녹색기술개발과

### 질의내용



- ☑ 환경관리 대행기관에 등록되어 있는 기술인력을 측정대행업체의 기술인력으로 중복 등록이 가능한가요?

### 답변



- 측정대행업의 분야별 기술인력 등록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9] 제1호에 기술인력 요건을 갖춘 사람을 등록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1] 제1호에 따라 등록된 기술인력을 다른 분야·업종의 기술인력으로 근무하게 하여서는 아니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9] 제1호 비고3에 따라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 대기 및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의 경우, 해당 분야의 측정대행업의 기술인력으로 중복하여 등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9]

# 08

## 측정대행업 기술인력 등록 관련 문의③

분야 녹색전환

담당 부서 녹색기술개발과

### 질의내용



- ☑ 약취측정대행업체에서 약취판정요원 5명을 등록할 때 책임기술인력과 시료 채취·분석요원을 중복하여 총 5명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 답변



- 약취 분야 측정대행업체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9] 제1호 마목에 따라서 책임기술인력 1명, 시료채취·분석요원 1명, 약취판정요원 5명 총 7명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 기술인력 7명을 등록한 후 책임기술인력 및 시료채취·분석요원은 약취판정요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 시료채취를 다녀온 책임기술인력, 시료채취·분석요원은 복합약취 판정을 하기 전 약취공정 시험기준에 따라서 판정요원 시험을 통과하여야 합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9]

# 09

## 환경분야 시험·검사의 표준처리기간 관련 문의

분야 녹색전환

담당 부서 녹색기술개발과

### 질의내용



- ☑ 측정대행업의 창립기념일로 전 직원이 휴일을 보낼 경우,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여 표준처리기간을 지연할 수 있나요?

### 답변



- 환경분야 시험·검사기관의 시험성적서 작성 및 통보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업무처리규정」 제9조제2항에 따라 같은 규정 [별표 2]의 표준처리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다만, 표준처리기간은 환경시료의 특이성에 따른 시간소요, 재시험실시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백히 하여 처리기간을 지연할 수 있습니다.
- 이는 시험물량 과다 등 물리적·시간적으로 처리가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을 말하는 것이므로, 회사 창립기념일은 처리기간 지연사유에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환경분야 시험·검사 업무처리규정」 제9조

# 10

## 측정대행업 기술인력 휴직 시 대체인력 보완 관련 문의

분야 녹색전환

담당 부서 녹색기술개발과

### 질의내용



- ☑ 장기적인 휴직(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기술인력에 대해 대체인력 보완이 필요한가요?

### 답변



- 「환경시험검사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측정대행업자가 기술능력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 관할 지자체의 장에게 등록사항을 변경해야 합니다.
- 기술능력은 동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른 관련 자격증 보유인력, 숙련도시험, 현장평가 적합 확인서가 유지되는 조건을 말합니다.
- 다만, 인력의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별표 10] 비고1에 따라 30일까지 일시적 미달을 허용하고 있으며, 육아휴직 등 장기간 기술인력의 부재는 기술능력이 부족한 상태로 판단되어 대체인력을 보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 11

## 통합허가 대상 문의

분야 녹색전환

담당 부서 통합허가제도과

### 질의내용



- ☑ 개별법(대기, 수질)에 따라 허가를 받아 운영 중입니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에 해당하면 통합허가를 추가로 받아야 하나요?

### 답변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오염시설법)」 제6조에 따라 같은 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속하는 사업장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대기오염물질이 연간 20톤 이상 발생하는 사업장이거나, 폐수를 일일 700세제곱미터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배출시설 등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환경부 장관의 통합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개별법에 따라 허가를 받고 운영하고 있는 기존 사업장의 경우에도 통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다만, 「환경오염시설법」 시행일인 2017년 1월 1일 당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기존 사업장은 해당 업종별 시행일로부터 유예기간인 4년 이내에 통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예시) 2018년 시행되는 1차 철강제조업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장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통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 12

## 통합환경관리인 선임 자격 및 조건

분야 녹색전환

담당 부서 통합허가제도과

### 질의내용



☑ 통합환경관리인 선임에 대한 세부기준을 알려주세요.

### 답변



- 통합환경관리인 선임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오염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14의2]의 기준에 따라 통합환경총괄관리자 및 통합환경일반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 다만, 「환경오염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14의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합환경관리사업장의 경우 2년 이상 환경 관련 업무에 종사한 통합환경일반관리자가 통합환경총괄관리자를 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신규로 통합환경관리인을 선임하려는 경우, 「환경오염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14의4]의 자격 기준을 갖추고, 통합환경관리인 교육을 이수하여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의3제1항 [별표 14의4]

# 13

## 통합허가 신고 전 사전협의 절차 문의

분야 녹색전환

담당 부서 통합허가제도과

### 질의내용



☑ 통합허가 신청 전에 사전협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나요?

### 답변



- 사전협의를 통합허가 신청을 위해 제출하여야 하는 총 8장으로 구성된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중 제1장(일반사항)부터 제5장(연료·원료 등 사용물질) 내용에 대해 사전에 검토하여 통합허가 신청 시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행정서비스입니다.
- 따라서 사전협의를 의무사항이 아니며, 사업자가 희망하는 경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 14

## 통합허가 전 시설 설치 가능 여부

분야 녹색전환

담당 부서 통합허가제도과

### 질의내용



☑ 통합환경 인·허가 취득 전에 연돌시공이 가능한가요?

### 답변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통합허가를 득하고 난 뒤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 설치 공사가 가능합니다.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업장에서 통합허가를 받지 않고 배출시설 등 및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벌칙(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위와 같이 배출시설등 설치 공사는 법률상 불가하나, 그 외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인 지하 구조물, 굴뚝 공사 등은 가능합니다. 다만, 통합허가 검토 과정에서 환경과 주민건강 영향 등을 고려하여 위치·규모·높이 등이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 15

## 통합허가사업장으로서 개별법 운영일지 작성 여부

분야 녹색전환

담당 부서 통합허가제도과

### 질의내용



- ☑ 통합허가사업장으로서 통합환경관리시스템(IEPS)에 기록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기록부도 작성하고 통합법 기록보존자료도 이중으로 작성을 해야하나요?

### 답변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 등 및 방지시설에 대한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물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에 우선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 등 및 방지시설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운영일지를 작성하지 않으셔도 되나 통합환경관리시스템(IEPS)에 기록보존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 16

## 통합허가 시 최초 자가측정 시기 주기 적용 기준 문의

분야 녹색전환

담당 부서 통합허가제도과

### 질의내용



- ☑ 통합허가사업장으로서 자가측정을 반기 1회 받은 경우 실제로 측정해야 하는 주기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답변



- 통합허가사업장의 최초 자가측정 주기 적용 시기는 허가일(신규시설은 가동개시일)을 기준으로 다음 주기부터 적용하며, 연 1회 측정인 경우에는 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 측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허가일이 '22.11.1.인 경우, 월 1회는 12월부터, 분기 1회는 '23년 1월~3월 중, 반기 1회는 '23년 1~6월 중, 연 1회는 '23.11.30.까지 측정 필요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 17

## 복합업종 사업장의 통합허가 대상 여부에 관한 질의

분야 녹색전환

담당 부서 통합허가제도과

### 질의내용



- ☑ 여러 가지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으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통합허가 대상에 해당되나요?

### 답변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3호의 복합업종 관련 규정은
  - 한 개의 사업장에 두 개 이상의 업종(통합허가 대상 + 비대상)이 있을 경우, 업종별 매출비율, 최적가용기법기준서 적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통합관리의 필요성이 낮은 업종(비대상 업종)에 대해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 사항입니다.
- 복합업종 사업장으로서, 비고 제3호가, 나 항목에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 비대상업종은 통합허가에서 제외되나 대상업종은 통합허가 대상이 되므로, 대상업종만으로 종규모를 산정하여 통합허가 대상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 18

## 허가재검토 주기 산정 기산일에 대한 질의

분야 녹색전환

담당 부서 통합허가제도과

### 질의내용



☑ 변경허가를 한 경우, 허가재검토 시점 적용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답변



- 통합허가사업장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허가조건 또는 허가배출기준을 허가 후 5년마다 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 ① ('24.2.17. 이전) 변경허가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최종 변경허가일로부터 5년 후로 허가재검토 주기 재설정  
예) '19.7.20. 허가받은 사업장이 '22.3.20일 변경허가 사유를 불문하고 '22.3.20.부터 5년 후 실시
  - ② ('24.2.17. 이후) 시행령 [별표 2] 제1호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만, 최종 변경허가일로부터 5년 후로 허가재검토 주기 재산정, 그 외의 사유에 따른 변경허가의 경우 최초 허가일로부터 5년 후로 적용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 19

## 시설 설치 또는 변경 시 가동개시 신고 관련 문의

분야 녹색전환

담당 부서 통합허가제도과

### 질의내용



- ☑ 배출시설 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완료한 후에 모든 시설에 대해 가동개시 신고를 해야 하나요?

### 답변



-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 시설을 가동하려는 경우에는 가동개시 신고를 해야 하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동개시 신고하면 됩니다.

※ 가동개시 신고대상 변경신고

1.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규모(굴뚝별) 20% 이상 증설
2. 소음·진동 배출시설 50% 이상 증설
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또는 중요사항 변경
4. 폐수처리방법 변경
5. 방지시설 면제 사업장에 방지시설 신규 설치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20

## 가동개시 신고 내용과 현장의 불일치에 대한 질의

분야 녹색전환

담당 부서 통합허가제도과

### 질의내용



- ☑ 가동개시 신고 후에 허가기관에서 현장을 확인한 결과 당초 허가사항과 비교하여 다르다고 지적되면 어떻게 되나요?

### 답변



- 허가기관은 현장을 확인한 결과 배출시설 등 및 방지시설이 허가사항과 동일하게 설치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가동개시 신고를 수리하나, 부적합 시에는 6개월 이내 기간에서 개선을 명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배출시설 등 및 방지시설의 개선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1회 연장 가능하며, 시설의 개선이 완료되면 가동개시 신고를 다시 해야 합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 21

## 자체 개선계획서 제출 사유 발생 시 통지 시점 관련 질의

분야 녹색전환

담당 부서 통합허가제도과

### 질의내용



- ☑ 자체 개선계획서 제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한 시점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혹은 야간)인 경우, 그 내용을 어떤 식으로 통지하여야 하나요?

### 답변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르면 배출시설 등 또는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때부터 48시간 이내 자체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날의 0시부터 24시까지는 제외한다)
- 이 경우 사업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8시간 이내에 전자문서·팩스·전화 또는 동법 제28조에 따른 통합환경허가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환경부 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 22

## 통합허가사업장 정기검사 주기 결정 및 통보에 대한 질의

분야 녹색전환

담당 부서 통합허가제도과

### 질의내용



☑ 차기 정기검사 주기는 어떤 방법과 기준(예를 들어 점수표)으로 결정되며, 그 주기는 언제 통보 해 주나요?

### 답변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제2항 각 호에 따라 결정하며, 관할 사업장의 정기검사 주기 확정\* 후 사업자에게 통보합니다.
    1. 시행령 제4조제3항 각 호의 요건에 대한 준수 여부
    2. 배출시설 등이 설치된 지역의 여건
- \* 「통합허가사업장의 배출 및 방지시설 운영·관리와 허가조건 이행관리를 위한 업무처리지침」 제8조제6항제4호(환경부 예규 제715호, 2022.11.23.)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  
「통합허가사업장의 배출 및 방지시설 운영·관리와 허가조건 이행관리를 위한 업무처리지침」 제8조제6항

# 23

## 연간 보고서 작성방법 및 제출 절차에 관한 질의

분야 녹색전환

담당 부서 통합허가제도과

### 질의내용



- ☑ 배출시설 등 및 방지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연간 보고서는 어떻게 작성해서 제출하는지, 연간보고서의 초안 제출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 답변



- 사업자는 매년 7월 말까지 지난 연도의 배출시설 등 및 방지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연간 보고서를 작성하여 통합환경허가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연간 보고서는 사업자가 통합환경허가시스템에 제출한 기록·보존 자료를 활용하므로 사업자가 전년도 기록·보존의 입력을 완료하면 연간 보고서의 초안이 제출되는 것으로 합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 24

## 친환경 표시·광고 문구 사용의 기준

분야 녹색전환

담당 부서 환경교육팀

### 질의내용



☑️ 제품의 친환경 표시·광고 문구 사용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답변



- 일반적으로 제품의 제조업자등(제조자, 제조·판매자, 판매자)이 ‘친환경’ 같은 포괄적인 환경성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환경산업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을 받거나 법 제16조의11에 따라 해당 표시·광고 내용에 대한 실증 등을 할 경우 친환경 등의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10, 제16조의11 및 제17조

# 25

## 환경표지의 인증 절차

분야 녹색전환

담당 부서 환경교육팀

### 질의내용



☑ 환경표지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알려주세요.

### 답변



- 환경표지 인증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하여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한 경우 그 제품에 대하여 환경표지 인증을 하는 것입니다.
- 아울러 환경표지 인증 업무는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하고 있는 바, 환경표지 인증 관련 절차(인증신청서 접수, 서류심사, 현장검증 등 인증심사 세부절차) 등에 대해서는 기술원 환경표지혁신실(02-2284-1519)에 문의하시거나, 에코스퀘어(ecosq.or.kr)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 및 제31조

# 26

## 재활용 소재 적용 제품의 환경성 표시·광고 및 사전검토 관련

분야 녹색전환

담당 부서 환경교육팀

### 질의내용



- ☑ 재활용 소재를 일부 적용한 제품의 포장재에 대한 환경성 표시·광고 및 사전검토에 대해 알려주세요.

### 답변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11에 따라 제조업자 등이 제품의 환경성 표시·광고를 하려는 경우 환경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과학적인 실증자료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하고, 표시·광고의 대상이 제품 및 포장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어느 부분에 관한 것인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아울러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14 및 같은 법 제31조제2항제4의4호에 따라 표시·광고하기 전에 그 내용에 대한 위반 여부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02-2284-1942)을 통해 사전검토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11, 제16조의14 및 제31조

# 27

## 환경교육사 교육기관 운영 관련 문의

분야 녹색전환

담당 부서 환경교육팀

### 질의내용



☑ 환경교육사 양성기관 지정에 필요한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 환경부에서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거 환경교육사 자격 취득에 관한 교육 및 평가를 수행하는 환경교육사 양성기관을 지정·운영중에 있으므로 필요시 양성기관 지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 환경부 공식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하여 지정계획이 공고되며, 선정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기관 및 단체는 지정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기본요건을 검토 받은 이후 서면·현장 심사를 거쳐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 Ⅲ

## 대기환경

2025 질의회신 사례집

1. 대기미래전략과
2. 대기관리과
3. 교통환경과
4. 생활환경과

# 01

## 저공해자동차 표지 발급 대상 및 혜택

분야 대기환경

담당 부서 대기미래전략과

### 질의내용



- ☑ 저공해자동차 표지 발급 대상 기준과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였을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이 궁금합니다.

### 답변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6의2] 저공해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저공해차 인증을 받은 차량은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저공해자동차 표지규격〉



- 「저공해자동차 표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혼잡통행료의 감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의 지원시책을 제공할 수 있으며,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의 경우 「주차장법」 제9조에 따라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조의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및 [별표6의2], 「저공해자동차 표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 02

###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임차제 대상기관 관련 문의①

분야 대기환경

담당 부서 대기미래전략과

#### 질의내용



- ☑ 저공해자동차 의무 구매·임차제의 대상기관 세부 기준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의무 대상기관이 아닌 경우 자료 제출을 해야 하나요?

#### 답변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5에 따라 자동차(이륜자동차 포함) 보유대수를 기준으로, 6대 이상 보유기관은 “의무대상기관”, 6대 미만 보유기관은 “대상기관”으로 구분합니다.
- “의무대상기관”은 신규로 구매·임차하는 자동차를 제1종 저공해자동차(이하 “무공해자동차”) 비율 100%로 구매·임차하여야 하며 매년 구매·임차계획 및 실적 제출 등의 의무가 부여됩니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2조의5에 따른 공공기관은 자동차 보유대수에 관계없이 본 제도의 대상기관이므로 시스템에 가입\*하여야 하며, 매년 대상기관의 자동차 보유현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 (매뉴얼)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 - 정보마당 - 자료실 - 저공해차 의무구매임차제 업무지원시스템 매뉴얼(2025) 참조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5

# 03

##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임차제 대상기관 관련 문의②

분야 대기환경

담당 부서 대기미래전략과

### 질의내용



- ☑ 의무대상기관으로 선정된 후 자동차 보유대수가 6대 미만으로 변경되는 경우 의무대상기관에서 제외되나요?

### 답변



- 의무대상기관은 대상 회계연도의 전전년도 자동차 보유대수 기준으로 선정되므로, 의무구매·임차 대상연도 중간에 변동되지 않습니다.
- 연도 말 기준으로 자동차 보유대수가 6대 미만인 연도가 있을 경우 당해연도 자동차 보유대수가 산정기준이 되는 차차년도에 의무대상기관에서 제외됩니다.

#### <예시>

'23년말 기준으로 6대 이상 차량을 임차 또는 보유하고 있는 경우 '25년 의무대상기관에 선정됨. 만약 '24년에 1대를 반납 혹은 말소하여 '24년말 기준으로 5대를 임차 또는 보유하고 있는 경우 '25년도 대상기관임에는 변동이 없으나, '26년 의무대상기관에서는 제외됨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5

# 04

## 의무 구매·임차 실적 달성 기준

분야 대기환경

담당 부서 대기미래전략과

### 질의내용



- ❑ 의무 구매·임차 실적 달성 기준이 제1종 저공해자동차 비율 100%이면 모든 차량을 전기, 수소차로 구매·임차해야 되나요?  
실적 산정에서 제외되는 차종 사례를 안내해주세요.

### 답변



-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임차 실적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24-216호, 2024.11.6.)」에 따라 산정된 제1종 저공해자동차 비율이 100% 이상인 경우 달성이므로, 해당 고시 [별표 1]에 명시된 저공해자동차 종류별 환산 비율을 적용하여 비율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 제외 차종은 기본적으로, 해당 차량의 사용 목적이 특수하여 물리적·기술적 사유로 인해 저공해자동차로의 대체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됩니다.
- 승용자동차 외 차종에 대해서도 대체할 수 있는 저공해자동차가 출시되지 않은 경우, 사유서 및 설명자료를 작성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한국환경공단 검토 후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임차 실적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24-216호, 2024.11.6.)

# 05

## 생애 최초 청년 전기차 구매 대상

분야 대기환경

담당 부서 대기미래전략과

### 질의내용



- ✔ ‘청년 생애 최초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원’ 대상의 연령 계산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 군 복무기간 등 예외 적용이 가능한가요?

### 답변



- ‘2025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이전에 자동차 구매 이력 (내연차, 중고차 등 모든 차량 포함)이 없는 청년(「청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이 생애 최초로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해당 차량 국비 보조금의 20%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추가 지원 대상 연령 계산 시, 군 복무 기간만큼 추가 연장 등의 예외 적용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2025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25.1.15.)

# 06

## 다자녀가구 전기차 구매 시 지원 기준

분야 대기환경

담당 부서 대기미래전략과

### 질의내용



- ✔ 다자녀가구가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 지원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 다자녀가구 추가 보조금 대상에 태아 또는 성인 자녀도 인정이 되나요?

### 답변



- ‘2025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다자녀가구(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에 해당하는 개인이 전기승용차 구매 시 자녀 수에 따라 국비 최대 30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 (2자녀) 100만원, (3자녀) 200만원, (4자녀) 300만원
- 다자녀가구 지원 대상 자녀 나이는 만 나이 기준이며, 보조금 신청 시점 기준 태어나지 않은 자녀 및 성인 자녀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2025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25.1.15.)

# 07

## 수소차 보조금 환수액 적용 기준

분야 대기환경

담당 부서 대기미래전략과

### 질의내용



- 수소차 구매 후 의무운행기간(수출 말소 시 5년, 그 외 2년) 미준수 시 보조금 환수 진행, 지침상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등록말소를 하는 자”는 등록말소 사유로 보험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상금액이 차량 구매 시 지불한 가격보다 높은 경우 그 차액을 환수하도록 되어 있음.  
이 경우 보험금 차액이 운행 기간별 보조금 회수요율에 따른 산정액보다 커도 그 차액만큼을 회수해야 하나요?

### 답변



- 교통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의무운행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차량을 환수해야 하는 경우 보험금 차액과 운행기간별 보조금 회수요율에 따른 환수 금액 중 금액이 더 작은 것을 기준으로 환수하여야 합니다.

사례		환수대상
보조금 × 환수요율 금액	>	보험사 보상금 - 자부담금
보조금 × 환수요율 금액	≤	보조금 × 환수요율 금액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 08

## 대기환경기술인 교육 관련 문의

분야 대기환경

담당 부서 대기관리과

### 질의내용



- ✔ 환경관리 대행기관에 근무 중이며, 해당 기관에서는 여러 업체를 대상으로 환경 관리 대행업무를 진행하고 있음.  
 이 경우, 환경기술인 법정교육을 각 업체별로 이수해야하는지, 아니면 환경관리 대행기관만 이수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 답변



- 「대기환경보전법」 제77조에 따라 각 사업자는 환경기술인을 최초 임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신규교육, 이후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 보수교육을 받게 하여야 하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5조에 따라 교육 대상이 된 사람이 그 교육을 받아야 하는 기한의 마지막 날 이전 3년 이내에 동일한 교육을 받았을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즉, 업체 또는 소속 여부와 상관없이 환경기술인으로 임명된 사람은 신규·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3년 이내에 동일한 교육을 받았을 경우 해당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5조

분야 대기환경

담당 부서 대기관리과

## 질의내용



- ☑ 탄화시설(5종 사업장)의 일산화탄소 배출허용기준과 1년에 2번 대기 자가측정을 하고 있는데 측정 항목 중 일산화탄소 필수 측정 여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 답변



-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1]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허가(신고 수리)를 받은 사업장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하여 배출구 규모별 주기에 따라 자가측정을 하여야 합니다.
- 다만, 같은 [별표 8]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중 일산화탄소(CO)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1)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2) 석유 정제품 제조시설 중 중질유분해시설의 일산화탄소 소각보일러, 3) 고형연료제품 제조·사용시설 및 관련시설, 4) 화장로시설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이외 배출시설(탄화시설 포함)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원칙적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배출허용기준이 없는 오염물질의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1] 제1호, 제2호의 '측정항목'란에 규정된 바에 따라 자가측정의 의무는 없으나, 이 경우에도 사업장 자체적으로 관리계획을 세워 적절한 오염물질 관리를 행함이 바람직할 것이며,
- [별표 11] 비고 제1호에 따라 [별표 8의2]의 기준 이상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되는 경우에는 [별표 11] 제1호, 제2호의 표에도 불구하고 매월 2회 이상 자가측정을 시행하여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1]

분야 대기환경

담당 부서 대기관리과

## 질의내용



## ☑ 대기배출시설 운영 중인 사업장입니다.

기존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사업장이었으나, 자가 측정 시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검출되어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득하였음.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득할 경우 가동개시 신고를 하여야 함.

허가를 득하였을 때 관할 기관 공문에 “※기존 대기배출시설(방지시설)은 별도의 가동개시 없이 허가일을 가동개시신고일로 관리하여야 함”이라고 명시하여 별도로 가동개시 신고를 하지 않았음.

이 경우 공문에 명시된 내용대로 가동개시 신고를 안해도 되는지, 별도로 가동개시 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에 따라 사업자는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거나 배출시설의 변경을 완료하여 그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가동하려면 미리 환경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가동개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문의하신 사항은 기존 설치·운영 중인 신고시설이 새로운 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판단되며, 이는 가동개시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

# 11

## 대기전문공사업 시공 관련 문의

분야 대기환경

담당 부서 대기관리과

### 질의내용



- ❖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아 운영 중으로 기존 방지시설 중 여과집진시설 3기를 가동 중이며, 배출시설 중 자력선별시설을 1대 추가 증설하여 기존 여과집진시설 1기에 연결하여 사용하고자 함.  
이 경우 추가 자력선별시설을 기존 여과집진시설의 후드 및 덕트를 시공할 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지요? 아니면 대기전문공사업을 등록 한 자에게 시공을 의뢰하여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 답변



- 대기배출시설 허가(신고수리)를 받은 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을 항상 준수하기 위해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 규정하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방지시설의 설치에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사업자가 설계·시공하여야 합니다.
- 다만,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류나 기구류를 신설·대체·개선하는 경우, 허가(신고)받은 시설의 용량이나 용적의 3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설·대체·개선하는 경우, 연소조절에 의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환경전문공사사업자 외에도 설계·시공이 가능하며,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서 사업자 스스로 방지시설을 설계·시공할 수도 있습니다.
- 참고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 비교에 따라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기구류는 대기오염물질을 포집하기 위한 장치(후드), 오염물질이 통과하는 관로(덕트), 오염물질을 이송하기 위한 송풍기 및 각종 펌프 등이 해당됩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

# 12

## 적산전력계 부착 대상 관련 문의

분야 대기환경

담당 부서 대기관리과

### 질의내용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시설의 적산전력계 부착 의무에 대해 알려주세요.

### 답변



-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6항에 따라, 4종·5종 사업장의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9의2]에 정하는 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배출시설과 그 배출시설에 연결된 방지시설에 같은 [별표]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물인터넷 측정기기(전류계, 온도계, 차압계, pH계 등)를 각각 부착하여야 합니다.  
\* 원심력집진시설, 세정집진시설, 여과집진시설, 전기집진시설, 흡수에 의한 시설, 흡착에 의한 시설
- 또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라목에 따라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한 방지시설’은 적산전력계 부착 대상 시설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

# 13

## 대기배출시설 운영기록부 작성 관련 문의

분야 대기환경

담당 부서 대기관리과

### 질의내용



- ☑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6조 별지 제7호서식) 작성 시 결재선에 대해 알려주세요.

### 답변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6조 따라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배출(방지)시설에 대한 운영 기록(배출구별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시간, 방지시설 운영사항, 자가측정사항 등 포함)을 1~3종의 경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과 자가측정에 대한 전산기록·보존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24-159호)'에 따라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으로, 4·5종의 경우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해야 합니다.
- 같은 별지 제7호 서식에는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운영일지 작성자뿐만 아니라 공장 운영을 책임지는 대표자 또는 공장 책임자가 해당 시설의 가동상태를 매일 확인토록 하기 위하여 결재선을 담당, 과장, 부서장, 공장장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의 최종 결재는 그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 운영의 최종책임자가 하여야 하며 회사의 내부규정 또는 업무분장 등에 따라 대표자로부터 당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경우 위임받은 자가 결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6조

# 14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부 작성 방법

분야 대기환경

담당 부서 대기관리과

### 질의내용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시설의 운영기록부 작성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 답변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기배출사업장 중 4종·5종 사업장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간 중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부(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을 매일 기록하고, 최종 기재한 날로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 다만, 사업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과 자가측정에 대한 전산기록·보존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24-159호)에 따른 전산에 의한 방법(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 SEMS)으로 기록·보존할 수 있음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적산전력계 부착면제에 해당하는 방지시설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제2호가목의 방지시설 전력사용량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로 전송된 측정결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로 전송된 측정결과 외의 항목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추가적으로 기록·관리해야 합니다.
- 아울러, 사물인터넷 측정기기의 측정결과가 그린링크에 상시 전송되지 않아 그 측정결과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운영기록부를 별도로 작성하여 해당 일자의 운영기록부가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

# 15

## 비산배출시설 설치 신고 대상 여부

분야 대기환경

담당 부서 대기관리과

### 질의내용



☑ 비산배출시설 설치 신고대상 여부 확인 방법을 알려주세요.

### 답변



-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의2에 따라 비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비산배출시설의 설치·운영신고를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에 따른 비산배출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같은 법에 따른 비산배출 저감제도의 관리대상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9]에 따른 비산배출의 저감대상 업종 시설 중,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에 따른 적용요건\*을 충족하는 시설이라야 합니다.

\* ① 취급요건 : 관리대상물질 농도합이 5wt% 이상인 유체를 포함·접촉하는 시설

② 시설요건 : 개별 비산배출시설별로 별도 적용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

# 16

## 젤 타입 연료의 사용금지 고체연료 해당 여부

분야 대기환경

담당 부서 대기관리과

### 질의내용



- ☑ 공사장 콘크리트 양생 등을 위해 사용하는 에탄올/메탄올을 주재료로 하는 젤타입의 연료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사용금지 고체연료에 해당하나요?

### 답변



- 「대기환경보전법」 제42조에 따라 환경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연료의 사용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연료를 제조·판매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문의하신 에탄올을 주원료로 하여 물과 혼합하여 제조한 젤 타입 연료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2조 각 호에서 사용을 제한하는 고체연료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위 조항의 규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화학물질관리법」 등 타 법 저촉 여부 확인 및 고체연료 사용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 등 환경 영향과 인근 주민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고체연료 사용을 제한하거나 줄이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2조

# 17

## 제작차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보증기간 문의

분야 대기환경

담당 부서 교통환경과

### 질의내용



- ☑ 제작차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보증기간과 자동차에 부착되어 있는 표지판의 '배출가스 보증기간'과는 어떻게 다른지 알려주세요.

### 답변



- 우리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8]을 통해 자동차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보증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 2016년 1월 1일 이후 제작자동차의 경우 3.5톤 미만 경유 및 휘발유를 사용하는 중·소형/승용·화물자동차의 정화용촉매, 선택적환원촉매, 질소산화물저감촉매, ECU의 경우 7년 또는 120,000km의 보증기간을, 그 외 부품의 경우 5년 또는 80,000km의 보증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택시 제외)  
※ 보증기간의 만료는 기간 또는 주행거리 중 먼저 도달하는 것을 기준으로 함
- 경유 및 휘발유를 사용하는 3.5톤 이상 대형, 초대형 승용·화물차의 경우 모든 배출가스 관련 부품에 대하여 2년 또는 160,000km의 보증기간이 적용됩니다.
- 통상 자동차에 부착되어 있는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 내 기재된 '배출가스 보증기간'은 해당 차종이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17]에 따른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함을 인증받은 사실을 표시한 것으로,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보증기간(무상수리기간)과는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 및 시행규칙 [별표 18]

# 18

##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가능 대수

분야 대기환경

담당 부서 교통환경과

### 질의내용



☑ 1인이 다수의 차량을 신청할 경우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이 어떻게 되나요?

### 답변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1인이 다수의 차량을 신청하여 과다 수령한 사례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1인당 1대로 우선지원 하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다만, 지자체마다 기간을 정하여 신청을 받아 1인 1대로 우선지원 후 잔여 예산 발생 시 다수 신청 차량 지원을 하고 있으니 해당 지자체 사업 공고문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2025년도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 19

## 공동명의 차량의 조기폐차 지원 가능 여부

분야 대기환경

담당 부서 교통환경과

### 질의내용



- ✓ A(개인) 명의였다가 A·B(공동) 명의로 이전 한 경우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가요?

### 답변



- 조기폐차는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 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에 대해 지원 가능합니다.
- 당초 A 소유주의 등록 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면 도중에 B와 공동명의로 되었다 하더라도 조기폐차 지원이 가능합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2025년도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20

## 공동명의 차량의 소상공인 추가 지원 가능 여부

분야 대기환경

담당 부서 교통환경과

### 질의내용



- ✓ A(개인) 명의였다가 A·B(공동) 명의로 이전 된 경우 조기폐차 보조금 소상공인 추가 지원이 가능한가요?

### 답변



- 조기폐차 시 소상공인 추가 지원의 경우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6개월 이상 차량을 연속으로 소유한 경우에 지원 가능합니다.
- A, B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A 또는 B 중 1명이라도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6개월 이상 차량을 소유하였다면 소상공인 추가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이 경우 나머지 공동명의자(B)에게도 업종별 소상공인 연간 지원 대수와 한도는 동일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2025년도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 21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 대상 여부

분야 대기환경

담당 부서 교통환경과

### 질의내용



- 2010년에 제작된 덤프트럭(도로용 3종 건설기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사업지침 및 공고문에는 2009.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라고 명기되어 있는데, 제가 소유한 2010년식 덤프트럭은 조기폐차 지원 대상이 안되나요?

### 답변



- 배출가스허용기준 유로4 이하(유로3 등)가 적용된 엔진이 장착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25년도 기준 모두 조기폐차 지원 대상입니다.
- 사업지침 및 공고문에 명기된 “2009.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에서
- “2009년 8월 31일”은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의 제작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배출가스허용 기준 유로5의 시행시점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2009.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라면 제작연도가 2010년 이상이라도 조기폐차 지원 대상입니다.
- 다만, 반드시 제작사에서 발급한 유로4 배출가스허용기준 적용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유로 5 이상은 지원대상 제외)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증빙서류 발급처 : 출고 당시 해당 제작사 문의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5] 및 '2025년도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관련 문의

분야 대기환경

담당 부서 교통환경과

### 질의내용



- ☑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 지원사업 참여 방법과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 차량 사후관리에 대해 알려주세요.

### 답변



-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지원 대상 차량(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인지 확인 후 차량 본거지 기준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 게시된 운행차 배출가스저감사업 공고를 확인하여야 하며, 공고를 통해 우선지원대상, 신청 시기 및 절차 안내가 되고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보증기간은 3년이며, 주기적인 필터 클리닝과 장치 고장 시 장치 제작사\*로 직접 접수하거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통합콜센터(1544-0907)로 문의하여 조치 가능합니다.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에 각 제작사별 연락처 게시되어 있음.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 23

##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관련 문의

분야 대기환경

담당 부서 교통환경과

### 질의내용



- ☑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관련 규정과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대상 기준에 대해 알려주세요.

### 답변



-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4항에 따라 수도권에서 시행되는 건설업 공사 중 총 공사금액이 100억 이상인 관급공사에 건설기계를 사용 시 노후 건설기계 5종\*에 대해 저공해조치 완료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 또는 콘크리트믹서트럭이 대상.
    - \*\* '05년(Euro3)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
  - \* 비도로용 2종 건설기계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제4호가목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되었거나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가 대상.
    - \*\* '04년(Tier1)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
- 「대기관리권역법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대기관리권역에서 총 공사금액이 100억 이상의 토목사업 또는 건축사업을 발주하거나 시행하는 경우 제31조제2항 각호에 따른 저공해조치를 한 특정건설기계 등을 사용하거나 사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현재 저공해 조치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조기폐차 지원사업과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사업(덤프트럭만 해당), 비도로용 2종 건설기계는 조기폐차 지원사업과 엔진교체(전동화 포함) 참여 가능합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제4항,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제2항

분야 대기환경

담당 부서 생활환경과

## 질의내용



- ☑ '25년 상반기 중에 개업 예정이며,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제13호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시설입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려 할 때, 측정시기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제1호에 따라 '25년 6월 30일까지인가요?

## 답변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10년 동안 기록·보존하여야 합니다.
  - 이 경우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른 측정대상 오염물질이 [별표 2]의 오염물질 항목에 해당하면 1년에 한 번, [별표 3]의 오염물질 항목에 해당하면 2년에 한 번 측정하여야 합니다.
- 기존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실내공기질 측정시기는 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제1호에 따라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나,
  - '25년 상반기 중 개업 예정인 다중이용시설의 측정시기는 법 시행규칙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당해 시설이 설치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기산합니다.
- 참고로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한 경우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록·보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봄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2조

# 25

## 건축자재 사용제한 관련 문의

분야 대기환경

담당 부서 생활환경과

### 질의내용



-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제1항에서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자는 건축자재를 사용하려는 경우 법 제11조의6제1항에 따른 표지를 붙인 건축자재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자의 정의가 무엇인가요?

### 답변



-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 제11조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에 사용되는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관리 취지는 다중이용시설 이용자 및 공동주택 사용자의 건강을 위해 해당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축주에게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 의무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 이에 따라 법 제11조의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을 설치(기존 시설 또는 주택의 개수 및 보수 포함)하는 자란 건축주를 말하며, 건축주란 실질적으로 해당 건축자재를 선정·계약한 건축주나 공사시공자 등을 사용자로 볼 수 있습니다.
- 한편, 환경부는 실내공기질 기준과 별도로 실내공기 오염원 관리를 위해 건축자재에 대한 방출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며, 법 제11조에 따라 건축자재의 제조·수입업자는 건축자재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폼알데하이드, TVOC, 톨루엔)이 일정기준 이내임을 시험기관으로부터 확인받고 다중이용시설 및 신축 공동주택 설치자에게 공급하여야 하며, 시설 설치자는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사용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

# 26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의 교육

분야 대기환경

담당 부서 생활환경과

### 질의내용



- ☑ 다중이용시설 등의 오염도 검사 결과 보수교육을 면제 받았으나, 소유자 등이 변경된 경우 교육을 새로 받아야 하나요?

### 답변



-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 등’)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이 된 날부터 1년 이내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다만, 법 제13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오염도 검사 결과 법 제5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보수교육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의 다중이용시설의 교육 이수자가 퇴사하였다면 차기 소유자 등이 신규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나 법 제13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오염도 검사를 받아 보수교육 면제받은 사항은 유지되므로, 차기 소유자 등의 다음 보수교육은 면제됨을 안내드립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 27

## 폐업 예정 시 실내공기질 측정 의무

분야 대기환경

담당 부서 생활환경과

### 질의내용



☑ 대규모 점포가 폐업(5월31일) 예정 시 실내공기질 측정을 해야하나요?

### 답변



-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 제12조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다중이용시설별 측정 시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문의하신 대규모 점포의 경우 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측정시기는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따라서 운영 중인 대규모 점포가 5월 31일까지 영업 후 6월 30일 이전에 폐업할 경우 자가측정 의무는 소멸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 28

## 실내공기질 측정 대상

분야 대기환경

담당 부서 생활환경과

### 질의내용



☑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도 실내공기질 측정을 해야 하나요?

### 답변



- 신축되는 공동주택 등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내공기질 관리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은 입주 전에 시공자가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자(시행규칙 제7조제1항)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적용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은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연립주택, 기숙사이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오피스텔, 생활형숙박시설은 실내공기질 측정 대상시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실내공기질관리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 29

## 사업장 실외기 소음 규제

분야 대기환경

담당 부서 생활환경과

### 질의내용



☑️ 주상복합건물 내 2층 식당의 외벽에 설치한 실외기 소음으로 인하여 3층에 거주하는 주민이 피해를 보는 경우 생활소음 규제 적용이 가능한가요?

### 답변



-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에서는 주민의 조용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장·공사장·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하여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적용하여 규제하고 있습니다.
- 2층 식당 외벽에 설치된 실외기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실외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므로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의 생활소음으로 규제가 가능하며, 규제기준 중 ‘사업장-기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소음 측정 시에는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4-69호)」 중 생활소음측정방법에 의거하여 측정하여야 합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 시행규칙 [별표 8]

30

## 종교시설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관련 민원

분야 대기환경

담당 부서 생활환경과

### 질의내용



- ☑ 종교시설(교회, 사찰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생활소음·진동 규제 기준이 적용 가능한가요?

### 답변



- 「소음·진동관리법」은 주로 공장, 공사장, 영리 행위를 하는 사업장 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종교시설은 법적 규제 대상에 포함하기 어렵습니다.
- 다만, 종교시설 내·외벽 등에 설치된 확성기(스피커 포함)가 지속적으로 소음을 유발하는 경우에는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생활소음·진동의 규제 기준”의 확성기소음 규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 및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

# 31

## 위층 아파트 실외기 소음의 층간소음 해당 여부

분야 대기환경

담당 부서 생활환경과

### 질의내용



☑ 공동주택 내 이웃집 에어컨 실외기 소음이 층간소음 기준으로 적용되나요?

### 답변



-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아파트 실외기 소음은 층간소음 범위에는 제외됩니다.
- 아울러,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에 따른 공장·공사장·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실외기 소음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 [별표 8]의 생활소음 규제 기준을 준수하도록 법에서 규제하고 있으나, 공동주택 등 개개인의 가정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실외기 소음은 같은 법에서 규제하는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공동주택 층간소음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 32

## 규모 미만 소음 배출시설의 설치에 관한 문의

분야 대기환경

담당 부서 생활환경과

### 질의내용



☑ 규모 미만 소음 배출시설의 설치 시 신고 대상인가요?

### 답변



-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설치 허가·신고를 받아야 하는 것은 소음·진동 배출시설이며, 사업자가 설치하려는 시설이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에 따른 동력 규모 이상의 것이라면 설치허가·신고 대상입니다.
- 따라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동력 규모 미만의 시설은 소음·진동 배출시설이 아니므로 배출허용기준 준수 의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규모 미만 소음 배출시설이더라도 법 제21조제1항에 해당될 경우 생활 소음·진동 규제 기준으로 규제될 수 있습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별표 1]

# 33

## 병원 광고 조명의 「빛공해방지법」 적용 여부

분야 대기환경

담당 부서 생활환경과

### 질의내용



☑️ 병원 건물에 설치된 옥외 광고 간판(디지털 간판)이 「빛공해방지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나요?

### 답변



- 인공조명으로부터 발생하는 과도한 빛 방사 등으로 인한 국민 건강 또는 환경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인공조명을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하 ‘빛공해방지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옥외광고물법」 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옥외광고물에 설치되거나 광고를 목적으로 그 옥외광고물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는 광고 조명에 해당되기 때문에 「빛공해방지법」 적용 대상입니다.
  -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의료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교정시설 등은 이 법 적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 병원 건물에 설치된 옥외 광고 간판은 의료시설의 광고 조명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법 적용 제외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IV

## 수자원

2025 질의회신 사례집 ●

1. 수자원개발과
2. 하천계획과
3. 하천안전팀

# 01

##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지원 대상

분야 수자원

담당 부서 수자원개발과

### 질의내용



- ☑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 답변



-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댐 건설 완료 후 댐 주변지역의 주민소득 증대와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하며
  - 지원사업의 대상 및 사업구역은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인 댐의 계획홍수위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댐의 발전소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댐주변지역지원사업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댐관리청 또는 댐수탁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또한,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업무처리 규정」에 따라 지원사업 대상은 댐 주변지역 내 거주민으로서, 사업시행 전전년도 12월 31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및 제41조,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업무처리 규정」(환경부고시 제2022-63호)

## 02

#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지원금 배분기준

분야 수자원

담당 부서 수자원개발과

## 질의내용



- ☑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8]에 의거하여 해당 시·군·구에 배분된 사업 금액은 어떤 기준으로 배분되나요?

## 답변



-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은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매년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가 수립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합니다.
- 시·군·구별 지원금 배분은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및 [별표 8]의 기준에 따라 수몰지역 면적 비율, 댐 주변지역지원사업구역 인구 비율, 면적비율 등을 고려하여 배분합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제44조

# 03

## 수상 레저사업 점용허가에 관한 사항

분야 수자원

담당 부서 수자원개발과

### 질의내용



☑ 민간인이 래프팅 사업을 신청할 경우 하천점용허가를 어느 기관에서 받아야 하나요?

### 답변



- 래프팅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수상레저활동에 포함되고, 「하천법 시행령」 제35조에서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놀이 행위”는 하천점용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므로 점용허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 허가대상 지역이 「하천법」 상 하천구역이라면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댐 저수 구역\*일 경우에는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및 제48조 제2항에 의거하여 선박운항, 수상레저 등 물놀이, 낚시행위 금지지역 지정 외에는 댐수탁관리자인 한국수자원공사에게 점용허가를 득하여야 함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댐 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제48조

# 04

## 하천의 구분

분야 수자원

담당 부서 하천계획과

### 질의내용



☑ 하천은 어떻게 구분되며, 누가 관리하나요?

### 답변



- 하천은 「하천법」 제7조에 따라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국가하천은 환경부 장관이 관리하고, 지방하천은 관할 구역의 시·도지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하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소하천의 경우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하천법」 제7조 및 제8조

# 05

## 하천기본계획의 변경 절차 관련 문의

분야 수자원

담당 부서 하천계획과

### 질의내용



- ☑ 하천공사 시행 과정에서 하천기본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나요?

### 답변



- 「하천법」 제25조에 따라 하천관리청은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에 따라 하천공사의 시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계획홍수량을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증가시키는 것, 계획하폭을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확대하거나 10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축소하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위 단서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하천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 06

##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관련 문의

분야 수자원

담당 부서 하천계획과

### 질의내용



☑ 홍수관리구역 안에서 건축물 신축이 가능한가요?

### 답변



- 「하천법」 제38조에 따라 홍수관리구역 안에서 공작물의 신축 또는 개축,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려는 경우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또한, 해당 행위를 하려는 경우 하천기본계획상 계획홍수위보다 높게 하여 이를 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위 규정을 충족하여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을 경우 홍수관리구역 안에서 건축물 신축이 가능합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하천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 07

## 하천점용허가 대상 여부 문의①

분야 수자원

담당 부서 하천안전팀

### 질의내용



- ☑ 하천구역에 편입된 개인 소유의 토지에서 어떤 행위를 하려고 할 때(예시: 본인 소유의 필지 내 일부 하천구역에 배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 답변



-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에 따르면 사유지라 하더라도,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 하천시설의 점용, 공작물의 신축·변경·개축 등”은 하천관리청(국가하천: 유역(지방)환경청, 지방하천: 시·도지사)으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참고〉 하천법 제33조제1항 하천의 점용허가 대상

① 토지의 점용 ② 하천시설의 점용 ③ 공작물의 신축, 개축, 변경, ④ 토지의 굴착, 성토, 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⑤ 토석, 모래, 자갈의 채취 ⑥ 그 밖에 하천의 보전·관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죽목, 갈대, 수초채취, 식물식재, 선박운항, 부유식 도선장·계류장 설치, 수상레저사업 물놀이 등)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하천법」 제33조 및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08

## 하천점용허가 대상 여부 문의②

분야 수자원

담당 부서 하천안전팀

### 질의내용



- ☑ 하천부지에 콘크리트 재료로 포장하는 행위가 고정구조물 설치에 해당되나요?

### 답변



- 콘크리트를 이용하여 토지를 포장하는 행위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합니다. 토지의 형질 변경이란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환경부고시 제2024-94호)」 제7조에서도 토지의 형질 변경의 예로 포장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하천법」 제33조 및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 09

## 하천구역 내 행위의 불법 여부①

분야 수자원

담당 부서 하천안전팀

### 질의내용



- ☑ 하천구역 내 텐트 설치가 불법인지 알고싶어요.

### 답변



- 「하천법」 및 관련 규정에는 텐트 설치에 대한 불법 여부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텐트 설치 기간, 방법, 규모, 위치 등으로 인해 「하천법」의 취지를 훼손하는지, 우수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지, 하천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 등을 하천관리청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하천법」 제33조

# 10

## 하천구역 내 행위의 불법 여부②

분야 수자원

담당 부서 하천안전팀

### 질의내용



- ☑ 하천 내에서 개인의 영리 목적으로 수석을 채취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 답변



- 「하천법」 제33조제1항제5호에서 "토석·모래·자갈의 채취"는 하천점용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취규모 및 방식, 하천관리의 지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하천관리청(국가하천: 유역(지방)환경청, 지방하천: 시·도지사)이 불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하천법」 제33조제1항제5호

# V

## 물환경

2025 질의회신 사례집

1. 물환경정책과
2. 수질수생태과
3. 생활하수과

# 01

## 낙시제한구역에 관한 문의

분야 물환경

담당 부서 물환경정책과

### 질의내용



☑ 낙시제한구역에서의 제한사항 위반 시 처분이 무엇인가요?

### 답변



- 「물환경보전법」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낙시제한구역에서 1명당 4대 이상의 낙시대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 낙시를 한 사람은 동법 제82조제3항제2호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낙시제한구역 내에서의 제한행위에 따른 과태료 부과 권한은 동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낙시 금지·제한 구역 지정권자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있으므로, 법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 소관임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물환경보전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 02

#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 여부

분야 물환경

담당 부서 물환경정책과

## 질의내용



- ☑ 「물환경보전법」 개정('06.4.1) 이전부터 비점오염원 설치 대상 업종의 폐수배출 시설(1만제곱미터 이하)을 운영한 사업장이 단순 부지면적을 증가할 경우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에 포함되나요?

## 답변



-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은 「물환경보전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 내용과 같이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제도 시행(2006.4.1.) 이전 면적 1만제곱미터 이하로 설치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장이 별도의 폐수배출시설 허가(신고) 또는 변경허가(신고) 행위 없이 부지면적만 증가된다면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물환경보전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 03


## 비점오염원 변경신고 대상 여부

분야 물환경

담당 부서 물환경정책과

### 질의내용



-  기존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의 부지면적이 증가할 경우, 신규 부지에 폐수 배출시설이 없는 경우에도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되는지,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신규로 설치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 답변



-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제도는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또는 허가를 받은 사업장의 영업활동으로 인해 강우 시 불투수면적(포장면, 건물지붕 등)에서 유출되는 비점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 따라서, 증가되는 부지에 생산설비 등 폐수배출시설이 없는 경우에도 강우 시 비점오염물질이 유출될 수 있으므로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73조제2호에 따라 사업장의 부지면적이 처음 신고 면적의 100분의 15 이상 증가한다면 비점오염원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됩니다.
- 또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기준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에서 정하고 있으며,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매뉴얼(2020.10, 환경부)’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물환경보전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2호

# 04


## 비점오염저감시설 공동사용 가능 여부

분야 물환경

담당 부서 물환경정책과

### 질의내용



- 
 산업단지 내 입주하는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 사업장에서 단지 내 비점오염저감시설을 공동으로 사용이 가능한지, 아니면 저감시설을 신규로 설치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 답변



- 하나의 부지에 비점오염원 설치 신고자가 둘 이상인 경우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려는 자는 「물환경보전법」 제53조제5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제2항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자와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운영비용, 과태료 및 벌금 등에 대한 부담명세 등에 관한 비점오염저감시설 운영 규약을 마련하여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물환경보전법」 제53조제5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제2항

# 05

## 환경기술인의 보수교육 주기

분야 물환경

담당 부서 수질수생태과

### 질의내용



- 가장 최근 수료한 환경기술인 교육 수료일이 2022.5.4.라면 보수교육 기한은 2025.5.4.인가요? 아니면 2025.12.31.인가요?

### 답변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3조에 따라 최초 교육은 기술 인력 등이 최초로 업무에 종사한 날부터 1년 이내, 보수교육은 최초 교육 후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환경기술인의 최초 교육 이수일이 2022.5.4.라면 2025.5.4. 이전에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3조

# 06

## 환경기술인 선임 기준

분야 물환경

담당 부서 수질수생태과

### 질의내용



- ✔️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제4종 또는 제5종 사업장이 공공폐수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시켜 처리할 경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의 비고5를 적용하여 제4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선임하여도 되나요?

### 답변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7]의 비고5는 공공폐수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제1~3종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이 공공폐수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여 처리하더라도 특정수질유해 물질이 배출되는 제4종 사업장이라면 제3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합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9조제2항 및 [별표 17]

# 07

## 환경기술인의 이직 시 교육 이수 관련 문의

분야 물환경

담당 부서 수질수생태과

### 질의내용



- ☑ 환경기술인이 사업장 이직 시 기존 근무하던 사업장에서 이수한 환경기술인 교육이 유효한가요?

### 답변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3조에 따라 최초 교육은 기술 인력 등이 최초로 업무에 종사한 날부터 1년 이내, 보수교육은 최초 교육 후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합니다.
- 환경기술인이 기존 사업장 근무 당시 기수료한 교육 과정이 이직한 사업장에서 요구되는 교육 과정과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교육 실적이 인정됩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물환경보전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

# 08

## 제조공정 내 냉각수 적정 처리 방법 문의

분야 물환경

담당 부서 수질수생태과

### 질의내용



- ✓ 제조공정에서 냉동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냉각탑에서 주기적으로 드레인수 및 설비 이상 시 오버플로우수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냉각수에 화학물질(수처리 약품) 사용 시 드레인수 및 오버플로우수의 올바른 배출(방류) 방법을 알려주세요.

### 답변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할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에서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를 받고 배출되는 폐수는 수질오염오염방지시설로 유입처리 또는 폐수처리업체에 위탁하는 등 적정 처리하여야 합니다.
- 다만, 동 냉각수의 원료 및 부원료, 첨가제, 제품 등에 직접 접촉되지 않은 간접냉각수는 폐수에 해당하지 않으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이하의 수질을 유지할 경우 별도의 처리 없이 공공수역으로 방류할 수 있습니다.
- 폐수배출시설 해당 여부 및 설치 허가(신고) 등 관련 자세한 사항은 인허가 기관인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별표 4]

# 09


## 레미콘 펌프카의 폐수배출시설 신고 대상 여부 및 유출 시 위반 여부

분야 물환경

담당 부서 수질수생태과

### 질의내용



- 
 건설공사현장 내 콘크리트 타설과정 중 레미콘 펌프카 세척수의 '폐수배출시설 신고 대상' 해당 여부 및 동 장비 세척수가 공공 하수관로로 유출될 경우 「물환경보전법」 위반 여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 답변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에 따르면 53)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의 경우 레미콘 차량은 폐수배출시설 관련 시설로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레미콘 타설 등에 사용되는 펌프카 장비 세척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는 그 성상이 레미콘 차량의 세척폐수와 유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레미콘 펌프카가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세척 폐수가 공공수역으로 배출된 경우에는 「물환경보전법」 제15조 위반 사항이 될 수 있으므로, 해당 시설에서 발생한 폐수는 공공수역으로 직접 유출·누출하지 않도록 수질오염방지시설로 유입 처리 또는 위탁 처리 등 적정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별표 4]

# 10

## 기타수질오염원 해당여부 문의

분야 물환경

담당 부서 수질수생태과

### 질의내용



☑ 시래기 삶은 물은 수산물 세척과 같이 기타수질오염원에 포함하여 관리할 수 있나요?

### 답변



- 자연 그대로 수확한 상태인 1차 농산물(가공되기 전의 원료 형태)을 물 세척만 하는 시설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기타수질오염원에 해당됩니다.
- 농산물을 탈피, 절단, 증숙하는 등 복합공정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기타수질오염원이 아닌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됩니다.
  - 이에 질의한 사업장과 같이 1차 농산물이 아닌 건조된 시래기를 물에 데친 것은 기타수질오염원인 '단순 물세척'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폐수배출시설 허가(신고 포함) 관련된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폐수배출시설 인·허가 기관인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 및 [별표 4]

# 11

## 폐수배출시설 운영일지 작성 관련 문의

분야 물환경

담당 부서 수질수생태과

### 질의내용



- ☑ 폐수(5종) 사업장을 운영 중으로 운영일지를 작성 중이나, 주말 및 공휴일, 명절 연휴 등 조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기간에는 운영기록부(일지)의 작성을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 답변



- 「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조업을 할 때에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사실대로 기록하여 보존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 조업을 실시하지 않아 해당 사업장에서 폐수가 전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일자에 대한 운영일지 작성은 생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기타 운영일지 작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폐수배출시설 인·허가를 담당하는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1항

# 12

## 공장 내 순수(RO정제수)제조장치에서 발생한 폐수 재활용 가능 여부

분야 물환경

담당 부서 수질수생태과

### 질의내용



- ✓ 공장 내 순수 제조 장치에서 발생한 폐수를 폐수처리시설로 배출하고 있음, 육안으로 확인 시 폐수의 수질이 양호하여 공장 자체적으로 별도의 탱크에 집수 후 냉각탑 보충수, 청소용수, 화장실(변기) 용수 등으로 재사용 방안을 검토 중인데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 답변



- 질의한 사항만으로는 폐수배출 공정흐름 등 사업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업장의 배출시설에서 발생한 폐수가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최종 방류구를 거쳐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 방류수를 재이용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 다만,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기능 및 공정상 수질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에는 방지시설 설치면제가 가능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물환경보전법」 제35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 13

##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 대상 여부

분야 물환경

담당 부서 수질수생태과

### 질의내용



- ☑ 방류구가 다수인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 기준과 방지시설 면제 사업장의 수질자동 측정기기 설치면제에 대해 알려주세요.

### 답변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라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은 1년 중 가장 많이 배출한 날을 기준으로 정하며, 폐수배출량\*은 그 사업장의 용수사용량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 폐수배출량 = 용수사용량 - (생활용수량+간접냉각수량+보일러용수량+제품함유수량+공정 중 증발량+ 그 밖의 방류구로 배출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물의 양)+공정 중 발생량
- 해당 기준에 따라 2종 사업장의 경우에는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 의무 대상이며, 방류구별로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다만, 처리수가 완전혼합되어 방류수를 대표할 수 있는 지점(방류맨홀 등)에 수질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1대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3조 및 [별표 7]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폐수배출량이 1일 200세제곱미터 미만, 방지시설 설치면제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 등은 수질자동측정기기 및 부대시설을 모두 부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3조 및 [별표 7], [별표 13]

# 14

## 완충저류시설 기술진단 대상 여부

분야 물환경

담당 부서 수질수생태과

### 질의내용



☑ 합류식 하수관로의 저류시설이 완충저류시설 기술진단 대상에 포함되나요?

### 답변



- 완충저류시설은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내 사고 및 화재 등으로 인한 사고유출수 및 초기 우수를 저류하기 위한 시설로,
  - 기술 진단 대상은 「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4에 따라 설치·운영하고 있는 완충저류시설(저류시설, 유입시설(차집관로 등))임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1조의4

# 15

## 폐수배출시설 적산유량계 부착 대상

분야 물환경

담당 부서 수질수생태과

### 질의내용



- ☑ 폐수를 공동방지사설로 유입하여 처리하는 배출사업장에서 방류구에 폐수 적산 유량계 설치가 어려운 경우, 용수 적산유량계의 측정값을 이용하여 폐수배출량 산정이 가능한가요?

### 답변



- 사업자 또는 공동방지사설의 대표자는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공동방지사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용수의 사용량과 폐수배출량을 각각 확인할 수 있는 적산유량계 등 측정기기의 설치계획 및 그 부착 부위를 확인할 수 있는 도면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그 외 적산유량계 설치 위치 등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인·허가 기관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5조

# 16

## 수질배출부과금 산정 기간

분야 물환경

담당 부서 수질수생태과

### 질의내용



☑ 가동개시 신고 사업자의 수질기본배출부과금 산정 기간에 대해 알려주세요.

### 답변



- 기본부과금 제도는 공공수역에 배출되는 오염물질 배출총량을 줄이기 위한 제도로써 부과 기간 중에 새로이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득한 사업장의 기본부과금 부과 기간은 가동개시신고 기간 종료일부터 해당 부과 기간 종료일까지 산정됩니다.
- 가동개시 신고를 한 사업자는 「물환경보전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시운전 기간 등)에 따른 기간 이내에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될 수 있도록 방지시설을 운영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에는 같은 법 제41조(배출부과금)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물환경보전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

분야 물환경

담당 부서 수질수생태과

## 질의내용



- ☑ 완충저류시설은 초기 우수를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을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것 인가요?
- ☑ 「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4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수·폐수 등을 일시적으로 담아두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일시적으로 담아 둔 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들어가서 처리된 후 방류되는 것이지요?
- ☑ 「물환경보전법」에서의 「완충저류시설과 완충저류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지침」에서의 완충저류시설의 목적이 상이한 것이 아닌지요?

## 답변



- 완충저류시설은 사고유출수의 하천 직유입 차단 및 강우 시 비점오염저감 기능을 갖추어야 합니다.
  - 다만,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고유출수 저류 기능만 갖출 수 있습니다.
-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에서 사고유출수가 발생하면 완충저류시설에 충분히 저류시킨 후 수질분석을 실시하여 연계(위탁)처리 또는 하천방류를 결정합니다.
- 「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4제1항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설치의무 기준에 해당되는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수·폐수 등을 담아둘 수 있는 완충저류시설을 설치·운영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완충저류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지침에서는 완충저류 시설의 적정한 설치 및 운영·관리 세부내용 등 해당 법령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목적이 상이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4, 「완충저류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지침」

# 18

## 유기견 보호센터의 「가축분뇨법」 적용 문의

분야 물환경

담당 부서 수질수생태과

### 질의내용



☑ 유기견 보호센터가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허가) 대상에 해당하는지 알고싶어요.

### 답변



- 유기견 보호센터의 경우 유기 동물의 구조·보호를 위한 보호시설이라는 목적을 고려하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에 따른 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 유기견 보호센터는 「가축분뇨법」 제10조에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인허가 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가축분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축분뇨의 관리·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 유기견 보호센터에서 가축분뇨를 투기·유출 또는 방치하는 경우 「가축분뇨법」 제10조에 따른 제재 및 조치명령이 가능하며, 그 외의 개별법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 19

##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신고)규모 산정

분야 물환경

담당 부서 수질수생태과

### 질의내용



- ☑ 동일 사업장에 각각 다른 축사가 있을 경우 하나의 시설 인지, 각각의 시설인지 알려주세요.

### 답변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동일 사업장에 같은 종류의 시설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의 면적을 합산한 것을 해당 시설의 규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동일 사업장에 다른 종류의 시설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도 해당 배출시설의 기준 면적 대비 각 배출 면적의 합이 1 이상이면 해당 시설을 허가(신고)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배출시설에 대한 적정 처리 시설 또는 처리 방안, 처리형태, 분리 목적, 축사 간 거리, 독립적으로 운영이 가능한지 등 구체적인 내용 및 현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허가권자가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별표 1] 및 제8조 [별표 2]

# 20

## 가축분뇨 자원화시설을 임차하여 재활용 신고 가능 여부

분야 물환경

담당 부서 수질수생태과

### 질의내용



- ☑ 운영 중인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다른 사업자가 임대하여 운영할 시 가축분뇨 재활용 신고가 가능한가요?

### 답변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제4호에 따라 자원화시설을 설치한 자의 시설을 활용하는 경우 관할 인·허가기관에 시설이용 계약서 및 확인서를 제출하여 재활용 신고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인·허가기관은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시설의 일부를 임차하여 운영해도 「가축분뇨법」에 적합한 방식으로 가축분뇨 재활용을 할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 21

## 화재로 소실된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재축 가능 여부

분야 물환경

담당 부서 수질수생태과

### 질의내용



- ☑ 화재로 소실된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재축 가능 여부와 위 시설이 현재 지자체 가축사육 제한 조례로 가축사육 제한 구역일 경우 재축이 가능한가요?

### 답변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제8조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사무는 지자체 고유 사무로 규정하고 있어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질의하신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배출시설의 화재로 인한 재건축을 허용할 수 있는지는 인·허가권자가 검토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되므로, 자세한 사항은 인·허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서 설치 허가를 완료한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경우 해당 시설이 화재로 소실하였다고 하여 「가축분뇨법」 상 허가 또는 신고 수리된 사항이 말소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 22

## 「가축분뇨법」상 제외되는 가축의 분뇨처리

분야 물환경

담당 부서 수질수생태과

### 질의내용



- ☑ 「축산법」에 토끼·타조·칠면조·거위·기러기·꿩은 가축이나, 「가축분뇨법」상 가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가축 사육 시 발생하는 분뇨의 처리 방법을 알려주세요.

### 답변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가축은 소·돼지·말·닭, 젓소·오리·양(염소 등 산양 포함)·사슴·메추리·개를 말하므로
  - 토끼·타조·칠면조·거위·기러기·꿩은 「가축분뇨법」상의 가축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 이에 따라, 토끼·타조·칠면조·거위·기러기·꿩에 대해 「가축분뇨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 허가 및 신고 의무, 처리 시설 설치 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다만, 「가축분뇨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가축의 분뇨는 전량 수거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 배출되는 분뇨로 인해 환경오염을 일으킬 시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등 기타 개별법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 23

## 하수처리시설의 구분 관련 문의

분야 물환경

담당 부서 생활하수과

### 질의내용



- 군수가 관리하고 있는 ‘○○의료원’의 오수처리시설(70톤/일)과 ‘한마음회관’의 오수처리시설(50톤/일)은 건물 또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키 위해 설치된 시설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였기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인지, 아니면 “개인하수처리시설”인가요?

### 답변



- 귀하가 문의하신 하수처리시설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이긴 하나, 「하수도법」 제2조제13호에 따라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로서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에 해당됩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하수도법」 제2조

# 24

## 공공하수도 설치인가 변경 대상 여부

분야 물환경

담당 부서 생활하수과

### 질의내용



- ✔ 하수도 설치 인허가 관련 질의합니다. 준공이 끝난 하수처리시설이 있습니다. 하수도 설치 인허가도 전부 받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하수처리시설의 탈취시설 용량 증대에 따라 이번에 탈취시설을 새로 설계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탈취시설 용량 증대에 따라 설치인허가 변경을 받아야 하는지요?

### 답변



- 「하수도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공공하수도 설치인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변경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 \* 경미한 사항 :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5조의2(제4호 ; 하수저장시설, 펌프시설, 찌꺼기 처리시설 또는 그 밖의 시설의 처리용량, 면적 또는 길이가 10% 미만을 증감하는 경우)
- 따라서 공공하수도 설치인가를 받은 사항 중 탈취시설의 용량이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 설치 변경인가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하수도법」 제11조

# 25

## 공공하수도 사용 지역의 개인하수처리시설 폐쇄 의무 관련 문의

분야 물환경

담당 부서 생활하수과

### 질의내용



- ☑ 당초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였다가 분류식하수관로 정비를 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하수관로에 연결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폐쇄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건축주 임의대로 기존 시설을 사용해도 되는지 알려주세요. (폐쇄하여야 한다면 어느 조항에 의거하는지)

### 답변



- 「하수도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공공하수도의 사용이 개시된 경우에는 그 배수구역 안의 토지의 소유·관리자는 발생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유입시키고 이에 필요한 배수설비를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기존에 하수처리구역 밖의 건축물이 분류식하수관로가 설치되어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기존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폐쇄하고 공공하수도 하수를 유입시켜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하수도법」 제27조

# 26

## 정화조 폐쇄 가능 여부

분야 물환경

담당 부서 생활하수과

### 질의내용



- 오수 및 분뇨가 정화조를 거쳐 지자체 합류식 관로로 유입되고 있는데, 관로 유입 전 정화조를 반드시 거쳐야 하나요? 폐쇄할 수는 없나요?

### 답변



- 「하수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합류식 하수관로가 설치된 하수처리구역 안에서 수세식 변기를 설치하려는 자는 정화조를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에 의거 정화조는 수세식변기에서 나오는 오수가 아닌 그 밖의 오수를 유입시키는 행위를 금지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생활오수를 정화조로 유입시켜서는 아니 됨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하수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 27

## 증축에 따라 변경된 오수발생량 산정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분야 물환경

담당 부서 생활하수과

### 질의내용



- 기존 공장 1동을 연결하여 증축 예정인데, 오수발생량은 증축 부분만 현행 규정대로 산정하면 되나요?

### 답변



- 「하수도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건축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오수량이 증가되는 때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처리용량을 증대시켜야 합니다.
-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이 수반되는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현재 기준의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환경부고시)」를 적용하여 산출하여야 하며, 다만 기존 허가받은 건축물과 별도로 새로이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라면 변경되는 부분만 현행 고시된 기준으로 오수발생량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하수도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환경부고시)」

# 28

## 방류수수질기준 초과 시 과태료 부과 대상

분야 물환경

담당 부서 생활하수과

### 질의내용



- ☑ 식당 건물로 1명의 세입자가 건물 전체를 사용하며 영업하고 건물주는 거주하지 않고 있는데, 오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초과 시 책임 주체는 누가 되나요?

### 답변



- 「하수도법」 제39조의 의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초과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 경우 관리자의 범위에 임차인은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하수도법」 제39조

# 29

## 대표이사의 기술인력 등록 가능 여부

분야 물환경

담당 부서 생활하수과

### 질의내용



☑️ 개인하수처리시설 시공업 기술자로 대표이사를 등록할 수 있나요?

### 답변



- 「하수도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별표 4]의 규정에 의거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계·시공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장비 및 기술 인력을 갖추어 관할 지자체로 등록하여야 하며,
- 질의하신 대표이사가 「하수도법」 시행령 제31조 [별표 4]의 기술 인력의 요건에 적합한 경우라면 기술 인력으로 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하수도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 30

## 타행위 원인지부담금 부과 기준

분야 물환경

담당 부서 생활하수과

### 질의내용



- ☑ 재건축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하수 및 오수에 의해 공공하수관로의 신설 및 증설이 없는데 「하수도법」 제61조제1항을 적용받지 못하고 같은 법 제61조제2항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이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 답변



- 「하수도법」 제6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따르면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을 수반하는 도시개발사업(「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택법」 등에 따른 개발사업 등)의 개발행위(이하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비용을 부담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본 사업에 대하여는 「하수도법」 제61조제2항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나, 원인지 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세부 사항은 해당 지자체에서 질의회신 및 유사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결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하수도법」 제61조

# 31

## 공공하수도 준설공사 자격 기준

분야 물환경

담당 부서 생활하수과

### 질의내용



- ❑ 공공하수도시설 준설공사 업체 선정 시 장비를 보유하지 않고 임대한 업체는 도급자격에서 제외가 되나요?
  - 입찰공고문에 하수도 준설전용 고압흡입차 보유확인서(임대차계약서 포함)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 임대하는 경우는 제외하여야 하는지?
- ❑ 공공하수도 준설공사 중 준설작업 시 하수도 고압흡입차로 준설하여 중간집하장까지 운반하는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등록한 업체가 수행하여야 하나요?
  - 즉,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및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가 수행해야 하는지?

### 답변



- 「공공하수도 시설 운영·관리 업무지침(2025.2, 환경부)」[붙임 8] “하수관로 유지관리 세부시행요령”에서 도급 준설공사 업체 선정 시 하수도 흡입준설공사는 제한경쟁방법에 의하여 적격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고,
  - 장비 및 인력 보유에 대한 범위, 조건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발주처인 해당 지자체에 확인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준설토사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에 해당되므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처리업(폐기물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지침」(2025.2)

# 32

## 하수도 설치를 위한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기준에서 지하시설물 대상범위

분야 물환경

담당 부서 생활하수과

### 질의내용



- ✔ ‘하수도 설치를 위한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기준’에서 보상대상의 범위 중 ‘평면적 범위는 지하시설물 좌·우로 보호폭 각 0.5미터를 더한 폭과 지하시설물 연장에 수직으로 대응하는 면적’인데, 지하시설물이라 함은 관로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관로의 하단부 기초공도 포함하는지요?

### 답변



- 「하수도 설치를 위한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기준」 제2조제1호에서 지하에 설치한 공공하수도를 “지하시설물”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하수도법」 제2조(정의) 제4호에 따르면 “공공하수도”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하며,
  -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하수도”란 하수와 분뇨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로·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하수저류시설·분뇨처리시설·배수 설비·개인하수처리시설 그 밖의 공작물·시설의 총체를 말합니다.
- 따라서, 하수관로 및 기초공 부분까지 지하시설물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하수도법」 제2조, 「하수도 설치를 위한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기준」 제2조

분야 물환경

담당 부서 생활하수과

## 질의내용



- ☑ 공동주택 아파트 신축 시 오수발생량을 산정할 때 주거시설 외에 헬스장, 사우나, 도서관, 경로당, 어린이집과 같이 아파트 주민들만 사용하는 시설의 경우 오수발생량 산정 시 제외할 수 있나요?  
만약 이들 시설물을 외부인도 같이 사용하는 경우는 오수발생량을 합산해야 되는지, 그리고 주민들 이외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경비실, 관리사무실, 근린생활시설은 복합 용도로 보고 건축물 용도별 연면적을 적용하여 오수발생량을 계산하여 주거 시설과는 별도로 가산하는게 맞나요?

## 답변



- 「하수도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건축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오수량이 증가되는 때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처리용량을 증대시켜야 합니다.
-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 방법 업무편람(2024.6)」에 따르면
  - 아파트 주민들만 이용하는 공동시설(헬스장 등)의 경우 각 용도별로 산정할 경우 이중 산정의 가능성이 있어 오수발생량 산정 시 제외합니다.
  - 즉, 공동시설의 오수발생량 산정 제외 여부는 외부인(입주민 외) 이용 여부를 통해 판단하므로 경비실, 관리사무실, 근린생활시설에서 오수가 발생하는 경우 별도의 시설로 간주하여 오수발생량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 다만, 현장 상황에 따라 산정기준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하수도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환경부고시)」

# 34

## 주방용 오물분쇄기 설치 가능 여부

분야 물환경

담당 부서 생활하수과

### 질의내용



- ✔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집에 설치해서 사용해도 되나요?
- ✔ 음식물을 분쇄한 후 하수구로 배출하는 것이 합법적인지요?

### 답변



-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하수도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찌꺼기 등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공산품을 말하며, 하수의 수질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제조·수입·판매 또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다만,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환경부고시)」에 제3조에 따라 한국물기술인증원에서 주방용 오물분쇄기로 인증받은 제품(환경부 고시 제5조제1항의 인증방법에 따라 분쇄 후 2차 처리기 등을 통해 고형물의 80%를 다시 회수하거나, 하수도로 20% 미만으로 배출하는 제품)의 경우는 일반 가정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 이 경우에도 공공하수처리구역 내에서 사용하거나, 공공하수처리구역 외의 경우 개인하수 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하수도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사용금지(환경부고시)」 제2호, 제3호, 제5호

# 35

##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사용금지」 제2조의 일반가정의 공동주택 포함 여부

분야 물환경

담당 부서 생활하수과

### 질의내용



- ☑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사용금지」 제2조의 「하수도법」 제2조제15호에 의한 하수처리구역 내 일반가정은 공동주택을 포함하나요?

### 답변



-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사용금지(환경부고시)」 제2조의 「하수도법」 제2조제15호 하수처리구역 내 일반가정에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가정도 해당합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사용금지 고시」 제2조

# 36

## 기술진단의 대행 금지에 관한 질의

분야 물환경

담당 부서 생활하수과

### 질의내용



- ☑ 「하수도법」 제20조의2(기술진단의 대행 등)에서 해당 공공하수도에 관한 계획, 설계, 시공 및 감리를 수행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경우 기술진단을 대행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여기서 ‘계획’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말하는 건가요?

### 답변



- 「하수도법」 제20조의2 제1항제2호에 따른 ‘해당 공공하수도에 관한 계획’은 「건설기술진흥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계획을 말하며, 「하수도법」 제5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하수도법」 제20조의2제1항제2호

# 37

##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 점검의 평가 세부 항목 기준

분야 물환경

담당 부서 생활하수과

### 질의내용



☑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 점검의 평가 세부 항목 기준은 어디서 확인 가능한가요?

### 답변



- 「하수도법」 제69조의2 및 「일반수도사업 및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점검 기준(환경부 고시)」에 따라 매년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점검 업무처리지침(환경부)」에 따라 그 세부 평가 항목을 정하고 있습니다.
- 해당 지침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http://www.me.go.kr)) 정보공개-사전정보공표에서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점검 업무처리지침'으로 검색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하수도법」 제69조의2,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점검 업무처리지침(환경부)」

# 38

##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수질검사 주기

분야 물환경

담당 부서 생활하수과

### 질의내용



- ☑ TMS 측정기기가 미부착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경우 수질검사 주기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 「하수도법」 제1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라 50m<sup>3</sup>/일 이상 500m<sup>3</sup>/일 미만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검사는 주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하수도법」 제1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 39

##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 범위 및 확인 방법

분야 물환경

담당 부서 생활하수과

### 질의내용



- ☑ 「바이오가스법」에 따른 민간의무생산자 범위와 민간의무생산자 확인 방법을 알려주세요.

### 답변



-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하 ‘바이오가스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민간의무생산자는
  - 바이오가스 생산목표가 설정된 해당 연도 직전 3년간 월평균 돼지 사육두수가 2만5천두 이상인 사업자, 가축분뇨 처리시설 중 1일 가축분뇨 처리용량이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처리시설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 직전 3년간 연평균 사업장별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이 1천 톤 이상인 사업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민간의무생산자는 「바이오가스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바이오가스 생산목표 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매년 고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령 제3조

40

## 민간의무생산자의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 달성 방법

분야 물환경

담당 부서 생활하수과

### 질의내용



- ☑ 「바이오가스법」에 따른 민간의무생산자의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 달성 방법을 알려주세요.

### 답변



-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민간의무생산자의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 달성도는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하는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바이오가스 생산량, 위탁처리하여 생산된 바이오가스의 양, 해당 민간의무생산자 이외의 바이오가스 생산자가 해당 민간의무생산자에게 제공한 바이오가스 생산량으로 산정합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제7조제1항

# VI

## 물이용

2025 질의회신 사례집

1. 물이용정책과
2. 수도기획과
3. 토양지하수과

# 01

## 샤워기 헤드 및 교체필터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대상 여부

분야 물이용

담당 부서 물이용정책과

### 질의내용



- ☑ 샤워기 헤드 및 교체필터 제품이 「수도법」에 따른 위생안전기준 인증 대상에 해당하나요?

### 답변



- 「수도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수도시설(취수·저수·도수 시설은 제외) 중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수입하려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르는 위생안전기준에 맞는지에 대해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위생안전기준 인증대상 제품은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환경부령)」 [별표 1] 및 ‘그 밖에 음용을 목적으로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환경부고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문의하신 “샤워기 헤드” 및 “교체형 필터”가 싱크대(주방용), 세면대(세면용 및 세면샤워용)에 사용하는 제품인 경우 위생안전기준 인증대상이며, 샤워전용 자재나 제품인 경우 위생안전기준 인증대상 제품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인증대상이 아닌 제품은 그 해당 목적으로만 판매가 가능하고, 해당 제품을 위생안전기준 인증대상으로 사용되는 것을 의미하는 문구, 사진 등의 광고나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판매 차단 등 시정조치 및 고발 등의 법적조치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수도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환경부령)」,  
「그 밖에 음용을 목적으로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환경부고시)」

## 02

# 수도용 외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대상 여부

분야 물이용

담당 부서 물이용정책과

## 질의내용



- ☑ 수도용이 아닌 소방용, 농업용, 공업용 자재나 제품도 「수도법」에 따른 위생안전기준 인증 대상인가요?

## 답변



- 「수도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수도시설(취수·저수·도수 시설은 제외) 중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수입하려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르는 위생안전기준에 맞는 지에 대해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수도용이 아닌 기타 목적의 전용(專用)제품(소방, 농업, 공업 등)인 경우, 위생안전기준 인증대상 제품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인증대상이 아닌 제품은 그 해당 목적으로만 판매가 가능하고, 해당 제품을 위생안전기준 인증대상으로 사용되는 것을 의미하는 문구, 사진 등의 광고나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판매 차단 등 시정조치 및 고발 등의 법적조치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수도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 03

## 정수시설에 사용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대상 여부

분야 물이용

담당 부서 물이용정책과

### 질의내용



- ☑ 정수시설(정수장 내)에 사용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펌프류 및 기타설비류 등)의 위생안전기준 인증대상 여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 답변



- 「수도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수도시설(취수·저수·도수 시설은 제외) 중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수입하려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르는 위생안전기준에 맞는 지에 대해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인증대상은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환경부령)」 [별표 1]에 따라 금속관류, 비금속관류, 밸브류, 펌프류, 수도꼭지류, 유량계류, 수도미터류, 도료류로 구분하며,
  - 이외의 제품은 ‘그밖에 음용을 목적으로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환경부고시)’에 따라 정수시설 및 정수시설 외의 대상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 다만, 민원인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만으로는 인증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움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위생안전기준 인증 업무 담당기관인 한국물기술인증원(☎053-601-6360~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수도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환경부령)」,  
 「그 밖에 음용을 목적으로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환경부고시)」

# 04

## 일반 건축물의 수도용 자재나 제품 관련 문의

분야 물이용

담당 부서 물이용정책과

### 질의내용



- ☑ 일반 건축물의 경우 수도용 자재나 제품의 성능인증(적합 인증 등) 제품을 사용해야 하나요?

### 답변



- 「수도법」 제14조에 따라 일반 사용자의 경우(일반수도 또는 전용상수도를 설치하려는 자 제외) 위생안전기준 인증(KC인증) 제품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며 성능인증\*에 대해서는 강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2) KS인증, 우수단체표준, 단체표준, 환경표지, 신기술 인증, 신제품 인증, 형식승인, 적합 인증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수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

# 05

## 다중이용시설 내 정수기 설치 신고 관련 문의

분야 물이용

담당 부서 물이용정책과

### 질의내용



☑ 다중이용시설의 정수기 설치 신고 및 신고 주체가 누구인가요?

### 답변



- 정수기 설치·관리자란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7의2호에 따라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에 정수기를 설치 및 관리하는 자를 말하며, 정수기 설치·관리자는 「먹는물관리법」 제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항에 따라 정수기의 설치 장소, 설치 대수 등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질의하신 시설이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에 해당된다면, 정수기를 렌탈하여 관리하고 있을지라도 정수기 설치·관리자의 정수기 설치 대수 신고 등 의무사항은 다중이용시설 대표자에게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정수기 설치의 신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먹는물관리법」 제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

# 06

## 다중이용시설 내 정수기 관리주체 및 관리 방법

분야 물이용

담당 부서 물이용정책과

### 질의내용



☑ 다중이용시설 내 정수기 관리주체는 누구이며 관리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 답변



- “정수기 설치·관리자”란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7의2호에 따라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에 정수기를 설치 및 관리하는 자를 말하며,
  - 「먹는물관리법」 제8조의2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의 정수기 설치·관리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 장소, 설치 대수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하고, 주기적으로 청소·소독하는 등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 아울러,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4항제3호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정수기 설치·관리자는 정수기의 총대장균군 및 탁도 항목이 수질기준(「먹는물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적합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 질의하신 시설이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에 해당되고, 계약을 통해 정수기 위생에 대한 사항을 위탁 관리하고 있더라도 정수기의 설치·관리자로서 위생적인 관리 의무는 해당 다중이용시설 대표자에게 있으며,
  - 「먹는물관리법」 제8조의2제4항 및 제5항을 위반 시에는 같은 법 제61조제2항제2호의 과태료가 설치·관리자에게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먹는물관리법」 제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

# 07

## 정수기 수질기준 문의

분야 물이용

담당 부서 물이용정책과

### 질의내용



☑ 학교, 음식점, 병원 등에 설치된 정수기는 총대장균군 및 탁도 항목만 수질기준에 적합하게 관리하면 되나요?

### 답변



- 「먹는물관리법」에서는 다중이용시설 내 설치된 정수기에 대하여 ‘정수기 설치·관리자’가 지켜야 하는 관리방법과 수질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7의2호에 따라 「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 시설에 정수기를 설치 및 관리하는 자를 ‘정수기 설치·관리자’라고 하며,
  - 「먹는물관리법」 제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4항제3호에 따라 ‘정수기 설치·관리자’는 총대장균군 및 탁도 항목이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 따라서, 해당 정수기가 「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내 정수기에 해당할 경우, 총대장균군 및 탁도 두 가지 항목은 수질기준에 적합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 또한, 시설별로 「학교보건법」,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등 관련 법령에서 별도 규정된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먹는물관리법」 제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

# 08

## 정수기 설치금지 장소

분야 물이용

담당 부서 물이용정책과

### 질의내용



☑ 정수기 설치금지 장소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2는 냉·온수기 또는 정수기의 설치금지 장소로 실외 또는 직사광선이 비추는 장소, 화장실과 가까운 장소, 냉·난방기 앞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 설치 장소에 따라 주변 환경이 다를 수 있으므로, 거리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 냉·온수기 및 정수기의 신고수리, 검사 등은 각 지자체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더 자세한 사항은 소관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2

# 09

## 정수기 필터의 인증 등 대상 여부

분야 물이용

담당 부서 물이용정책과

### 질의내용



☑ 정수기 필터는 인증, 신고 등 대상에 해당하나요?

### 답변



-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7호에 따라 정수기는 물리적·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과정을 거치거나 이들을 결합한 과정을 거쳐 먹는물을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맞게 취수 꼭지를 통하여 공급하도록 제조된 기구를 말하며,
  - 「먹는물관리법」 제21조제7항 및 ‘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에 따르면, 정수기 제조업 또는 수입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정수기 완제품에 대한 품질검사(강제인증)를 받고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나, 필터 단품은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품질검사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정수기 부속품인 필터는 한국정수기공업협동조합에서 단체표준을 통해 인증(임의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한국정수기공업협동조합 고객지원부서(☎ 02-594-1100)
- 아울러, 해당 제품을 판매할 시에는 「먹는물관리법」 제40조의2(유사 표시의 사용금지)에 따라 ‘정수기’ 제품명을 사용하거나 그 밖의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됨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먹는물관리법」 제21조제7항, 「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

# 10

## 공장설립승인제1호지역 내 공장 설립 가능 여부

분야 물이용

담당 부서 수도기획과

### 질의내용



☑ 공장설립승인제1호지역 내 커피제조업을 할 수 있나요?

### 답변



- 「수도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르면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 및 취수시설의 상·하류 일정 지역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설립할 수 없습니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이란 ①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②「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을 말합니다.
  - 해당 시설이 제조시설 등을 갖추고 상기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에 해당하는 경우 「수도법」 상 공장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수도법」 제7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3제1호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제1호의 지역에는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의 설립이 가능하며,
  -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의 폐수배출시설(같은 법 제32조제7항제2호에 따른 폐수를 전량(全量) 위탁처리하여 공공수역으로 폐수를 방류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과, 같은 법 제33조제7항에 따라 설치되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한다)을 설치하는 사업장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장은 제외됩니다.
- 이와 관련, 「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3제1호의 지역에서 커피 생산 가능 여부는 승인권자인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여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수도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

# 11

## 공장설립제한지역 및 공장설립승인지역 관련 문의

분야 물이용

담당 부서 수도기획과

### 질의내용



☑ 공장설립제한지역 및 공장설립승인지역 내 공장설립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 공장을 설립하려는 부지가 「수도법」 제7조의2제1항 및 「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공장설립제한지역에 위치한다면 공장을 설립할 수 없으나,
  - 공장을 설립하려는 부지가 「수도법」 제7조의2제3항 및 「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3에 따른 지역에 해당한다면, 「수도법 시행규칙」 제2조의3 및 제3조에 따른 승인요건과 준수사항을 만족할 시 공장설립이 가능합니다.
- 「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3에 따른 지역은 제1호 및 제2호 지역에 따라 승인요건이 상이하므로,
  - 해당 공장의 설립 가능 여부는 설립하려는 위치 및 세부 승인요건을 확인하시어 허가기관인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여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수도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

# 12

## 공장설립제한지역 내 공장부지 증설 가능 여부

분야 물이용

담당 부서 수도기획과

### 질의내용



☑ 공장설립제한지역 내에서 공장부지를 증설할 수 있나요?

### 답변



- 「수도법」 제7조의2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 지역이나 취수시설의 상·하류 일정 지역에는 공장의 설립이 제한되나, 그 중 상수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일부 지역에 공장의 설립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3제1호의 지역에는 폐수배출시설(폐수 전량 위탁, 폐수무방류 배출시설 제외)을 설치하는 사업장 또는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장을 제외한 공장이 「수도법 시행규칙」 제2조의3제1호에 따른 승인요건에 부합한 경우 설립 가능하고,
  -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제2호의 지역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3제2호에 따른 승인요건에 부합하는 공장 중 곡물도정업, 커피가공업 등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2]의 13개 업종만 설립이 가능합니다.
- 다만, 2010년 11월 26일 당시 「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2의 개정 규정에 따른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 이미 설립된 공장이라면, 「수도법 시행령」 부칙 제5조(제22506호, 2010.11.26.)가 적용될 수 있으며,
  - 부칙 제5조제1호에 따라 '2010년 11월 26일 당시 해당 공장 부지면적의 범위'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 등 공장 외의 공장의 공장을 증설하는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 규정과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행위허가권자이면서 현지 여건을 명확히 알 수 있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수도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

# 13

##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허가기준 관련 문의

분야 물이용

담당 부서 수도기획과

### 질의내용



- ☑ 상수원보호구역 내 도로확장에 따라 주택 철거 시 공익사업에 해당하여 주택이 이전 가능할까요?

### 답변



- 「수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마을공동시설·공익시설·공동시설 및 공공시설의 설치로 철거된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이전 또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타인 소유의 토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증축·개축할 수 없는 경우에 그 기존 주택의 철거 및 상수원보호구역 내 인근 지역으로의 이전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도로확장 사업이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제6호에 따른 공익시설 등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 해당 도로확장 사업의 공익사업 해당 및 주택 이전 가능 여부 등은 행위허가권자이면서 현지 여건을 명확히 알 수 있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수도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제6호

# 14

## 환경정비구역 내 주택의 증축 및 재축 가능 여부

분야 물이용

담당 부서 수도기획과

### 질의내용



- ☑ 환경정비구역에서 재축허가를 득한 후 재축 완료 전 설계변경을 통한 증축이 가능할까요?

### 답변



-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제5호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환경정비구역 포함) 내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재축은 기존의 용도와 규모의 범위에서 가능합니다.
- 또한 환경정비구역에서는 「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제1호나목에 따라 기존 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및 기존 면적을 포함한 연면적 66제곱미터 이하의 부속건축물의 증축 등이 가능합니다.
- 다만, 재축 완료 전 설계변경을 통한 증축허가의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수도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제5호 및 제15조제1호

# 15

## 환경정비구역 내 가설건축물 신축 가능 여부

분야 물이용

담당 부서 수도기획과

### 질의내용



☑ 환경정비구역 내 가설건축물을 신축할 수 있나요?

### 답변



- 「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에 따르면 환경정비구역 내에서는 원거주민 또는 보호구역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 하는 주택 및 부속건축물, 일용품의 소매점 등 신축이 가능하나,
  - 허용 규모만을 정하고 있을 뿐 그 구조나 재질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수질오염 가능성 등 해당 시설의 설치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목적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와 관련, 가설건축물 허가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행위허가권자이면서 현지 여건을 명확히 알 수 있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

# 16

## 공장설립제한지역 내 업종 변경 가능 여부

분야 물이용

담당 부서 수도기획과

### 질의내용



- ✔ 공장설립제한지역 내 제조업 공장을 식품업으로 업종을 변경하고자 함.  
- 식품업으로 변경 시 폐수가 발생하나, 폐수처리시설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공장설립제한지역 내 업종 변경이 가능한가요?

\* 1일 최대 폐수량이 20세제곱미터 이하로서 광유류(석유 등 광물성원료로부터 얻어진 기름)가 포함되지 아니한 폐수를 「하수도법」 제2조제9호 및 제13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경우

### 답변



- 「수도법 시행령」 부칙 제5조(제20506호)는 2010년 11월 26일 당시 같은 영 제14조의2의 규정에 따른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 이미 설립된 공장에 대한 경과조치로서, 2010년 11월 26일 이전에 설립된 기존 공장은 폐수배출량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장의 업종을 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등공장 외의 공장으로 변경하는 행위가 가능합니다.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가목2)가) 규정은 이에 해당하는 경우 '폐수배출시설'에서 제외하는 것일 뿐 '폐수'가 발생하는 사실은 변함이 없으므로 실제 폐수배출량이 증가한다면 공장설립제한지역 내 기존공장의 업종 변경을 할 수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수도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부칙 제5조

# 17

## 공장설립제한지역 내 시설 설치 가능 여부

분야 물이용

담당 부서 수도기획과

### 질의내용



- ☑ 공장설립제한지역에서 건축법상 제조업소(제2종근린생활시설) 설치 가능할까요?

### 답변



- 「수도법」 제7조의2는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 지역이나 취수시설의 상·하류 일정 지역에 설립할 수 없는 공장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을 말합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문의하신 업소가 「수도법」 상 공장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단이 필요하므로,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허가권자인 소관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수도법」 제7조의2

# 18

## 상수원보호구역 내 벌채 가능 여부

분야 물이용

담당 부서 수도기획과

### 질의내용



☑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벌채 행위를 해도 되나요?

### 답변



- 「수도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상수원의 보호를 위한 수원림의 조성·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나무의 재배·벌채와 공공사업의 시행 등으로 불가피한 대나무 및 입목의 벌채를 하려고 할 때,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허가를 받아 할 수 있으며,
  - 주택지에서의 나무의 재배·벌채, 지목이 전·답인 토지에서의 농작물 경작을 위한 입목 및 대나무의 벌채 등 경미한 사항은 「수도법 시행령」 제14조제2호 및 제2의2호에 신고행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허가 또는 신고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해 현장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허가권자인 해당 지자체로 문의하여 자세히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수도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4호

# 19

## 공장설립승인제2호지역에서 가능한 제조업 범위

분야 물이용

담당 부서 수도기획과

### 질의내용



☑ 공장설립승인제2호지역에서 할 수 있는 제조업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답변



- 「수도법 시행규칙」 제2조의3제2호에 따라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제조업\*을 영위하는 공장으로서, 동조 각 목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공장설립을 승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곡물 도정업(10611), 곡물 제분업(10612), 기타 곡물 가공품 제조업(10619), 떡류 제조업(10711), 빵류 제조업(10712), 과자류 및 코코아 제품 제조업(10713), 면류, 마카로니 및 유사 식품 제조업(10730), 장류 제조업(10743), 커피 가공업(10791), 차류 가공업(10792), 인삼 식품 제조업(10795), 그 외 기타 전자 부품 제조업(26299),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33910)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수도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3

20

## 수도용 자재 및 제품 위생안전기준 미인증 제품 신고 관련 문의

분야 물이용

담당 부서 수도기획과

### 질의내용



- ☑ 수도용 자재 및 제품 위생안전기준 미인증 제품 신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 「수도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수도시설(취수·저수·도수 시설은 제외) 중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수입하려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르는 위생안전기준에 맞는지에 대해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해당 제품에 대한 인증 여부는 위생안전기준 인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물기술인증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미인증 제품에 대한 신고는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위생안전기준 인증등록정보망의 불법·불량제품 신고센터(<https://portal.kwtc.or.kr>)를 통해서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미인증 제품 관련 자세한 문의사항은 한국물기술인증원(☎053-601-6390~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수도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 21

## 저수조 설치 시 이격거리 기준 문의

분야 물이용

담당 부서 수도기획과

### 질의내용



- ☑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3의2] 제1호에 따른 이격거리 기준에 대한 질의, 맨홀 부분은 건축물(천정 및 보 등)로부터 100센티미터 이상, 그 밖의 부분은 60센티미터 이상 띄워야 하는데, 그 밖의 부분 60센티미터는 어떤 식으로 고려해야 하나요?

### 답변



- 저수조를 설치할 경우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3의2] 제1호에 따르면 저수조의 맨홀 부분은 건축물(천정 및 보 등)로부터 100센티미터 이상, 그 밖의 부분은 60센티미터 이상 간격을 띄우도록 되어있습니다.
- 이는 건축물 벽체와 저수조의 외벽 간 이격거리로서 저수조의 안전 및 위생확보와 동시에 저수조의 설치로 인한 건축물의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 여부 등의 점검을 위한 취지의 규정입니다.
- 그 밖의 부분은 저수조에서 가장 가까운 구조벽체(저수조벽 보강철재, 돌출판넬 등)로부터 60센티미터 이상 띄워서 시공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3의2]

# 22

## 저수조 소독 등 위생조치 대상

분야 물이용

담당 부서 수도기획과

### 질의내용



- ☑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4에 따른 저수조 소독 등 위생조치 대상 관련,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수도법에 따른 저수조 소독 등 위생조치를 해야 하나요?

### 답변



- 「수도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른 일정 규모 이상에 해당하며 지하수를 사용하여 수도시설을 통해 생활용수(음용수 등)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소독 등 위생 조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참고로, 「수도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및 「급수설비관리 업무처리지침(‘24.11)」에서 명시하고 있는 제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소독 등 위생상의 조치를 이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제외대상) 저수조를 거치지 않고 수돗물을 공급하는 건축물이나 시설, 소방전용용수 또는 변기세척용수로만 공급되는 저수조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수도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및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4, ‘급수설비관리 업무처리지침(‘24.11)’

# 23

## 저수조청소업 기준

분야 물이용

담당 부서 수도기획과

### 질의내용



- ☑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7의3] 저수조청소업의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 관련, 저수조청소업의 인력(청소감독원 1명 이상, 청소종사자 3명 이상)을 두 개 이상 업체에 중복하여 신고가 가능한가요?

### 답변



- 「수도법」 제34조에 따라 저수조청소업을 신고하려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의3]에 규정되어 있는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을 갖춰, 해당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수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력 기준(청소감독원 1명 이상, 청소종사자 3명 이상)은 저수조청소업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인력 기준으로, 이들은 상시적으로 근무가 가능한 인력이어야 합니다.
- 따라서, 저수조청소업의 인력 기준을 두 개 이상 업체에 중복하여 신고하는 것은 관련 규정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되므로, 각각 업체에서 해당 인력 기준을 충족하여 신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7의3], '급수설비관리 업무처리지침'(24.11)'

# 24

##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

분야 물이용

담당 부서 수도기획과

### 질의내용



- ☑ 「수도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따른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 관련, 기존의 건축허가 등 단계에서 저수조 설치현황을 포함해서 서류를 제출했는데 다시 신고해야 하나요?
- ☑ 첨부서류 중 시공도면의 경우 해당 저수조 시공이 오래되어서 도면이 없는데 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 답변



- 「수도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시설의 경우 저수조 설치현황을 신고토록 「수도법」이 개정·시행되었습니다.
- 따라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저수조는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2025.7.16.)에 신고해야 하며,
  - 법 시행 이후 신규 설치된 저수조는 저수조를 설치한 날(사용승인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또한, 저수조 시공 도면이 없는 경우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사진으로 대체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수도법」 제33조 및 「수도법 시행령」 제50조

# 25

## 절수설비의 절수 등급 및 표시에 관한 기준 관련

분야 물이용

담당 부서 수도기획과

### 질의내용



- ☑ 「수도법 시행규칙」[별표 2의5]에 따른 절수설비의 절수 등급 및 표시에 관한 기준 관련 기준에 따르면 대변기의 절수 등급 및 표시의 경우 1등급(4리터 이하), 2등급(5리터 이하), 3등급(6리터 이하)로 기준 되어 있음.  
그럼 시험기관 사용수량 결과가 5.4리터인 경우에는 2등급으로 표기가 가능한가요?

### 답변



-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2의5]에 따라 절수설비의 절수 등급 표시를 위해서 「수도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기관에서 절수설비를 시험·검사받아야 합니다.
- 시험·검사기관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이며, 시험·검사방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환경표지인증 기준에서 정하는 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환경표지인증 기준에서 정하는 방법인 EL233(대변기)에서는 적합성 확인을 위해 KS기준(KS Q 5002 데이터의 통계적 기술)을 따르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용수량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2등급의 경우 KS기준에 따른 수치맞음법( $4.5 \leq 5$ 리터 이하 $<5.5$ )을 적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2의5],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환경부고시 제2024-263호)」

# 26

## 절수설비 설치 의무 대상 관련

분야 물이용

담당 부서 수도기획과

### 질의내용



- ☑ 「수도법」 제15조에 따른 절수설비 등의 설치 관련,  
「수도법」에 따른 절수설비 설치 의무 대상 건축물 또는 시설에 대한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 답변



- 「수도법」 제15조에 따라 절수설비 의무 대상(숙박업, 목욕장업, 체육시설업, 공중화장실법에 따른 공중화장실, 1998년 3월 이후 건축된 건축물(신축, 증축, 개축 등))에 포함되는 경우 절수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함
-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절수설비(기기)의 종류 및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이는 수도꼭지(절수형 샤워헤드 포함), 변기로 구분하고 있고 「수도법」상 별도 예외 대상 시설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의무대상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인 경우 반드시 설치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수도법」 제15조 및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

27

##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시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기술 인력 변경 조치

분야 물이용

담당 부서 수도기획과

### 질의내용



- ✓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을 위하여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를 기술 인력으로 보유해야 함.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시 기술 인력 변경 조치를 해야 하나요?

### 답변



-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는 「수도법」 제21조의4에 따른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등록 요건이면서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인력으로,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대체인력 고용 등 기술 인력의 변경 조치가 필요하며, 출산휴가는 그렇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수도법」 제21조의4 및 「수도법 시행규칙」 제12조의3

# 28

## 현장제조염소 사용 시 자가품질검사 관련 문의

분야 물이용

담당 부서 수도기획과

### 질의내용



☑ 현장제조염소 사용 시 자가품질검사의 검사 주체는 누구인가요?

### 답변



- 「먹는물관리법」 제41조(자가 품질 검사의 의무)에 따라 수처리제 제조업자가 자체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제조업자가 직접 검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을 시 같은 법 제43조(검사기관의 지정)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수처리제 검사기관에 위탁해야 합니다.
- 앞서 언급한 수처리제 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자가 품질검사 대행이 가능하며, 수처리제 검사기관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www.nier.go.kr](http://www.nier.go.kr)) - 법령정보 - 분석기관지정 - 수처리제 검사기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먹는물관리법」 제41조

# 29

##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시행 관련 문의

분야 물이용

담당 부서 수도기획과

### 질의내용



☑ 수도시설 기술진단 시행 시기에 대한 세부 기준에 대해 알려주세요.

### 답변



- 「수도법」 제74조(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등) 제1항에 따라 수도사업자는 5년마다 정수장 및 상수도관망 등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 환경부 ‘정수장 운영·관리 업무지침’(2024)에 따르면 진단 주기는 ‘전차년도 기술진단을 착수한 연도를 기준으로 5년이 도래하는 연도에 기술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2020년에 기술진단을 착수한 경우, 그 다음 기술진단은 착수한 년(2020년)을 기준으로 5년 뒤인 2025년에 착수하면 되며, 이전 2020년 실시한 기술진단의 준공(완료) 시점이 2021년이더라도, 그 다음 기술진단의 착수시기는 2020년을 기준으로 2025년에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수도법」 제74조제1항

30

##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등록 요건

분야 물이용

담당 부서 수도기획과

### 질의내용



☑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 답변



- 「수도법」 제21조의4 및 「수도법 시행령」 [별표 2의3]에 따라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등록을 위하여 기술 인력, 장비가 필요합니다.
- 기술 인력의 경우 2개 분야 등록 시 1인 중복허용, 3개 분야 등록 시 2인까지 중복을 허용하고 있으며, 장비는 전체 중복 허용됩니다. 또한 관망관리대행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유역(지방)환경청으로 등록 신청서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수도법」 제21조의4 및 「수도법 시행령」 제34조의4

# 31

##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기술 인력

분야 물이용

담당 부서 토양지하수과

### 질의내용



- ✔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경우 지하수 기술인력 및 대표자 변경사항이 있을 시 꼭 변경 신고를 해야 하나요?
- ✔ 변경 신고로 인해 기술 인력이 미확보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 「지하수법」 제22조에 따라 등록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5항에 따라 대표자(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을 한 지하수조사전문기관의 대표자는 제외한다)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술능력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기준 중 기술 능력은 「지하수법 시행령」 제32조제4항 [별표 4]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충족하여야 하며, 등록요건에 미달된 경우 같은 법 제25조제1항 제2호에 따라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지하수법」 제22조 및 제25조 및 「지하수법 시행령」 제32조

# 32

## 유출지하수 관련 건축물 기준

분야 물이용

담당 부서 토양지하수과

### 질의내용



- ☑ 「지하수법」 제9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라고 명기되어 있는데, 이때 “층”의 기준은 건물 1개동 기준 지상층, 지하층 전부를 포함하여 21개층 이상인지, 건축물의 모든 동(예, 101동 102동 103동) 층수의 합인지 알려주세요.

### 답변



- 「지하수법」 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건설하는 건축물로서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동에서 30톤/일 이상 유출지하수 발생 시 시장·군수·구청장에서 그 발생 현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이때, 건축물 1동 기준은 21층 이상의 건축물 적용시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아파트의 경우, 단지 내 지상의 동 중 1동이라도 21층 이상인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유출지하수가 지하주차장의 집수정으로 유입되는 양(집수정이 여러 개인 경우 합산)을 해당 주차장 상부의 아파트 동수로 나누어 적용합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지하수법」 제9조의2 및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5조

# 33

## 수질분석기관 기술인력 관련

분야 물이용

담당 부서 토양지하수과

### 질의내용



- ☑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의 인력 충족 요건과 관련하여 전체 인원 각각 만족하면 되는지, 아니면 중복하여 적용 가능한가요?

### 답변



- 수질분석기관 지정과 관련하여 기술인력 및 시설 및 장비는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의 각 목을 각각 충족하여야 합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먹는물관리법」 제42조,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

# 34

## 먹는샘물(생수) 내 침전물

분야 물이용

담당 부서 토양지하수과

### 질의내용



- ☑ 생수(먹는샘물)을 구매하였는데, 생수 내 침전물이 있습니다. 침전물이 왜 발생 하나요?

### 답변



- 먹는샘물 내 존재하는 미네랄 성분은 온도 변화에 따라 간혹 백색 또는 갈색의 침전물로 나타날 수 있으며 경도성분(칼슘, 마그네슘)은 인체에 위해하지 않아 WHO 등에서도 심미적인 영향 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먹는물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 35

## 지하수 관정 폐공 및 신고 절차

분야 물이용

담당 부서 토양지하수과

### 질의내용



- ❖ 지하수 관정 사용을 종료할 예정으로, 지하수 개발이용 종료신고, 원상복구 등 폐공처리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 「지하수법」 제9조의3(지하수개발·이용의 종료신고)제1항은 동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가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제20호서식(지하수개발·이용 종료신고서)에 별지 제5호서식(원상복구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있습니다.
- 따라서, 지하수개발·이용의 종료신고 수리 후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며, 시·군·구청장의 신고처리 기간 및 원상복구 공사시기 등을 감안하시어 종료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지하수법」 제9조의3(지하수개발·이용의 종료신고), 「지하수법」 제15조(원상복구 등)

# 36

## 지하수 수질 검사 관련 문의

분야 물이용

담당 부서 토양지하수과

### 질의내용



- ☑ 지하수의 용도(생활/공업/농·어업용수)와 먹는물 여부에 따라 수질검사 주기가 어떻게 구분되나요?

### 답변



- 지하수의 수질검사는 「지하수법」 제20조(수질검사 등)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3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8조에 따라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인 경우 정기적으로 지하수 관련 검사전문기관의 수질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 1. 먹는물
    2. 1일 양수능력이 30톤 이상인 생활용수. 다만, 청소용·조경용·공사용·소방용 등 보건위생과 생태계 보전에 지장이 없는 용도로 이용하는 생활용수는 제외한다.
    3. 1일 양수능력이 30톤 이상인 공업용수
    4. 1일 양수능력이 100톤 이상인 농·어업용수
- 지하수 수질검사 주기는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에 따라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준공확인증을 발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실시하며, 먹는물은 2년마다(다만, 1일 양수능력이 30톤 이하인 경우에는 3년), 생활용수, 공업용수 및 농·어업용수는 3년마다 지하수 관련 검사전문기관(수질검사전문기관)으로부터 지하수 관련 수질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특정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지하수 용도 및 먹는물 사용 여부는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지하수 개발·이용 허가서) 또는 별지 제9호서식(지하수 개발·이용신고서)에서 명시한 용도 및 먹는물 사용 여부에 따르며, 아울러, 수질검사전문기관은 「지하수법 시행령」 제30조, 수질기준은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표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지하수법」 제20조(수질검사 등), 「지하수법 시행령」 제29조(수질검사 등), 「지하수법 시행령」 제8조의2(지하수개발·이용 용도)

# 37

## 토양오염신고

분야 물이용

담당 부서 토양지하수과

### 질의내용



- ☑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1항에 따르면 "지체 없이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토양환경보전법」상 토양오염의 신고 시점, 법적인 신고 절차, '지체 없이'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 답변



- 「토양환경보전법」 제2항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토양오염물질이 누출·유출된 사실을 발견하거나 그밖에 토양오염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토지에 출입하여 오염 원인과 오염도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여 토양오염이 오염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의 의무를 가지며, 소속 공무원의 토지 출입을 통한 오염 원인 및 오염도에 관한 조사를 통해 오염토양에 대해서는 토양정밀조사 및 토양정화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 '지체 없이'는 시간적 즉시성이 강하게 요구되지만 정당하거나 합리적인 이유에 따른 지체는 허용되는 것으로, 사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가장 신속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

분야 물이용

담당 부서 토양지하수과

### 질의내용



- ✔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여 정화된 토양을 사용할 때 사용지에 대한 문의로, 1지역 기준 토양을 정화하여 3지역 기준 지목에 사용 가능한지, 3지역 기준 토양을 1지역 기준까지 정화시킨 후 1지역 기준 지목에 사용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 답변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비고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라 토양오염우려기준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공간정보관리법)」에 따른 지목 등을 기준으로 1·2·3지역으로 구분합니다.
- 일반적으로 정화 명령은 지목을 기준으로 내리게 되며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4 제3호에 따라 누구든지 정화가 완료된 토양을 그 토양에 적용된 것보다 엄격한 우려기준이 적용되는 지역의 토양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따라서 1지역 기준 토양을 정화하여 3지역 기준 지목에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나 3지역 기준 토양을 1지역 기준 지목에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4,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분야 물이용

담당 부서 토양지하수과

### 질의내용



- ☑ 토양오염도 수시검사를 받게 되면 다음 회 정기 토양오염도검사가 면제되는데, 토양오염도 검사 주기가 변동되나요?

### 답변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따른 (수시)토양오염도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다음 회의 (정기)토양오염도 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 따라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수시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은 경우 다음 회(해당 검사 직후)의 (정기)토양오염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므로, 해당 회차 이후에는 (정기)토양오염도검사를 주기에 따라 실시하여야 합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토양환경보전법」 제13조,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8조

40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범위

분야 물이용

담당 부서 토양지하수과

### 질의내용



☑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저장시설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 답변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제4류 위험물 중 제1·제2·제3·제4석유류에 해당하는 인화성액체의 제조·저장 및 취급을 목적으로 설치한 저장시설로서 총용량이 2만리터 이상인 시설(이동탱크저장시설을 제외한다)은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로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해당합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3 및 [별표 2]

# VII

## 자연보전

2025 질의회신 사례집 ●

1. 자연생태정책과
2. 생물다양성과
3. 자연공원과
4. 국토환경정책과
5. 환경영향평가과

# 01

##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대상

분야 자연보전

담당 부서 자연생태정책과

### 질의내용



- ✓ 유원지 조성사업에 대해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함.  
사업규모는 70,000㎡이나 실제 개발면적(훼손면적)이 10,000㎡일 경우, 생태계 보전부담금 대상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중 개발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에 해당되나요?

### 답변



- 생태계보전부담금은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라 자연환경 또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개발사업을 하는 사업자에게 부과·징수하는 제도로,
  - 부과대상사업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중 개발면적이 3만㎡ 이상인 개발사업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개발면적이 3만㎡ 이상) 등이 해당됩니다.
- 위 사업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으로 개발면적, 즉 인·허가 면적이 3만㎡ 이상인 사업에 해당되므로,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대상일 경우에는 같은 법 제46조제3항 및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생태계 훼손면적을 산정하여 부과함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 02

## 생태계보전부담금 훼손면적

분야 자연보전

담당 부서 자연생태정책과

### 질의내용



- ☑ 생태계보전부담금 산정 시 용도지역별 훼손면적 중 지목상 대지 등으로 훼손면적 제외대상으로 산정된 경우, 생태자연도 권역·지역별 훼손면적에서도 제외되나요?

### 답변



- 생태계보전부담금은 생태계의 훼손면적에 단위면적당 부과금액과 지역계수를 곱하여 산정 부과하며, 부과금액 산정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begin{array}{r}
 \text{생태계} \\
 \text{보 전} \\
 \text{부담금}
 \end{array}
 =
 \begin{array}{r}
 \text{단위면적당} \\
 \text{부과금액} \\
 \text{(원/㎡)}
 \end{array}
 \times
 \frac{
 \begin{array}{c}
 \text{용도지역별} \\
 \{ (\text{훼손면적} \times \text{지역별}) + (\text{생태·자연도} \\
 \text{㎡}) \quad \text{지역계수} \quad \text{권역·지역별} \times \text{권역·지역별} \} \\
 \text{훼손면적(㎡)} \quad \text{지역계수}
 \end{array}
 }{2}$$

- 부담금 산정을 위한 훼손면적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른 훼손행위가 발생하는 면적으로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해당하는 면적은 생태계 훼손면적에서 제외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토양의 표토층을 제거·굴착 또는 성토하여 토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행위, 식물이 균락을 이루며 서식하는 지역을 제거하거나 파괴하는 행위, 습지 등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을 개간·준설·매립 또는 간척하는 행위

\*\*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른 지목이 대·공장용지·학교용지·도로·철도용지·체육용지 및 유원지인 토지의 면적, 「국토계획법」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제2호다목의 용도지역 중에서 「공간정보관리법」 제67조에 따른 지목이 전·답·임야·염전·하천·유지·공원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의 면적, 시설물이 설치된 토지의 면적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 03

##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보상방식

분야 자연보전

담당 부서 자연생태정책과

### 질의내용



- ☑ 철새 먹이 제공을 위한 벼짚 존치 계약 체결 시 이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토지 주인이 아니어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 답변



- 벼 수확 후 벼짚을 존치하는 것에 대한 보상은 지역의 벼짚 판매 가격의 최대 2배 이내에서 지불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계약토지면적 5,000㎡ × 계약단가 70원/㎡ = 35만 원

- 최종 단가와 금액은 각 지자체 특성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추진 협의회에서 결정합니다.
- 토지 소유주가 아니더라도 소유주와 협의(관리 위임 계약)하여 실제 조성과 관리를 집행하는 관리인으로서 지불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 04

## 생태·자연도 이의신청 절차

분야 자연보전

담당 부서 자연생태정책과

### 질의내용



- ☑ 기존 고시된 생태·자연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 답변



- 기존 고시된 생태·자연도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려면 이의신청서, 토지소유주 동의서, 자연환경조사보고서 등을 작성한 후 국립생태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① 중앙 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신청하거나
  - ② 직접 문서24(open.gdoc.go.kr) 또는 국립생태원 이메일(ecomap@nie.re.kr)로 제출
- 국립생태원에서 서류 검토 후 이의신청자에게 서류 보완여부 등 결과를 문서로 알리며, 이의신청 접수 이후 현지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결과 대상지역의 생태·자연도 등급 작성 기준과 현재의 자연환경에 차이가 있다고 판단되면 생태·자연도 등급을 재평가합니다.
- 재평가 이후 수정 및 보완된 생태·자연도는 14일간 국민열람을 실시하며, 국민열람 기간동안 추가 의견이 접수되지 않으면 환경부로 고시 요청을 합니다.
- 고시 요청을 받은 환경부는 고시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생태·자연도를 고시하며, 고시 완료일부터 생태·자연도는 효력을 갖게 됩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생태·자연도 작성지침」 제18조

# 05

## 인공증식된 멸종위기 야생생물 가공·유통·보관

분야 자연보전

담당 부서 생물다양성과

### 질의내용



☑ 인공증식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유통(판매)할 수 있나요?

### 답변



-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허가 없이 포획·채취 등을 해서는 아니됩니다.
- 다만, 예외적으로 같은 법 제1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허가를 받은 경우와 같은 법 제14조제3항 각 호의 경우에는 제14조제1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인공증식한 경우에도 유통하는 것을 목적으로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부터 인공증식증명서를 발급받거나(수입·반입한 원산지에서 증식한 것으로 그 원산지에서 인공증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은 경우 포함), 유통을 목적으로 한 인공증식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구비하는 경우에만 유통이 가능합니다.
- 아울러, 인공 증식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양도자는 양수자가 ‘멸종 위기 야생생물의 인공증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적정한 인공증식 장소 및 시설 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가 가능하며, 1차 증식자가 학술·연구 및 복원 목적으로 포획·채취한 개체는 분양 및 양도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 06

## 생태계 교란종 지정 방법

분야 자연보전

담당 부서 생물다양성과

### 질의내용



❖ 칩덩굴처럼 생태계 교란을 일으키는 식물은 어떠한 절차를 거쳐 교란종으로 지정할 수 있나요?

### 답변



- 환경부는 생태계교란 생물을 지정하기 위해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생물다양성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에 따라 대상 생물의 유입 가능성, 정착 가능성, 확산 가능성, 생태계 및 사회경제에 대한 영향 등을 평가하는 “위해성 평가”를 거쳐야 합니다.
- 위해성 평가 결과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큰 것으로 판단되는 종에 대해서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고시합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생물다양성법」 제21조2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

# 07

## 포획된 생태계교란 생물(동물) 처리 방법

분야 자연보전

담당 부서 생물다양성과

### 질의내용



☑ 생태계 교란 생물의 퇴치를 위해 포획된 배스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 답변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생물다양성법’이라 한다)」 제21조2제2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생태계교란 동물은 같은 법 제24조의3에 따라 방출, 방생, 유기 또는 이식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포획한 개체는 고사 처리 후 분비물이 누출되지 않게 종량제 봉투에 담아 완전히 밀봉하여 일반 생활폐기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임을 알려드립니다.
- ※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라 동물의 사체는 생활폐기물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하는 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생물다양성법」 제21조2 및 제24조의3

## 08

#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수확기 피해방지단 참여 가능 여부

분야 자연보전

담당 부서 생물다양성과

## 질의내용



- ☑ 최근 5년 이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았을 경우, 수확기피해방지단 활동 가능 여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 답변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의4제2항 각 호의 기준은 수확기 피해방지단원을 우선 선발하는 기준이며 필수요건은 아닙니다.
- 따라서, 우선 선발한 인원이 지자체가 선발하려는 정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상기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선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다만, 단원의 추가 선발 여부는 해당 지자체장이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이므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4

# 09

## 수렵면허 필기시험 합격증 및 수렵 강습 이수증 유효 기간

분야 자연보전

담당 부서 생물다양성과

### 질의내용



- 수렵면허 필기시험 합격증 유효 기간과 수렵 강습 이수증 유효 기간을 알려주세요.

### 답변



- (수렵강습)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라 수렵 강습 이수증은 수렵면허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수렵강습기관에서 강습을 받은 것만 해당됩니다.
- (수렵면허 필기시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수렵 강습을 받으려는 사람은 수렵면허 필기시험 합격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수렵강습 수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0조

# 10

## C코드 CITES 부속서 I 의 상업적 거래

분야 자연보전

담당 부서 생물다양성과

### 질의내용



- ☑ CITES 부속서 I 에 해당하는 종이 C코드(출처코드)인 경우 부속서 II 로 취급하여 상업적 거래가 가능한가요?

### 답변



- CITES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으로 부속서 I 에 해당하는 생물종은 특별히 엄격한 규제를 받으며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거래가 가능한 종으로, 상업적 거래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다만, 사무국이 지정한 번식장에서 상업적 목적으로 번식된 부속서 I 개체는 부속서 II 로 간주하여 상업적 거래가 가능하고 D코드 출처를 부여받습니다.
- C코드는 사무국에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 비상업적 목적으로 번식된 개체에 부여되는 출처코드로, 부속서 개체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부속서 I 급 종의 상업적 거래는 C코드가 아닌 D코드 출처 개체만 가능합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야생생물법」 제16조

# 11

## 동물원 허가

분야 자연보전

담당 부서 생물다양성과

### 질의내용



- ☑ 기존 등록된 수족관에서 포유류 등을 전시하기 위해서는 동물원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 답변



- 「동물원수족관법」이 전부개정('23.12.14. 시행)되면서 동물원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됨에 따라,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보유동물 종별 서식환경·전문인력 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 수족관 등록 시 제출했던 보유동물 생물종 및 그 개체수의 목록에 해당하는 동물의 전시에 관하여, 부칙〈법률 제19086호, 2022. 12. 13.〉 제7조에 따른 허가에 관한 유예를 적용받아 전시가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 다만, 대표자 변경, 소재지 변경, 보유동물 생물종 및 개체수의 큰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동물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동물원수족관법」 제8조

# 12

## 국립공원 내 사유지에 대한 지정 해제 요청

분야 자연보전

담당 부서 자연공원과

### 질의내용



- 국립공원 내 사유지에 대한 지정 해제 요청합니다.

### 답변



- 국립공원의 지정 해제 및 구역 축소는 「자연공원법」 제8조에 따라 군사 목적 또는 공익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규정된 경우 등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며,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10년마다 공원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공원구역을 조정(편입, 해제)하고 있습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자연공원법」 제8조

# 13

## 국립공원 내 농막 설치 가능 여부

분야 자연보전

담당 부서 자연공원과

### 질의내용



- 국립공원의 자연환경보전지역(공원자연환경지구)의 토지(전 또는 답)에 농막 설치, 농사용 비닐하우스 설치, 농사용 비닐하우스 내 농막 설치 가능한가요?

### 답변



- 농막의 경우, 「자연공원법」 제18조제2항제2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제2항제4호 규정에 따라 「농지법」 제2호제1호가목 본문에 따른 농지에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로 라목에 따른 농막(연 면적 20㎡ 이내로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을 오수처리시설의 설치 등 환경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추어 설치하는 경우로서 「자연공원법」 제23조제3항각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 농업용 비닐하우스의 경우,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9호에 따라 공원자연보전 지구 외의 용도지구에서 설치하는 행위는 신고생략사항으로 허용되는 행위이나, 비닐하우스의 구조, 재질 등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공원관리청(지자체, 국립공원공단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농사용 비닐하우스에서는 농작물 실경작 등 1차 산업 행위만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자연공원법」 제18조 및 제23조,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4조의3,  
「자연공원 공원자연환경지구 내 농막 설치 기준」

# 14

## 공원자연환경지구 내 벌채 조림 및 임산물 채취 가능 여부

분야 자연보전

담당 부서 자연공원과

### 질의내용



- 공원자연환경지구 내 소득사업을 전제로 한 벌채, 조림 등의 행위 허가 가능 여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 답변



- 자연공원에서의 벌채, 조림 및 임산물 채취는 「자연공원법」에 따른 행위 허가 사항으로 신청 시 관할 공원관리청에서 「자연공원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용도지구 허용행위 기준, 보전이 필요한 자연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허가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행위 대상지의 공원관리청(지자체, 국립공원공단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자연공원법」 제18조 및 제23조,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4조의3

# 15

## 공원구역 변경 및 지정 해제 관련 문의

분야 자연보전

담당 부서 자연공원과

### 질의내용



- ☑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4조제5호 ‘공원구역의 경계 또는 그 인접에 집단마을이 형성되어 있거나, 화장장·사격장 등 자연공원으로 사용할 수 없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공원구역으로 존치시킬 필요가 없게 된 경우’와 관련하여, 공원구역 변경에만 해당되는지, 해제에도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 ☑ 집단마을의 정의 및 범위도 알려 주세요.

### 답변



- 질의 ①과 관련하여, 「자연공원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자연공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구역을 축소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경우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질의하신 시행령 제4조는 자연공원의 해제 또는 축소에 대한 사항이며, 공원구역 변경은 확대, 증가 등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 질의 ②와 관련하여, 「자연공원법」에서 ‘집단마을’의 정의 및 범위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공원계획 변경 과정에서 공원자원, 관리여건, 환경영향 등 공원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공원구역 해제가 필요한 마을을 구분하여야 할 것입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4조

# 16

## 국립공원 지정 및 공원시설 조성 요건

분야 자연보전

담당 부서 자연공원과

### 질의내용



☑ 국립공원 지정 및 공원시설 조성 요건에 대해 알려주세요.

### 답변



- 국립공원은 「자연공원법」 제7조(자연공원의 지정기준)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을 기준으로 자연생태계, 생물자원, 경관의 현황·특성, 지형, 토지이용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공원시설의 경우 법 제18조(용도지구)에서 용도지구별로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시설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자연공원법」 제7조 및 제18조

# 17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분야 자연보전

담당 부서 국토환경정책과

### 질의내용



- ☑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등의 변경에 관한 계획이 포함되지 않은 지구단위계획 및 기반시설 변경사항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 답변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2016.11.30 시행)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마목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가목3)의 도시·군관리계획으로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계획이며, 지구단위계획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계획에서는 제외되나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가목5)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합니다.
- 이에 따라 위와 같은 법령 개정으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등의 변경에 관한 계획이 포함되지 않은 지구단위계획 및 기반시설에 대한 변경사항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2]

# 18

##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및 변경 협의

분야 자연보전

담당 부서 국토환경정책과

### 질의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및 변경 협의 대상 여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 답변



-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협의한 개발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협의내용에 반영된 규모보다 일정 규모 이상 증가하는 경우, 협의 내용에서 원형대로 보전하거나 제외하도록 한 지역을 일정 규모 이상으로 개발하거나 그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등이 같은 법 제20조 및 제21조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협의 또는 변경 협의 대상에 해당합니다.
  - 이때, 계획 규모의 증가는 이미 협의한 계획의 규모(면적)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제척·감소되는 규모는 고려하지 않고 추가·확대되는 규모로써 판단하여야 합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환경영향평가법」 제20조 및 제21조

# 19

## 토지이용계획 변경률 산정방법

분야 자연보전

담당 부서 국토환경정책과

### 질의내용



- ☑ 사업 부지면적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변경협의 대상 여부 및 토지이용계획 변경률(누적) 산정 방법을 알려주세요.

### 답변



- 승인기관장 등은 환경보전방안을 검토할 때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2항제5호에 따라 협의내용에 포함된 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의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환경부 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 재협의 또는 변경 협의를 한 경우에는 최종 협의내용에 포함된 전체 부지면적

- 협의 등을 한 후 해당 협의 등의 내용에 포함된 부지면적의 15퍼센트 미만의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이용계획을 여러 차례 변경한 때에는 그 여러 차례 변경한 면적을 누적하여 산정합니다.
- 따라서, 사업 토지이용계획의 변경률은 환경부 장관과의 최종협의 내용에 반영된 토지이용 계획도와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토지이용계획도를 중첩하여 변경된 면적의 비율을 토대로 산정함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5조

분야 자연보전

담당 부서 국토환경정책과

## 질의내용



- ☑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준공 시점을 토목공사 준공으로 보는지와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모든 건축물이 완료된 시점으로 보는지 알려주세요.

## 답변



- 「환경영향평가법」 제37조에 따른 준공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중 공사 시 협의내용이 이행 완료된 실제 공사의 준공을 의미하므로, 실 준공일을 기준으로 준공통보를 하여야 하며, 준공통보 이후부터 운영 시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면 됩니다.
-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는 당초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사후환경조사계획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와는 달리 부분준공 등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 기간 및 조사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에 대하여 승인기관장의 검토를 거쳐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을 변경하면 될 것입니다.
  - 이때, 변경되는 사항이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2항에 해당할 경우 승인기관의 검토 시 환경부 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 및 제37조

분야 자연보전

담당 부서 국토환경정책과

### 질의내용



- 2022년 참고 조성을 위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고, 이후 허가받은 건축 및 개발행위 변경허가와 함께 새로운 공장설립승인을 신청할 경우 별도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지요?

※ 변경허가 사항 : 개발행위허가(참고 → 공장), 건축허가(참고 → 공장, 용도변경)

※ 신규승인 사항 : 공장설립승인

### 답변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한 사업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제4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에 따른 변경협의 사유(협의기준 변경, 협의내용에 반영된 사업규모 30% 이상 증가 또는 [별표 4]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규모 이상, 토지이용계획 30% 변경, 원형보전지역 등 5% 이상 개발, 승인 후 5년 이내 미착공)에 해당될 때에는 변경협의 대상입니다.
- 따라서, 금번 사업계획 변경 내용이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3조의2

# 22

## 가설건축물 단순 신고의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

분야 자연보전

담당 부서 국토환경정책과

### 질의내용



- ☑ 가설건축물(고정용 온실) 축조 신고를 진행할 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 판단 시 지역, 개발사업 종류 및 범위 외 사업의 “승인 등” 해당 여부도 판단기준이 되나요?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사업의 “승인 등”에 단순 신고는 제외되는지요?

### 답변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 에 따라 사업의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 또는 지정 등을 수반하는 사업이며,
- 또한, 같은 표 비고3에 따라 ‘다른 법령에 따라 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사업으로서 [별표 4]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소규모 평가 협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다른 인·허가(의제효과 포함)를 수반하는 가설건축물 신고인 경우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나, 건축행위 외 별도 인·허가를 수반하지 않아 신고만으로 사업 시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9조

# 23

## 조례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

분야 자연보전

담당 부서 국토환경정책과

### 질의내용



- ✓ '25.02.21. 시행된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시·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시행하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이 “시·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에도 해당될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조례 환경영향평가” 중 어느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나요?

### 답변



-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법률 제20334호, 2025.02.21. 시행)는 시·도(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인구 50만 이상의 시)가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개정된 사항으로 민간사업자의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시·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될 경우 조례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며,
- 같은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시·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협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

# 24

## 건축물 연 면적에 따른 조례 환경영향평가 시 대상 면적 범위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생략 여부

분야 자연보전

담당 부서 국토환경정책과

### 질의내용



- ❖ 사업 부지가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별표 4]의 규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면서, “건축물 연 면적”으로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할 경우 사업 부지 전체에 대하여 조례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할 수 있나요?

### 답변



- 건축은 대지에 건축물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건축법」 제11조제11항에 따르면 건축허가 요건으로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 제10조제3항에서는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건축허가 신청 전에 허가권자에게 같은 조 제1항 각호의 사항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했을 때, 사전결정이 된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인 경우 허가권자가 환경부장관이나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협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법률 제20334호, 2025.02.21. 시행)에 따르면 시·도(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같은 법 제44조제3항에 시·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이러한 건축법령의 규정 체계 및 「환경영향평가법」과의 관계를 비추어 볼 때 건축물 연 면적에 대한 조례 환경영향평가는 건축물 건축 부지면적을 포함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며, 조례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 및 제44조, 「건축법」 제10조 및 제11조

# 25

## 자연경관영향 협의 대상

분야 자연보전

담당 부서 국토환경정책과

### 질의내용



- ☑ 산지가 일부 포함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자연경관영향 협의 대상 여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 답변



- 해당 사업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에 해당하면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의 자연경관영향 협의 대상 개발세부협의 기준인
  - ①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따른 공익용 산지 및 공익용 산지 외의 산지에서의 개발사업에 해당하고,
  - ② 높이 15미터 이상의 건축물이 입지하는 개발사업이며,
  - ③ 시행 면적이 3만㎡ 이상인 개발사업에 해당된다면 자연경관영향 협의를 실시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에 해당됩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2]

# 26

## 자연경관영향 협의 제외

분야 자연보전

담당 부서 국토환경정책과

### 질의내용



- ☑️ 경관심의를 완료한 사업의 경우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시 자연경관영향 협의 대상에서 제외하는지요?

### 답변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2] 비고에 따라 같은 표에도 불구하고 제2호 가목(1)·(4)·(5), 같은 호 나목(1)·(2)·(5), 같은 호 자목(2)·(3) 및 같은 호 카목(1)·(2)의 개발사업 등으로서 「경관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자연경관영향 협의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질의하신 사업 내용이 상기 비고에 따른 개발사업에 해당하면서 「경관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한 경우라면 자연경관영향 협의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2]

분야 자연보전

담당 부서 환경영향평가과

## 질의내용



- ☑ 환경영향평가 중점평가사업의 선정 시점 및 선정 시 합동현지조사의 시행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 답변



- 협의기관장은 「환경영향평가서 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5호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서 등에 대한 검토 단계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 또한, 협의기관장은 동 규정 제9조에 따라 중점평가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 등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전문검토기관, 지역주민, 민간단체, 관계전문가, 승인기관, 사업자, 환경영향평가업자 등과 함께 사업지역에 대한 합동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동 조사 시 협의기관장은 환경영향평가서 등에서 추가로 조사가 필요하거나 보완할 사항 등에 대해 사업자(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요구 또는 협의할 수 있습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환경영향평가서 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 28

## 사전공사 사업장에 대한 협의 기준 문의

분야 자연보전

담당 부서 환경영향평가과

### 질의내용



☑️ 사전공사부분에 관한 승인기관장 등의 협의내용 수용 기준에 대해 알려주세요.

### 답변



- 「환경영향평가서 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제16조제4항에 따라 협의기관장은 사전 공사를 시행한 사업에 대한 평가서를 접수한 때에는 승인기관장 등에게 사전공사 부분에 관한 협의내용의 수용 여부를 물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협의내용의 수용 여부는 승인기관장 등이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사항이므로, 판단기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개별 사업의 승인기관으로 문의하여야 합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환경영향평가서 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29

## 환경영향평가서 등 보완 시 공휴일 및 토요일 산입 여부

분야 자연보전

담당 부서 환경영향평가과

### 질의내용



- ☑ 「환경영향평가서 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제14조제2호타목의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보완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1년’에 공휴일 및 토요일 산입 여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 답변



- 「환경영향평가서 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제4조제2항은 공휴일 및 토요일은 협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이하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 모든 기간의 산정에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동 규정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기간의 산정 시 공휴일 및 토요일을 산입하지 않습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환경영향평가서 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30

## 연안육역 포함 사업의 반려 사유

분야 자연보전

담당 부서 환경영향평가과

### 질의내용



- 연안육역을 포함하는 사업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해양환경을 평가 항목으로 설정하지 않거나, 해양환경 현황조사를 하지 않거나, 해양환경에 대한 환경영향 예측을 하지 않은 경우 「환경영향평가서 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제14조에 따른 반려 사유 해당 여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 답변



- 환경부 장관은 연안육역이 포함되어 있는 환경영향평가서 등을 검토할 때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17조, 제28조, 제45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해양수산부 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 따라서, 연안육역을 포함하는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 등에 해양환경에 대한 영향 예측이 누락 되어 평가서 등의 정상적인 검토가 불가할 경우, 협의기관은 「환경영향평가서 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에 따라 누락 사항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서 등에 대한 반려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서 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제14조 및 제15조

# 31

## 생태자연도 등급의 적용 시점

분야 자연보전

담당 부서 환경영향평가과

### 질의내용



- ☑ 「전국 생태·자연도 고시」에서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고시일 이전에 제출된 환경영향평가서 등(준비서 포함)은 종전의 고시에 따른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개발사업의 평가 용역 계약 체결 및 승인기관 접수 이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중에 사업 부지 내 일부 면적의 생태자연도 등급이 변경된 경우, 작성 중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변경 고시 적용 여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 답변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사업의 경우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제출은 「환경영향평가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승인기관장 등이 환경부 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한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 따라서, 생태자연도 등급은 환경영향평가 용역 계약일 및 개발행위 허가 신청일 기준이 아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일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환경영향평가법」 제44조 및 제45조

# 32

## 환경영향평가 절차 중 생태자연도 변경 고시의 적용 여부

분야 자연보전

담당 부서 환경영향평가과

### 질의내용



- ✔ 「전국 생태·자연도 고시」에서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고시일 이전에 제출된 환경영향평가서 등(준비서 포함)은 종전의 고시에 따른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개발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제출 및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완료 이후, 본안 협의 예정인 시점에 사업 부지 내 일부 면적의 생태자연도 등급이 1등급으로 변경 고시된 경우, 진행 중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등의 변경 고시 적용 여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 답변



- 「환경영향평가서 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제25조제4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별표 2의2], [별표 3], [별표 4]에 해당되는 개발기본계획 또는 대상사업의 생태자연도는 「전국 생태·자연도 고시」 규정에 따릅니다.
- 「전국 생태·자연도 고시」 부칙에 따라 고시일 이전에 제출된 환경영향평가서 등(준비서 포함)은 종전의 고시에 따라야 하므로,
  - 전략환경영향평가서(평가준비서 포함)가 고시일 이전에 제출되었다면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는 종전의 고시에 따라야 합니다.
- 다만, 현지의 식생 등이 1등급 권역의 고시 등급과 현저히 차이가 있는 경우, 현재의 식생보전등급, 동·식물상 서식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협의할 수 있습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환경영향평가서 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제25조

# 33

## 환경영향평가 취하 후 재평가 시 기존 자료 활용 여부

분야 자연보전

담당 부서 환경영향평가과

### 질의내용



- ✔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절차 이행 중 자진 취하 후, 신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이행 중입니다.  
 사업자와 사업대상지는 동일한 경우, 기존 평가업체가 대기질 현황조사 한 자료를 신규 평가업체가 현지조사 또는 문헌조사 자료로 활용 가능한가요?

### 답변



-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에 따라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방법 등을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환경영향평가 절차 자진 취하 후 신규 평가 절차 이행 중 기존 평가업체의 현황조사 자료의 활용 여부는 동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 심의·결정하여야 합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

# 34

## 열병합발전소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유효 기간

분야 자연보전

담당 부서 환경영향평가과

### 질의내용



- 열병합발전소 환경영향평가 시 완공 후 발전 단계에서의 NOx, 미세먼지 등 누적되는 영향의 평가 여부 및 협의 이후 5년이 지난 시점에서 평가의 유효성 여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 답변



-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에 따라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방법 등을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개별 사업별로 환경영향평가 시 평가하는 항목은 상이할 수 있으나, 문의 대상 사업의 경우 평가 당시 NOx, 미세먼지, CO 등에 대한 누적영향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은 사업계획 등의 변경 사항이 없는 경우 유효합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

# VIII

## 자원순환

2025 질의회신 사례집

1. 자원순환정책과
2. 폐자원관리과
3. 생활폐기물과
4. 자원재활용과
5. 폐자원에너지과

# 01

## 과대포장 과태료 관련 문의

분야 자원순환

담당 부서 자원순환정책과

### 문의내용



☑ 과대포장 지도점검의 절차와 기준 위반 시 어떠한 처분을 받는지 알려주세요.

### 답변



- 제품포장 기준 위반이 의심되는 제품은 지자체에서 검사성적서 제출을 명합니다. 제출 명령을 받은 업체는 관련 제품을 전문검사기관으로 보내어 검사 후 발행한 검사성적서를 검사를 명한 기관(지자체)에게 제출(20일 이내)해야 하며, 검사결과 기준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전문검사기관은 환경부에서 지정한 기관을 말하며,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친환경포장기술시험연구원”이 있습니다.
- 포장기준을 위반한 제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라 법령 위반 횟수별로 과태료가 부과(1차 : 100만 원, 2차 : 200만 원, 3차 : 300만 원)되며, 위반 횟수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

## 02

# 포장제품의 재포장 관련 문의

분야 자원순환

담당 부서 자원순환정책과

## 문의내용



☑ 포장방법 기준과 재포장 금지 기준을 모두 준수해야 하나요?

## 답변



- 포장방법은 제품의 포장 시 불필요한 포장을 억제하는 것이며, 재포장은 유통과정 등에서의 추가적인 포장을 규제하는 것으로 각각을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낱개로 판매되는 제품 2개를 합성수지 재질로 포장한 형태는 포장횟수는 기준 이내(종합제품 1차)지만, 재포장에 해당합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 고시」 제2조

# 03

## 폐기물 해당 여부 문의

분야 자원순환

담당 부서 자원순환정책과

### 질의내용



- ☑ 미강(쌀겨)을 원료로 단미사료 및 사료 제조업을 할 때 미강(쌀겨)을 식물성 잔재물인 폐기물로 보고 폐기물재활용업 허가를 득해야 하나요?

### 답변



-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라 폐기물이란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곡물 도정과정에서 당해 사업장에서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부산물로 발생하는 미강(쌀겨)은 폐기물에 해당되므로 사용량과 재활용 용도 등에 따라 재활용업 허가(법 제25조)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법 제46조)가 필요합니다.
- 다만, 폐기물 중 유해성이 낮고 유가성이 높아 「순환경제기본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순환자원 인정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은 물질 또는 물건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규제(보관, 수집운반 및 처리기준 등)를 면제하는 순환자원 인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 ①유해성 低, ②경제성 高, ③소각·매립·해역배출, 에너지회수·연료화, 매체접촉형 재활용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환경부 고시 기준 및 용도에 따라 사용
- 순환자원 인정 업무는 유역(지방)환경청에서 담당하므로, 구체적인 순환자원 인정 대상 여부와 절차 등에 대해서는 순환자원 인정 신청서 및 필요서류(순환자원의 생산·관리계획서 등)를 첨부하여 해당 폐기물 발생 지역을 관할하는 유역(지방)환경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폐기물관리법」 제2조,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1조

# 04

## 순환자원 인정된 원료의 식품원료 사용 가능 여부

분야 자원순환

담당 부서 자원순환정책과

### 질의내용



-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르면 순환자원 인정제도가 존재하는데 부산물 또는 폐기물로 분류된 원료가 순환자원으로 인정될 경우 해당 원료를 식품원료로 사용 가능한가요?

### 답변



- 식품이나 식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식품으로 등록하고 생산·가공·유통·판매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1조

# 05

## 순환자원 인정 신청 가능 여부

분야 자원순환

담당 부서 자원순환정책과

### 질의내용



- ☑ 「자원재활용법」에 따른 재활용제품 또는 「환경기술산업법」에 따른 환경표지인증 제품도 순환자원 인정 신청이 가능한가요?

### 답변



- 순환자원 인정제도는 폐기물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1조에 따른 기준\*에 모두 적합한 경우에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수집·운반·보관·처리 등의 규제에서 제외되는 제도입니다.
  - \* ①유해성 低, ②경제성 高, ③소각·매립·해역배출, 에너지회수·연료화, 매체접촉형 재활용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환경부 고시 기준 및 용도에 따라 사용
- 따라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재활용제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은 타 법령에 의해 제품으로 인증받아 폐기물이 아니므로, 순환자원 인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1조

# 06

## 폐기물처리업 적합성확인제도의 유효기간 산정

분야 자원순환

담당 부서 폐자원관리과

### 질의내용



- ☑ 폐기물처리업 적합성확인제도의 유효기간 산정과 관련하여 경고처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한가요?

### 답변



- 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확인 유효기간 중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과태료 부과처분 제외)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적이 없다면,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을 1회에 한해 2년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이 경고(행정처분)를 받은 이력이 있다면 유효기간 연장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2 별표5의3 및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VII.

# 07

## 건설폐기물 처리비용 부담주체

분야 자원순환

담당 부서 폐자원관리과

### 질의내용



- ☑ 당 현장은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현장으로 건설폐기물은 발주처에서 처리용역을 분리발주하여 처리중에 있으나, 발생량 증가로 추가 배출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때 발생량 초과분에 대한 처리비용 부담 주체가 발주처인지 시공사인지요?

### 답변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발주할 때에는 적절한 건설폐기물 처리비용을 반영하여야 하며, 추가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에 대해서도 배출자(발주자 또는 원도급자, 분리발주 공사의 경우 발주자)에게 배출자 신고 등의 처리책임이 있습니다.
- 다만, 추가 처리비용에 대한 부담주체는 계약 관련 다른 법령, 당사자 간의 계약조건, 폐기물이 추가 발생한 불가피한 사유 등 다양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주자, 시공사 등이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 08

## 건설폐기물 외부 보관 가능 여부

분야 자원순환

담당 부서 폐자원관리과

### 질의내용



- ☑️ 건설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공사현장이 협소하여 건설폐기물을 공사현장이 아닌 다른 곳에 보관[폐기물관리법 제13조(폐기물 처리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보관]이 가능한가요?

### 답변



- 건설폐기물 배출자가 당해 건설공사 현장의 부지 협소 등의 사유로 인근 장소를 건설폐기물 보관장소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소유이거나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사용 가능한 토지여야 합니다.
- 이 경우 관할 지자체에 폐기물 발생량, 보관방법 등을 포함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을 신고하고 이에 대한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 09

## 순환골재 재사용 가능 여부

분야 자원순환

담당 부서 폐자원관리과

### 질의내용



- ☑ 한번 포설한(사용한) 순환골재를 폐기물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다른 현장(인허가된 공사현장)에 성토용으로 사용 가능한가요?

### 답변



- 순환골재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용도별 순환골재 품질 기준에 적합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서 정하는 재활용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과거 필요한 용도에 따라 사용된 순환골재가 여전히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하면서 정해진 재활용 용도에 적합한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재사용할 수 있을 것이며, 품질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재활용 용도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로서 적정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

# 10

## 과거 매립된 폐기물의 처리

분야 자원순환

담당 부서 폐자원관리과

### 질의내용



- ☑ 당 현장은 ○○고속도로 건설현장으로, 공사 중 이전에 매립된 폐기물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경우 발견된 폐기물은 건설폐기물로 처리하여도 되는지요? 만약 건설폐기물이 아니라면 사업장 또는 생활폐기물로 처리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 답변



- 과거 매립(투기)된 폐기물이 발견되는 경우 그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9호에 따라 성상에 관계없이 5톤 이상은 사업장폐기물로, 5톤 미만은 생활폐기물로 분류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종류와 성질·상태별로 구분하여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자 신고를 하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에 맞게 적정 처리하여야 합니다.
- 또한,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건설공사현장에서 오염토양과 폐기물이 혼합되어 발생한 경우에는 오염토양과 폐기물을 분리하여 오염토양은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정화하고,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또는 「건설폐기물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폐기물이 이미 기존 토양과 불가분적인 일체가 되어 있다면 오염토양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폐기물관리법」 제2조

# 11

## 폐기물의 분류

분야 자원순환

담당 부서 폐자원관리과

### 질의내용



- ☑ 공공하수도 준설공사 작업 현장에서 하수도관을 통해 “준설토가 섞인 하수”를 세정하여 맨홀로 모아서 하수도준설차 탱크로 흡입하여, 이동한 후 중간 집하장에 임시보관 후 물기가 없으면 처리장으로 반출함, 이 경우 준설작업현장 하수관으로부터 중간집하장까지 수집된 <하수+준설토=준설토가 섞인 하수>는 폐기물인 “준설토”에 해당하나요?

### 답변



- 폐기물 분류는 폐기물 발생원, 성질과 상태, 유해물질 함유량 등을 감안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라 세부분류하고, 해당 항목이 없는 경우에는 가장 유사한 항목으로 분류하여야 합니다.
  - 하수관로 오수관거 등의 준설과정에서 발생하는 하수와 토사가 혼합되거나 오염된 상태의 토사는 “하수준설토(51-02-04)”로 분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사업장폐기물의 분류에 대한 세부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정보도서관 홈페이지 (<http://www.ecolibrary.me.go.kr>)의 NIER간행물원문 → NIER기타간행물 → 폐기물 분류체계 및 분류방법 설명서(20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의2 제1항

# 12

## 사업장폐기물 공동처리 관련

분야 자원순환

담당 부서 폐자원관리과

### 질의내용



- ☑ 하나의 건물에 여러 업체(사업장)가 입주한 경우, 해당 건물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개별 사업장 별로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요?

### 답변



- 해당 건물에 입주한 개별업체가 배출하는 폐기물을 내부관리규약 등에 의해 총괄 관리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을 총괄로 관리하는 자가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총괄 관리하지 않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업체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후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업체에 위탁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제9호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이 소량으로 발생하여 공동으로 수집·운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는 같은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공동 운영기구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수집, 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해당사항은 관할 지자체에서 관내 폐기물의 발생량, 수집·운반 및 처리실태 등 지역별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결정할 사항이니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의2 제1항

# 13

##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대상 여부

분야 자원순환

담당 부서 폐자원관리과

### 질의내용



- ✔ 제조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사업장 폐기물에 해당하나요?
- ✔ 사업장폐기물이라면 어떤 행정절차를 거쳐 처리해야 하나요?

### 답변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로서 일정량(배출 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해 1일 평균 100kg, 배출시설이 없고 1일 평균 300kg, 일련의 작업으로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5톤 등) 이상 배출한다면,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스스로 처리하거나 적정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등에게 위탁 처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같은 법 제18조 제3항 및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의 인계인수내용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 입력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에 따라 별지 제36호서식의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 다만,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 아닌 일반 사업장에서 폐기물이 1일 평균 300kg 미만 또는 일련의 작업으로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폐기물이 5톤 미만 발생할 경우에는 생활폐기물에 해당되며 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므로, 조례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에 대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의2 제1항

# 14

## 지정폐기물 처리종류 문의

분야 자원순환

담당 부서 폐자원관리과

### 질의내용



☑ 지정폐기물을 보관한 드럼통, 말통 등을 처리할 경우 처리방법을 알려주세요.

### 답변



- 지정폐기물이 아닌 물질에 지정폐기물 잔량이 남아 있거나, 묻어 있는 경우에는 담겨 있던 지정폐기물로 분류하여야 합니다.
- 이 경우에도 세척 등을 통해 지정폐기물 성분이 제거된다면 재질에 따라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분류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세척수는 폐수로 위탁처리하거나 해당 사업장에 관할 기관으로부터 그 처리를 인정받아 설치된 수질오염방지시설로 직유입처리 가능합니다.
-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폐유독물질은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을 폐기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처리하고자 하는 폐기물이 유독물질이 아닌 유독물질을 함유한 폐유기용제일 경우 폐유기용제로 분류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조 [별표1],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15

##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 대상 문의

분야 자원순환

담당 부서 폐자원관리과

### 질의내용



- ☑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 시 월평균 배출량 산정 방법을 알려주세요.

### 답변



-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 시 배출량 산정과 관련하여, 1년간 배출량을 기준으로 산정(조업 일수가 없는 월은 제외)하되, 일시적으로 폐기물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실제 폐기물이 발생하는 월을 기준으로 평균 발생량을 산정합니다.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및 처리계획확인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폐기물 종류에 따른 월 평균 또는 합계 월 평균 양을 확인 후 그 이상일 경우에는 지정폐기물 처리계획을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폐기물관리법」 제17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및 처리계획확인 업무처리지침’

# 16

## 의료폐기물 발생 기관 해당 여부 문의

분야 자원순환

담당 부서 폐자원관리과

### 질의내용



- ☑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업소인데 제품에 대한 병원성 미생물 검사에서 나오는 폐기물이 의료폐기물에 해당되나요?

### 답변



- 의료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3]에서 규정한 의료폐기물 발생기관에서 배출된 것으로서, 해당 기관이 의료기관 및 시험·검사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당 장소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의료폐기물이 아닌 사업장폐기물 또는 생활폐기물로 분류됩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4조 [별표 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3]

# 17

## 폐기물재활용업 허가 업체의 생활폐기물 처리 관련

분야 자원순환

담당 부서 생활폐기물과

### 질의내용



- ✓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를 득한 업체에서 변경허가를 통해 영업대상 폐기물에 생활폐기물을 추가할 수 있는지와 신규로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를 득하려는 업체에게 영업대상 폐기물에 생활폐기물을 포함시킬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 답변



- 폐기물 재활용업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제6호에 따른 변경신고를 통해 '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 대상 폐기물에 추가할 수 없습니다.
- 또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는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동 처리업 허가자에서 제외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폐기물관리법」 제25조

# 18

## 지방자치단체의 생활폐기물 처리대행 자격 관련

분야 자원순환

담당 부서 생활폐기물과

### 질의내용



- ❖ 지자체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분(소각)업자에게 생활폐기물을 '처리대행'하도록 함에 있어서도 폐기물중간처분(소각)업자가 반드시 생활폐기물에 대한 변경허가(영업대상폐기물에 생활폐기물 추가)를 받아야 하는지요?

### 답변



-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허가 및 처리 기준 등을 구분하여 정하고 있고, 허가받은 영업대상 폐기물에 생활폐기물을 처분대상 폐기물로 추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조제1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다만,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분(소각)업자에게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할 경우에는 대행의 성격상 그 업무의 주체는 여전히 지자체이므로 생활폐기물을 처분대상 폐기물로 추가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를 받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 경우에도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처리대상 폐기물의 처리 및 관리 기준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처리업자가 보유한 시설·장비로 처리가 가능한 폐기물에 한하여 처리 대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폐기물관리법」 제14조 및 제25조

# 19

## 폐기물 수출입 자격 요건

분야 자원순환

담당 부서 생활폐기물과

### 질의내용



☑ 폐기물취급자의 요건을 갖춰야만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수입할 수 있나요?

### 답변



- 폐기물의 수입은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제5조의2에 따라 폐기물취급자만 가능하며, 같은 법 제10조 및 제18조의2에 따른 수입허가 또는 신고절차를 거쳐 국내로 수입할 수 있습니다.
  -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폐기물취급자’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자, 폐기물처분업 또는 재활용업허가자, 폐기물처리신고자 등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다만, 폐기물취급자·무역업체·해외수출자 간 3자 계약에 의한 수입대행인 경우에는 폐기물취급자와 계약관계에 따라 수입을 대행하는 무역업체 등도 폐기물 수입허가(신고)증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폐기물 수입자 자격을 추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수입관련 3자간 계약서에는 폐기물취급자가 수입대행을 포함한 전 과정에 대해 책임을 확약한다는 내용 포함 필요)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0조, 제18조의2

분야 자원순환

담당 부서 생활폐기물과

## 질의내용



- ☑ 일본에서 폐기물 수입 시 추가로 해야 하는 절차를 알려주세요.

## 답변



- 일본에서 폐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폐기물의 방사성물질 비오염 확인서류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에 따라 해당 국가 및 국내 공인기관에서 발행한 방사능(Cs-134, Cs-137, I-131)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또한, 방사능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여 수입이 허가되거나 신고 수리된 폐기물을 국내 반입하려는 경우, 매 통관 시마다 방사성물질 간이측정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고시의 [서식1] ‘방사성물질 간이측정결과’에 수출업체가 작성하도록 안내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작성 방법은 [서식1]의 안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측정기기를 직접 구매하여 측정 가능)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8조의2,  
「수입폐기물의 방사성물질 비오염 확인서류에 관한 고시」 제2조 및 제3조

# 21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 문의

분야 자원순환

담당 부서 생활폐기물과

### 질의내용



- ☑ 폐기물을 재활용한 품목에 대해서도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나요?

### 답변



- 폐기물을 수출입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0조 및 18조의2에 따른 인허가를 득한 후 수출입이 가능합니다.
  - 다만,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3], [별표 1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의 방법으로 재활용하여 추가 가공 없이 원료 또는 제품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이 제외됩니다.
- ※ (참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3] 개정('25.2월 시행)으로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블랙파우더, 폐식용유 재활용 기준 신설(R-3-3)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8조의2

# 22

## 공공재활용기반시설 지하화 문의

분야 자원순환

담당 부서 생활폐기물과

### 질의내용



- ☑ 공공재활용기반시설은 주거지역 1Km 이내인 경우 지하화하도록 하는데, 여기서 주거지역의 의미와 기존시설도 지하화 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 답변



- 우리부에서는 지난 '22.11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주거 지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 지역에 선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지하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 이때 「국토계획법」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이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 '용도지역'의 일종으로서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말합니다.
- 또한 해당 규정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부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5.12.31.이후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에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9], 「생활폐기물 선별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제4조

# 23

## 공공재활용기반시설 운영위탁 자격 문의

분야 자원순환

담당 부서 생활폐기물과

### 질의내용



☑ 공공재활용기반시설을 운영·위탁받기 위해서 필요한 자격 요건을 알려주세요.

### 답변



- 폐기물관리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지자체장은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리·운영을 맡을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공공선별장의 운영 위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폐기물관리법」 제62조

# 24

## 광학선별기 범위에 관한 질의

분야 자원순환

담당 부서 생활폐기물과

### 질의내용



☑ 인공지능 광학선별로봇이 광학선별기에 해당하나요?

### 답변



- 공공선별시설은 생활폐기물 중 플라스틱 재질의 폐기물(PE, PP, PS, PET 등)을 광학적 방법으로 모두 선별할 수 있는 기계장치를 갖추어야 합니다.
- 선별로봇이 광학적 방법으로 선별대상 플라스틱류(PE, PP, PS, PET 등)를 모두 선별할 수 있는 기계장치인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광학적 기계 선별장치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9], 「생활폐기물 선별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제6조

# 25

## 업소용 음식물류폐기물 처리기의 배출방식

분야 자원순환

담당 부서 생활폐기물과

### 질의내용



- ☑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분쇄) 후 잔재물에 대해 고형물 회수 없이 전량 하수도로 흘려보내도 되나요?

### 답변



- 사료화·퇴비화 또는 부숙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로서, 일정 규모 미만 시설에서 재활용 하면서 그 재활용 과정을 거쳐 배출수와 함께 배출되는 고형물의 무게가 유입되는 고형물 무게의 100분의 20 미만이어야 하고, 나머지 고형물은 회수하여 폐기물로서 처리하여야 합니다.
- 여기서 일정 규모 미만 시설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3호가목1)부터 4)까지 및 같은 호 다목1)에 따른 규모 미만의 시설을 의미합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호

# 26

##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방법

분야 자원순환

담당 부서 생활폐기물과

### 질의내용



☑️ 집단급식소 등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폐기물은 폐기물 처리업체와 계약하여 처분해야 하나요?

### 답변



- 1일 평균 배출량이 300kg 미만 등으로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아닌 자가 배출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생활폐기물에 해당하며,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은 관할 지자체장이 처리하여야 합니다.
- 다만,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관할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할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에서의 자가처리 가능 여부 및 방법 등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같은 법 제15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에 따라 총급식인원 100인 이상의 집단급식소, 사업장규모 2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일반음식점 영업자 등은 발생하는 음식물류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

# 27

## 폐기물처리업에 등록된 자가 차량 이용범위

분야 자원순환

담당 부서 자원재활용과

### 질의내용



- ✔
 중간 재활용업에 등록된 수집 운반 차량이 중간가공폐기물을 최종 또는 종합 재활용업체로 납품을 해야 하는데 이용이 가능한지요?  
 - 중간재활용업에 등록된 수집 운반 차량은 현재 8대입니다. 이 차량으로 영업대상 폐기물만 수집 운반이란 해석이 지자체 별로 상이해서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어요.  
 - 중간재활용업에 등록된 차량으로 폐기물 수집 운반 또는 중간가공폐기물 납품도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 답변



- 폐기물 재활용업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득하지 않고 그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이 가능합니다.
- 또한,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1항을 살펴보면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중간가공폐기물, 잔재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제6호가목4)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그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사업장 밖으로 운반하는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발급받고 운반이 가능할 것입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6항, 제18조제1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분야 자원순환

담당 부서 자원재활용과

## 질의내용



-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1항 3호를 보면,  
 바.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증설, 개·보수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재활용 용량의 100분의 30 이상(금속을 회수하는 최종재활용업 또는 종합재활용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이상)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한다)이 있을 경우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변경 없이(증설x, 개보수x) 폐기물을 100분의 30 이상 변경하여 재활용할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나요?
- ☑ 그 밖의 방법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나요?

## 답변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제3호바목에 변경허가 대상은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증설, 개·보수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재활용 용량의 100분의 30 이상(금속을 회수하는 최종재활용업 또는 종합재활용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이상)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규정에서 ‘재활용 용량’은 허가증에 기재된 재활용시설의 ‘시간당 처리능력’에 따른 ‘1일 처리능력(실제 처리량을 의미하는 재활용양이 아님)’을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하며, ‘그 밖의 방법’은 ‘증설, 개·보수와 같이 재활용시설의 물리적·구조적·기능적 변경에 준하는 방법’으로 봐야 하므로 ‘재활용 용량이 아닌 가동시간을 증가시켜 처리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제3호

# 29

## 종합재활용업에서 가공시설을 폐쇄하고 중간가공폐기물만 생산하는 경우 허가사항

분야 자원순환

담당 부서 자원재활용과

### 질의내용



- ☑ 폐합성수지를 이용하여 펠릿을 만드는 사업장으로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득한 사업장에서 성형시설을 없애고, 분쇄품(중간가공폐기물)까지만 만들고자 할 경우 어떤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 답변



-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Ⅳ. 변경허가신청서 검토 / 5. 업무처리요령 / 마.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폐기물재활용시설의 신설 / 2) 검토사항을 살펴보면,
  -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사용을 끝내거나 폐쇄하여 기존의 재활용 유형 및 방법 등이 축소됨에 따라 종합재활용업에서 중간 또는 최종재활용업으로 업종이 달라지는 경우,
  - 시설의 변경없이 중간가공폐기물이 재활용환경성평가 등을 통해 재활용제품으로 인정되어 중간재활용업에서 최종 또는 종합재활용업으로 업종이 달라지는 경우 변경허가 대상에 해당됩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Ⅳ. 변경허가신청서 검토

분야 자원순환

담당 부서 자원재활용과

## 질의내용



- ☑ 과채가공품(정제) 식품을 PVC(Polyvinyl Chloride, 폴리염화 비닐)와 알루미늄호일을 사용하여 블리스터 압박포장(PTP, press through package) 하고자 하는데, PTP 포장도 PVC를 사용해서는 안되는 포장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 답변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른 「포장재의 재질·구조 기준」(이하 ‘기준’이라 함) 제3조제1항에서 재활용 과정에서 재활용이 극히 어렵거나 다른 재질과 혼입 시 문제를 유발하는 포장재 재질·구조 중 재활용이 용이한 대체재가 있는 폴리염화 비닐(PVC) 재질의 포장재 등은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제품의 기능에 장애 발생 등이 우려되는 경우 등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포장재의 사용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 내용의 PTP 압박 포장이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및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에 따른 식용 유지류의 포장에 사용되는 압박포장 형태의 포장재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 제3조제2항제1호 다목에 따라 폴리염화비닐 재질의 사용이 허용되고 있으나, 그 이외의 압박포장의 경우 PVC 재질 포장재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포장재의 재질·구조 기준」(환경부 고시) 제3조제1항

# 31

## 성토재·복토재로 사용 가능 여부

분야 자원순환

담당 부서 자원재활용과

### 질의내용



☑ 무기성오니류를 R-4-2 유형에 따라 골재 제품을 만들어 성토·복토용으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 답변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3제1호바목에 따르면 R-4-2 재활용 유형으로 골재 제품을 제조해 R-7 유형의 성토재·복토재 등으로 재활용하려는 경우에는 R-7-1, R-7-2, R-7-3, R-7-6 유형으로만 재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같은 별표 제2호나목2)가)(13)에 따르면 무기성오니를 R-7-1, R-7-2, R-7-3, R-7-6 유형의 용도에 사용되는 골재제품으로 재활용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별표 제2호 라목1)가)(3)의 기준에 적합한 무기성오니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 기준에 적합한 무기성오니는 하수준설토(고형물 중 유기성 물질의 함량이 7퍼센트 이하인 것만 해당), 토기·자기·내화물·시멘트·콘크리트·석제품의 제조 및 가공시설, 수도사업용 정수시설, 비금속광물 분쇄시설(굴착을 포함), 토사세척시설, 또는 농업활동 과정에서 배출된 농업용 폐플라스틱 필름·시트류를 분리·세척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 및 건설오니(건설공사의 세륜시설에서 발생하는 것만 해당)를 수분함량 70퍼센트 이하로 탈수·건조한 것만 해당합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2(폐기물의 재활용 유형별 세부분류), 별표 5의3(폐기물의 재활용 기준)

분야 자원순환

담당 부서 자원재활용과

## 질의내용



☑ 지렁이 분변토를 토지개량제로 사용하는 경우 작물 재배 용도로 사용 가능한가요?

## 답변



- 유기성오니, 음식물류 폐기물 등은 생물학적 폐기물처리시설, 부속시설, 지렁이 사육시설 또는 고화시설 등을 이용하여 부속토, 지렁이 분변토 또는 고화처리물을 생산하여 토지개량제 또는 매립시설 복토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비료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료 및 비료의 원료로 사용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이 고시를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사람의 식용 및 가축의 사료 생산을 목적으로 작물 등을 재배하는 토지 또는 농경지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 정원, 조경, 가로수 등의 토지개량, 도로절개지 및 매립시설 복토용, 골프장 토양 복원, 화훼단지 지력향상 등으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아울러, 사람의 식용 및 가축의 사료 생산을 목적의 작물 등을 재배하는 토지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R-5-1 유형으로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를 받아야 하며 「비료관리법」을 준수하여 비료를 생산하여야 합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3(폐기물의 재활용 기준), 「유기성오니 등을 토지개량제 및 매립시설 복토 용도로의 재활용 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0-71호)」 제3조 및 제7조 등

# 33

## 재활용환경성평가 대상 여부

분야 자원순환

담당 부서 자원재활용과

### 질의내용



- ☑ 재활용 대상부지가 떨어져 있는 경우 재활용환경성평가 대상 여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 답변



-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양이나 재활용 대상부지의 계획 면적이 재활용환경성평가 받은 규모 대비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 재활용 대상 폐기물이나 폐기물 혼합물의 양 또는 재활용 대상부지 면적을 평가 대상 규모 이상 증가시키려는 경우에는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를 기준으로 재활용 대상부지를 변경하여 각각 재활용하였고, 재활용 대상부지가 연접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재활용 행위로 판단하여 평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는 있으나,
- 해당 지역이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나 「산지관리법」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등을 동일한 사업자가 받아 해당 사업자가 직접 채석지역 하부복구지·저지대 채움재로 재활용하는 경우라면 재활용환경성평가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3(폐기물의 재활용 시 환경성평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5 (재활용환경성평가 대상),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부칙(환경부령 제664호, '16.7.21.)

# 34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분담금과 부과금의 차이

분야 자원순환

담당 부서 자원재활용과

### 질의내용



-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서 의무생산자가 납부하는 분담금과 재활용부과금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 답변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품목을 제조·수입(포장재는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판매업자 포함)하는 자(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는 재활용 의무가 부여됩니다.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자원재활용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활용의무를 공동으로 이행하고자 하는 경우 분담금을 재활용사업 공제조합에 내야 합니다.
-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자원재활용법」 제16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재활용사업 공제조합이 의무를 대행하지 아니한 경우, 「자원재활용법」 제19조에 따라 재활용의무량 중 재활용되지 아니한 폐기물의 재활용에 드는 비용에 그 100분의 30 이하의 금액을 더한 금액(재활용부과금)을 부과하여 징수합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 35

## 업소용 빈용기의 회수의무 주체

분야 자원순환

담당 부서 자원재활용과

### 질의내용



- ☑ 가정용·대형마트용·군납용 등이 아닌 업소용(표기가 없는 제품) 빈용기의 경우 소매업자가 회수해야 하나요?

### 답변



- 빈용기보증금제도의 경우 빈용기가 유통되는 경로를 통해 사용 완료된 빈용기를 회수하는 목적을 둔 사업으로, 각 용기가 유통된 방식으로 회수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5] 보증금대상사업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에 도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으로 “소매업자를 거치지 않고 판매된 제품의 빈용기는 도매업자가 직접 회수해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소매업자를 통해 판매되지 않은 유흥용(업소용) 빈용기의 경우 소매업자가 아닌 도매업자를 통해 회수되어야 합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5

# 36

## 포장재·제품을 주문제작(주문자상표부착, OEM)하여 판매할 경우 재활용의무 주체

분야 자원순환

담당 부서 자원재활용과

### 질의내용



-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의 대상인 포장재·제품을 주문자상표부착(OEM)으로 제작·수입·판매할 경우 재활용 의무 이행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 답변



-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를 말합니다.
- 「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42호) 제9조제3항에 따라 제조업자의 주문자상표부착(OEM)방식에 의한 출고량은 주문자가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따라서 해당 제품은 제조자가 아닌 주문자가 의무이행자가 되나, 제조자는 총출고량 중 주문자에게 납품한 물량과 자신이 직접 출고한 물량을 구분 기재하여야 합니다.(직접 출고한 물량에 대한 재활용 의무는 주문자가 아닌 제조·수입업자가 지게 됨.)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9조제3항

# 37

## 폐기물처리시설 현황 확인방법

분야 자원순환

담당 부서 폐자원에너지과

### 질의내용



☑ 소각, 매립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 현황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 답변



- 환경부에서는 매년 운영중인 폐기물처리시설 현황에 관하여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통계를 공개하고 있으며, 자료는 자원순환정보시스템([www.recycling-info.or.kr](http://www.recycling-info.or.kr))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자원순환정보시스템([www.recycling-info.or.kr](http://www.recycling-info.or.kr)) > 환경통계 정보 > 환경통계현황 >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폐기물관리법」 제57조

# 38

## 주변영향지역 중 간접 영향권 범위

분야 자원순환

담당 부서 폐자원에너지과

### 질의내용



- ☑ 주변영향지역 중 간접 영향권 범위 설정 시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매립시설은 2km 이내, 소각시설은 300m 이내로 설정해야 하나요?

### 답변



- 「폐기물시설축진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이하 “주변영향지역”)을 결정·고시해야 하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은 직접 영향권과 간접 영향권으로 구분됩니다.
- 이 중 간접 영향권은 폐기물매립시설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 또는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폐기물시설축진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환경상 영향을 조사한 결과 환경상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직접 영향권 외의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앞서 언급한 범위 밖의 지역도 포함시킬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폐기물시설축진법」 제17조

# 39

##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의미

분야 자원순환

담당 부서 폐자원에너지과

### 질의내용



☑ 주변영향지역 주민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만을 의미하나요?

### 답변



- 「폐기물시설축진법」 제17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이하 “주변영향지역”)을 결정·고시해야 합니다.
- 「폐기물시설축진법」에서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으나, 주변영향지역으로 결정·고시된 지역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폐기물시설축진법」 제17조

40

## 주변영향지역으로 이사 온 주민에 대한 지원

분야 자원순환

담당 부서 폐자원에너지과

### 질의내용



- ☑ 주변영향지역 결정·고시 후 이사 온 주민에 대해서도 주민지원기금을 통한 지원이 가능한가요?

### 답변



- 「폐기물시설축진법」 제17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이하 “주변영향지역”)을 결정·고시해야 합니다.
- 「폐기물시설축진법」 제21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해야 하며, 주민지원기금은 제22조에 따라 주변영향 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해야 합니다.
- 따라서 주변영향지역에 주민이 이사를 와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시설축진법」 제22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될 것입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폐기물시설축진법」 제22조

41

## 고형연료제품과 가축분뇨의 혼합 제조 가능 여부

분야 자원순환

담당 부서 폐자원에너지과

### 질의내용



- 고형연료제품, Bio-고형연료제품 제조시 가축분뇨와 유기성오니를 서로 혼합하여 제조할 수 있나요?

### 답변



- ‘고형연료제품’이란, 「자원재활용법」 제25조의4에 따라 고형연료제품 제조신고를 한 폐기물 재활용업체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제10호에서 정한 가연성폐기물을 사용하여 같은 법 제25조의5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제조한 재활용제품을 말합니다.
- 가축분뇨와 유기성오니는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별표1제10호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제조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연성 고형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으며, 따라서 이를 사용하여 고형연료 제품을 제조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자원재활용법」 제25조의4

# IX

## 환경보건

2025 질의회신 사례집

1. 환경보건정책과
2. 환경피해구제과
3. 화학물질정책과
4. 화학제품관리과
5. 화학안전과

# 01

## 어린이활동공간 실내공기질 안전기준

분야 환경보건

담당 부서 환경보건정책과

### 질의내용



- ☑ 「환경보건법」 상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중에 실내공기질 안전기준이 있고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도 430㎡ 이상 되는 어린이집, 키즈카페 등에 「환경보건법」과 동일한 안전기준(유지 및 권고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감독기관의 지도·점검 행정 효율성을 고려해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실내공기질을 관리하고 있는 430㎡ 이상 되는 어린이집, 키즈카페 등은 「환경보건법」 상 환경안전관리기준(실내공기질 안전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보아도 되나요?

### 답변



- 어린이활동공간 실내공기질 안전기준 준수와 관련해 「환경보건법」과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일부 중복된다는 지적이 있어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제도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해 감독기관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환경부 제13차 적극행정위원회에서 개선안을 심의 의결, '21.8)
-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최근 1년) 및 권고(최근 2년) 기준을 준수한 시설은 「환경보건법」 상 실내공기질 안전기준 준수 시설로 볼 수 있습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환경보건법」 제23조,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6조 [별표 2]

## 02

#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분야 환경보건

담당 부서 환경보건정책과

## 질의내용



- ☑ 내·외부 시설 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대표자가 변경되었거나, 관리주체(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 답변



- 과거에 확인검사를 받은 이력(합격)이 있거나 지도·점검에서 합격한 시설로서 단순히 대표자 또는 관리주체가 변경된 경우라면 이를 신축 시설로 보지 않기 때문에 확인검사 대상이 아닙니다.
- 하지만, 시설 노후화로 인한 환경유해인자 노출이 우려된다고 판단하면 감독기관은 다가오는 지도·점검 시 해당 시설을 포함하여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환경보건법」 제23조,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1조의2

# 03

##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함유 표시제도

분야 환경보건

담당 부서 환경보건정책과

### 질의내용



☑ 「환경보건법」 상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함유 표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 답변



- 「환경보건법」 제24조제10항에 따라 어린이용품을 제조·수입하는 경우 사용제한 환경유해인자(4종\*)의 함유 여부 및 함유량을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표시방법과 내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의 표시 도안 서식에 맞게 어린이용품에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 DNOP, DINP, TBT, 노닐페놀

- 다만, 다음 4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어린이용품으로서, 해당 법령에서 환경유해인자(4종)와 관련된 기준을 적용받는 어린이용품은 환경유해인자의 함유 표시 대상용품에서 제외됩니다.
  1.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어린이제품
  2.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 신고를 한 어린이제품
  3.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어린이제품
  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어린이용품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환경보건법」 제24조,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9조의2

# 04

##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지정 및 관리

분야 환경보건

담당 부서 환경피해구제과

### 질의내용



- ☑ 「석면안전관리법」 제23조에 따라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으로 지정될 경우 역할 등은 무엇이며, 석면건축물의 소유자가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석면건축물 관리업체에 맡겨 석면건축물을 관리하여도 되는지요?

### 답변



- 「석면안전관리법」 제23조에 따라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건축물의 소유자 본인, 해당 건축물의 점유자 또는 관리자 중에서 1명 이상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 ※ 동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르면 해당건축물의 점유자나 관리자를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으로 지정하는 경우 동의를 받아야 함
-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은 석면건축물에 대하여 6개월마다 석면건축물의 손상 상태 및 석면의 비산 가능성 등을 조사하여 보수, 밀봉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하며,
- 2년마다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여 측정결과 및 조치내용을 정보망의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합니다.
- 또한, 안전관리인으로 지정된 후 3개월 이내에 신규교육, 2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 따라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이 건축물 안전관리업무를 대행 하도록 하려는 경우 ①석면조사기관, ②석면해체·제거업자에 해당하는 자로 대행하여야 합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석면안전관리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제32조

# 05

## 석면비산정도 측정을 위한 석면건축자재 면적 계산

분야 환경보건

담당 부서 환경피해구제과

### 질의내용



- ☑ 복수의 건축물을 1건으로 묶어서 석면해체·제거할 경우, 개별 건축물별 석면건축자재 면적을 고려하여야 하는지, 복수의 건축물의 합산된 면적 기준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 답변



-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해체·제거작업을 하려는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0㎡ 이상인 경우, 석면의 비산정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지자체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복수의 건축물을 1건으로 묶어서 석면을 해체하는 경우, 각 석면해체 대상 건축물의 대지(건축물 대장상)가 접하고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대지가 일부라도 접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건축물의 석면 건축물 자재 면적을 모두 합산한 후 석면건축자재 면적이 500㎡ 이상일 경우에 석면비산정도를 측정하여야 합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

# 06

## 폐석면 임시보관장소 석면비산정도 측정

분야 환경보건

담당 부서 환경피해구제과

### 질의내용



- ☑ 석면해체·제거 작업을 종료하고 폐기물을 적법하게 포장한 후 사정상 반출하지 못하였을 경우 석면 분진의 비산이 없다고 판정될 경우에도 반출되는 날까지 비산 측정을 실시하여야 하는지요?

### 답변



- 「석면해체·제거 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관리를 위한 조사방법(환경부 고시 제2022-214호)」에 따르면,
  - 석면을 해체하는 작업, 석면폐기물 선별·분리, 밀폐한 비닐 등 불침투성 차단재 제거, 석면폐기물 반출 등 석면 비산을 유발할 수 있는 모든 행위가 '작업중'에 해당하므로
  - 석면해체·제거작업 종료 후 폐석면을 임시보관장소에 보관할 경우에도 폐기물 보관지점에 대한 석면 비산정도를 측정하여야 합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석면해체·제거 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관리를 위한 조사방법」(환경부 고시 제2022-214호) 제5조

# 07

## 우천 시 석면해체·제거 작업에 따른 석면 시료채취 여부

분야 환경보건

담당 부서 환경피해구제과

### 질의내용



- ☑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석면 비산정도 측정 관련 우천 시에 내부 철거작업이 진행되는 경우 외부 농도 측정이 불가능한데 측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 답변



-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석면비산농도 측정은 매일 실시하여야 하는데, 계속적인 비로 인해 측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건물 외부의 석면비산 농도 측정은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음압기 지점은 매우 중요한 지점이므로 비를 맞지 않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한 후 반드시 측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석면해체·제거 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관리를 위한 조사방법」(환경부 고시 제2022-214호) 제5조

# 08

##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인 지정 기준 및 감리원 배치기간

분야 환경보건

담당 부서 환경피해구제과

### 질의내용



- ☑ 석면해체·제거작업 시 감리인을 법적으로 지정해야하는 사업장 조건은 무엇이며, 감리원 배치기간을 알려주세요.

### 답변



-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제5항 및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환경부고시 제2020-264호)에 따르면,
  - 발주자는 철거 또는 해체하려는 건축물이나 설비에 석면이 함유된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가 사용된 사업장이거나, 석면 건축자재 면적이 800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에 대하여 감리인을 배치하여야 하며,
    - \* 최근 1년간 같은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제3항에 따라 신고된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있는 경우 이를 합산한 면적으로 함
  - 감리원은 비닐 등 불침투성 차단제로 밀폐하는 등의 준비작업을 착수하는 시점부터 석면해체 완료 후 폐기물이 적정하게 보관·처리되고 석면 잔재물이 없는 것으로 확인될 때까지 배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환경부고시 제2020-264호) 제3조(감리인 지정 및 배치기준) 제1항 및 제7항

# 09

##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관련법 적용 여부

분야 환경보건

담당 부서 환경피해구제과

### 질의내용



- ☑ 슬레이트 처리지원 대상으로 선정이 되면, 슬레이트 철거처리 공사시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 적용이 면제인가요?

### 답변



-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사람은 슬레이트 지붕 철거·처리비가 지원되는 것일 뿐, 사업수행시 슬레이트 해체·제거 등 규정과 관련하여서는 「산업안전보건법」(고용노동부), 폐슬레이트 수집·운반·보관·처리 등 규정과 관련하여서는 「폐기물관리법」(환경부), 건축물 신고·허가 등 규정과 관련하여서는 「건축법」 및 「건축물관리법」(국토교통부) 등이 정하는 규정과 절차 등은 모두 준수하여야 합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산업안전보건법」(고용노동부) 슬레이트 해체·제거 등 규정,  
 「폐기물관리법」(환경부) 폐슬레이트(지정폐기물) 수집·운반·보관·처리 등 규정,  
 「건축법」 및 「건축물관리법」(국토교통부) 건축물 신고·허가 등 규정

# 10

##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지원신청 절차

분야 환경보건

담당 부서 환경피해구제과

### 질의내용



- ☑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 지원대상 선정 및 진행 절차를 알려주세요.

### 답변



-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지원 신청자는 철거할 슬레이트 건축물이 소재한 지자체(시군구 또는 읍면동 사무소)에 지원 신청서 제출 → 지자체는 지원대상 여부 검토하여 확정 후 신청자에게 결과 통지 → 지자체가 선정한 공사업체가 슬레이트 지붕 면적조사 실시 → 정부 전체 공사비 안내와 공사일정 협의 → 철거공사 또는 지붕개량 시행의 절차대로 진행됩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슬레이트 처리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환경부) 1. 개요 - 5. 사업추진절차

# 11

## 환경책임보험 가입 및 납부 주체

분야 환경보건

담당 부서 환경피해구제과

### 질의내용



- ☑ 시설의 소유자 및 설치자는 지자체이고, 시설의 운영자는 민간 위탁 운영사인 경우 환경책임보험의 가입 및 납부 주체는 누구인가요?

### 답변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함) 제17조제1항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는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조제3호에서 사업자란 해당 시설에 대한 사실적 지배관계에 있는 시설의 소유자, 설치자 또는 운영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환경 관련 법령에서는 시설의 인·허가(신고, 변경 포함)를 받은 사업자를 해당 시설의 설치·운영자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해당 시설에 대한 인·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보험료는 소유자와 운영자가 서로 협의하여 그 비용을 분담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아울러, 법 제12조에 도급자가 수급자에게 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한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책임의 배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17조

# 12

## 환경책임보험 가입대상 시설 및 보장 범위

분야 환경보건

담당 부서 환경피해구제과

### 질의내용



- ✔ 동일 사업장 내에 의무가입 대상시설과 비대상 시설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험에 어떻게 가입해야 하나요?
- ✔ 비대상 시설로 인한 환경오염피해도 보장이 되는지요?

### 답변



-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환경책임보험 가입은 사업장 단위로 이루어지므로 의무가입 대상시설과 비대상시설이 혼재된 경우 모두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아울러, 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 따라 환경책임보험의 보장범위에는 의무가입 대상시설이 아닌 시설로 인한 환경오염피해에 대해서도 모두 포함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 13

## 인·허가 변경사항 발생 시 환경책임보험 갱신 시기

분야 환경보건

담당 부서 환경피해구제과

### 질의내용



- ☑ 배출되는 오염물질 추가 등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 인·허가를 먼저 진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보험계약 갱신을 먼저 진행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 답변



-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환경책임보험을 가입한 사업자는 해당 시설에 대하여 변경 인·허가를 받거나 변경 등록·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기존 환경책임보험 계약을 이에 적합하도록 변경하여야 합니다.
- 또한, 법 제19조제2항에 따르면 인·허가 기관은 해당 시설에 대한 변경 인허가(등록·신고 및 변경 포함) 시 이 법의 기준에 적합한 환경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배출물질 추가 등 변경 발생 시에는 해당사항을 반영하여 환경책임보험 계약을 먼저 갱신한 다음 변경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19조

# 14

## 휴업 사업장의 환경책임보험 가입 의무 발생 여부

분야 환경보건

담당 부서 환경피해구제과

### 질의내용



☑ 휴업(또는 미가동)하고 있는 사업장도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 답변



- 법 제17조제1항의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휴업 중에도 관리 부실에 따른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다만, 환경책임보험의 보장기간이 1년임을 고려할 때 휴업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보험의 보장효과가 저하될 수 있으므로, 1년 이상 휴업하는 사업장 중에서 사업장의 잔여 유해물질을 처분하거나 저장된 물질을 제거하는 등 위해성 방지 조치를 한 경우에는 환경책임보험 가입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17조

# 15

##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작성대상

분야 환경보건

담당 부서 화학물질정책과

### 질의내용



- ✓ 제조화학물질 확인 명세서 작성 대상 혼합물 제품 내 구성성분 A, B, C 가 있는데요, A의 함유량이 0.5%이며 5% 이상 함유 시 유독물질 대상입니다.  
(함유량이 적어서 혼합물은 유독물질 아님)  
이런 경우 확인내용에 유독물질은 "없음"으로 기재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확인을 위해 문의드립니다.

### 답변



- 「화학물질관리법」 제9조에 따른 화학물질확인 대상 화학물질은 해당 화학물질이나 그 성분이 기존/신규 화학물질 또는 유독물질 등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화학물질확인에 이용한 자료에는 제품내 구성성분 중 유독물질 등 유해화학 물질이 포함된 경우 기준고시 함량 미만이라도 반드시 해당 화학물질명과 함량을 밝혀야 합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 [별지 제1호서식]

# 16

## 유독물질 수입신고 면제 기준

분야 환경보건

담당 부서 화학물질정책과

### 질의내용



-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한물질 수입허가 및 유독물질 수입신고의 면제)  
2. 연간 100킬로그램 이하의 유독물질을 수입하려는 경우: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유독물질 수입신고의 기준에 대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 ✔ 연간 100킬로그램 이하의 유독물질의 기준은 '유독물질이 포함된 하나의 제품에 대한 연간 수입 예정량에 대한 기준'인지, '해당 사업장에서 연간 수입하고자 하는 유독물질이 포함된 전체 제품들에 대한 기준'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

### 답변



- 유독물질 수입신고는 유독물질 연간 수입총량이 100kg을 초과하려는 경우에 신고하는 것이며, 유독물질의 종류에 관계없이 동일연도에 수입했거나 수입 예정인 모든 유독물질 양을 합산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 아울러, 유독물질 함량기준 이상인 혼합물은 그 자체가 유독물질에 해당하므로 제품양을 기준으로 총량을 산정하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유해화학물질의 영업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3장

# 17

## 의약품 원료, 중간체 등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이행사항

분야 환경보건

담당 부서 화학물질정책과

### 질의내용



☑️ 의약품 원료, 중간체 등을 제조·수입하는 경우 화평법상 등록 등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나요?

### 답변



- 화평법 제3조에 따라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과 의약외품은 화평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의약품 원료 및 중간체 또한 의약품과 의약외품으로 인정된다면 화평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해당 물질이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으로 인정되는 용도 및 물질에 해당하지 않아 화평법을 적용하는 경우,
  - 화평법 제10조에 따라 연간 1톤 이상의 신규화학물질 또는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경우 제조 또는 수입 전에 등록하여야 하며, 연간 1톤 미만의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경우 제조 또는 수입하기 전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0조

# 18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화평법”) 상 등록 주체

분야 환경보건

담당 부서 화학물질정책과

### 질의내용



☑ 화학물질 등록·신고의 주체는 누구인가요?

### 답변



- 화학물질의 등록·신고는 화평법 제10조에 따라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가 이행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화학물질을 국외로부터 국내에 반입하려는 자(관세법 제19조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등록 등의 의무를 가집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관세법」 제19조

# 19

## PCBs 함유기기 폐기 관련 문의

분야 환경보건

담당 부서 화학물질정책과

### 질의내용



- ☑ 관리대상기기로 신고한 변압기 등을 2027년부터 사용할 수 없는 것이 맞는지, 위 언급에 대한 근거를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는지요?

### 답변



- 스톡홀름협약 및 관련 법령(「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제13조제1항 및 「잔류성오염물질의 종류 및 특정면제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4-186호) 별표2에 따라,
- PCBs 농도 50ppm 이상을 함유하는 변압기 등 관리대상기기는 특정면제 종료일(25.12.31)까지 사용가능하며, 50ppm 미만 함유 변압기는 사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잔류성오염물질의 종류 및 특정면제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4-186호) [별표2]

20

## 국내 과불화합물 국내 규제 질문

분야 환경보건

담당 부서 화학물질정책과

### 질의내용



- ☑ 과불화합물(PFAS)의 국내 규제 현황을 알려주세요.

### 답변



-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를 위한 스톡홀름 협약의 등재물질 중 과불화합물은 PFOS(9종), PFOA(353종), PFHxS(147종)이며, 우리나라는 협약에 따라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3조에 근거하여 잔류성오염물질의 제조·수출입·사용을 금지 및 제한하고 있습니다.
- 이는 「잔류성오염물질의 종류 및 특정면제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4-186호) 별표2에서 해당 물질의 종류와 한시적인 허용 용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제13조

# 21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대상 여부 문의

분야 환경보건

담당 부서 화학제품관리과

### 질의내용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 대상인가요?

### 답변



- 환경부에서는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위해성이 인정된 탈취제, 살균제 등의 생활화학제품\*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 (생활화학제품)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으로서 사람이나 환경에 화학물질의 노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함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각 품목별 적용범위(정의, 용도 등)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환경부고시)」 [별표 2] 품목별 화학물질에 관한 안전기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참고로, 품목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 매뉴얼을 초록누리(화학제품관리시스템 - 종합자료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9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환경부고시)」 [별표 2]

# 22

## 살생물제품 승인 유예기간 문의

분야 환경보건

담당 부서 화학제품관리과

### 질의내용



☑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살생물제품의 승인유예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 답변



- 살생물제품에 포함된 모든 살생물물질이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에 해당할 경우 법 제18조제3항제3호에 따른 살생물물질의 승인유예기간의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까지 제품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해당 살생물제품을 제조, 수입할 수 있습니다.
- 단, 제품에 포함된 살생물물질 중 하나라도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간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화학제품안전법」 부칙 제3조제1항

# 23

## 살생물제품 판매 유효기간 문의

분야 환경보건

담당 부서 화학제품관리과

### 질의내용



☑ 살생물제품으로 기한내 승인받지 못할 경우, 기존 제품은 바로 회수해야 되나요?

### 답변



- 화학제품안전법(이하 ‘법’) 부칙 제4조의2에 따라 법 제35조의 판매금지 조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기한까지는 판매 또는 증여하거나, 판매 또는 증여의 목적으로 진열, 보관 또는 저장 가능합니다.
  - 법 부칙 제35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호에 따른 기간까지 제품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제조 또는 수입한 살생물제품 : 부칙 제3조제1항 각호에 따른 기간의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
- 상기 경과조치 규정이 적용되는 제품은 경과조치 규정이 만료되기 전에 모두 판매 또는 폐기되어야 합니다.
- 경과조치 이후 해당 미승인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37조에 따른 회수, 폐기명령 및 법 제5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화학제품안전법」 부칙 제4조의2 제1호

# 24

## 화학제품안전법 적용 범위

분야 환경보건

담당 부서 화학제품관리과

### 질의내용



☑️ 식품첨가물 살균제 제품이 화학제품안전법에 적용되나요?

### 답변



- 화학제품안전법(이하 법) 제5조제7호에 따라 식품위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식품첨가물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목적과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사용되는 경우에는 법을 적용하지 않으며,
  - 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라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법률에서 정하는 목적과 용도로 제조·수입·판매·사용되는 생활화학제품, 살생물제품 및 살생물처리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살생물물질 또는 살생물제품의 경우, 같은 법 제10조(안전기준의 확인 및 표시기준 등) 및 제3장(살생물제의 안전관리)을 적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법 제5조제1항 후단의 단서조항에 근거하여 적용제외 대상의 법률적 목적과 용도로 제조·수입·판매 또는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화학제품안전법의 대상이 됩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화학제품안전법」 법 제5조, 「화학제품안전법 시행령」 제1조의2

# 25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 표시·광고 문의

분야 환경보건

담당 부서 화학제품관리과

### 질의내용



☑ 천연 문구를 제품 광고에 사용하실 수 있나요?

### 답변



- 「화학제품안전법」 제34조(표시·광고의 제한) 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유통하는 자는 해당 제품을 포장하거나 광고하는 경우에는 사람·동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오해를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무독성”, “환경친화적”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문구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 또한, 「생활화학제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 제2조(표시·광고의 제한 내용)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1. 제품에 독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문구 : 독성없음(Non-Toxic, Toxic zero)
  2. 환경·자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없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문구 : 천연(함유물질이 100% 천연물질인 경우 제외), 그린, 에코, 환경을 생각, 자연주의, 자연유래·추출(자연에서 유래·추출한 물질명·함유량을 구체적으로 표시·광고하는 경우에는 제외), 순수, 순(함유물질이 다른 물질의 섞임없이 100% 같은 물질인 경우는 제외)
  3. 제품에 해로움이 없는 것으로 인식하게 하여 제품을 과도하게 사용하게 하거나 잘못된 사용방법을 유도할 수 있는 문구 : 인체에 영향이 없는, 안심, 유해물질 없음, 착한, 아이에게 안전, 아이보호
  4. 인체·동물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없는 것으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문구 : 웰빙, 사람을 생각, 건강까지 생각, 피부를 사랑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1호,  
 「생활화학제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제2조

# 26

## 생활화학제품 표시·광고 제한 여부

분야 환경보건

담당 부서 화학제품관리과

### 질의내용



☑ 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 시 항균 등 제품의 효과·효능을 표시·광고 할 수 있는지요?

### 답변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제품의 사용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유통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문구를 명확하고 알아보기 쉽게 제품의 광고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문구”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제품의 효과·효능을 알리는 문구 등이 해당합니다.
- 따라서, 법 제1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은 이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 제품의 효과·효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중 제품 내 살생물물질에 의한 제품의 효과·효능을 증명하는 확인서 사본)를 제출하여 신고한 후 표시·광고할 수 있습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2호

# 27

## 생활화학제품 필수 표시사항 문의

분야 환경보건

담당 부서 화학제품관리과

### 질의내용



- ☑ 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 시 제품에 표시하여야 하는 표시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 답변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기 전에 해당 품목의 안전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해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안전기준 적합확인을 받고 신고 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신고한 이후에 표시기준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에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5] Ⅰ. 공통 표시사항, Ⅱ. 제품별 특정 표시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환경부고시) 제6조 및 별표5

# 28

##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여 제품 제작 시 영업의 구분

분야 환경보건

담당 부서 화학안전과

### 질의내용



- ☑ 유해화학물질을 용기에 부어 뚜껑을 용접할 경우, 유해화학물질 제조업인가요, 사용업인가요?

### 답변



- 「화학물질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또는 비유해화학물질로 유해화학물질을 만들면 제조업, 유해화학물질로 비유해화학물질을 만들면 사용업으로 영업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 완제품에 일부 부품으로 포함되어 비산, 휘발, 기화, 유출 등에 의해 사람 및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이를 유해화학물질로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정상적인 취급과정에서 유해화학물질의 출입과 유·누출이 없는 기계 혹은 장치의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한 제작행위는 사용업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화학물질관리법」 제27조

# 29

## 유해화학물질 상·하차 시 입회자 범위

분야 환경보건

담당 부서 화학안전과

### 질의내용



- ☑ 유해화학물질을 상·하차 할 경우 운반자, 작업자, 관리자 등 3명 이상이 모두 입회해야 하나요?

### 답변



- 「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제4호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을 차에 싣거나 내릴 때나 다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로 옮길 때에는 해당 유해화학물질 1)운반자·2)작업자 외에 제32조에 따른 3)유해화학물질관리자 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지정하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은 자가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운반자 혹은 작업자 외 별도의 입회자(유해화학물질 관리자 혹은 관리자가 지정하는 안전교육을 받은 자)가 해당 작업에 입회하여 취급기준 준수, 개인보호장구 착용, 화학사고 발생신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최소 2명이 작업 현장에 참여해야 합니다. 참고로 중복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상위 1개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이면서 취급 담당자인 경우에는 관리자 과정 이수)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

30

## 유해화학물질을 포함한 지정폐기물 취급 과정 중의 「화학물질관리법」 적용 범위

분야 환경보건

담당 부서 화학안전과

### 질의내용



- ☑ 유해화학물질을 포함한 지정폐기물을 처분하고자 할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상의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 답변



- 「화학물질관리법」 개정('24.2.6. 시행)에 따라 화학물질관리법 적용범위에서 지정폐기물이 일부 제외되었습니다.
- 「화학물질관리법」 제3조(적용범위)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 (같은 법 제25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폐기물처리업에서 취급하는 경우로 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즉, 폐기물 수집운반, 중간처분업, 최종처분업, 종합처분업(이상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은 화학물질관리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화학물질관리법」 제3조

# 31

## 화학사고 즉시 신고 대상

분야 환경보건

담당 부서 화학안전과

### 질의내용



- ☑ 화학물질이 소규모로 유·누출된 상황 시 개인보호장구 착용 등으로 인명피해가 없고, 사업장 외부로의 확산도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이처럼 인명, 환경피해가 없어 화학사고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상황에서는 신고의 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나요?

### 답변



- 「화학사고 즉시 신고에 관한 규정」은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신속히 대응하여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 사고가 발생한 시점에는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형태(인명·환경피해, 사업장 외부 추가 유·누출 발생 등)를 예측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화학사고 여부에 대해 단순히 판단하는 것은 어려우며, 사고가 발생한 시점에서는 화학물질 유·누출량 범위 및 인명피해 여부에 대한 판단 없이 원칙적으로 「화학사고 즉시 신고에 관한 규정」 별표1제1호에 따른 상황별 신고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화학물질관리법」 제43조제2항, 「화학사고 즉시 신고에 관한 규정」 [별표1]

# 32

## 화학사고 즉시 신고 시점

분야 환경보건

담당 부서 화학안전과

### 질의내용



- ❖ 화학물질 유·누출로 해당물질이 근로자 신체에 접촉(뒹) 시 특별한 증상은 없었으나, 이후 이상증상으로 병원진료를 통한 병원 진단서 결과 피해 상황이 확인됨. 사고에 대한 신고를 사고가 발생한 상황에서 신고를 이행해야 하는지, 병원진료 결과 병원 진단서 내용이 확인된 시점으로부터 이행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 답변



- 화학사고의 즉시 신고는 화학물질 유·누출 발생 상황을 인지한 시점에 신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화학물질 유·누출에 따른 접촉이나 흡입으로 인한 이상증상을 인지한 경우, 「화학사고 즉시 신고에 관한 규정」 별표1제1호제거목에 따라 15분 이내에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 병원진단서는 인명피해를 증명하기 위한 객관적인 자료(상해의 종류 및 정도 등을 확인하기 위한 사후적 절차)이며, 인명피해 발생 인지 시점을 판단하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화학물질관리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 「화학사고 즉시 신고에 관한 규정」 [별표1]

# 33

## 유해화학물질 표시 기준

분야 환경보건

담당 부서 화학안전과

### 질의내용



- ❖ 취급하는 화학물질이 위험물이면서 유해화학물질로 분류된 물질을 용기(드럼 등)로 취급할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및 「위험물관리법」에 따라 모두 표시를 해야 하나요?

### 답변



-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유해화학물질의 표시방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 다만,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각 호의 표시 중 1호를 포함한 둘 이상의 표시를 하여야 하는 자가 소방청장이 환경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1호에 따라 표시를 하였을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에 따른 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에, 「화학물질의 용기·포장에 대한 표시방법」(환경부 고시) 제3조 및 별표1에 따른 표시사항을 표시하였을 경우 화학법 제16조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0조에 따른 표시를 한 것으로 볼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2조, 「화학물질의 용기·포장에 대한 표시방법」 제3조

# 34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점검

분야 환경보건

담당 부서 화학안전과

### 질의내용



-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별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관리 및 보관을 5년간 실시하여야 하는데 규모가 큰사업장의 경우 시설이 많은데 시설별로 각각 자체점검 대장을 관리하여야 하나요?

### 답변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동중단 또는 휴업 중인 자를 포함한다)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6조(취급시설 등의 자체점검)에 따라 주 1회 이상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취급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5년간 비치하여야 합니다.
  - 자체점검은 시설·설비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과도한 행정소요를 줄이고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장의 규모를 고려하여 일정구간·공간마다 시설·장비 유형별로 묶어서 자체점검대장을 관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화학물질관리법」 제26조

# 35

## 「화학물질관리법」 적용 범위

분야 환경보건

담당 부서 화학안전과

### 질의내용



☑ 특정 화학물질의 「화학물질관리법」 적용 여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 답변



- 「화학물질관리법」 제3조 각 호에 따른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화학물질관리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화학물질관리법」 제3조 각 호에 따른 화학물질 여부에 대해서는 각각의 관계 법률 검토 필요

-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3조 각 호에 따른 화학물질이라 하더라도, 「화학물질관리법」 제3조제3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에 관하여 각 관계 법률에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화학물질관리법」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제14조(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 제43조(화학 사고 발생신고), 제44조(화학사고 현장 대응) 등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화학물질관리법」 제3조

# 36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대상

분야 환경보건

담당 부서 화학안전과

### 질의내용



☑ 우리 사업장은 유해화학물질 AA를 ○○톤만큼 취급하는데, 화학사고예방관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 답변



-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 중 어느 하나라도 최대보유량이 하위 규정수량 이상일 경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 (규정수량)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의2](유해화학물질별 수량 기준),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참조
- 참고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대상 여부(변경제출 포함)인지 확인하고자 할 경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지원프로그램(KORA)” 내에 귀하 사업장의 설비형태, 취급 물질, 함량 등을 입력한 후, “제출수준 및 판정도구” 기능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 KORA 프로그램 및 안내서는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nics.me.go.kr)-자료마당-화학 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자료” 메뉴에서 다운로드 받으신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끝으로, 환경부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이행 지원을 위한 현장컨설팅(무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원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으신 경우, 한국환경공단 화학시설지원부(032-590-4836, 4986)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규정(법령, 고시 등)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2025  
질의회신 사례집

발행 : 환경부

편집 : 운영지원과(민원실)

발행일 : 2025년 7월

연락처 : 044-201-6373

인쇄 : 대양인쇄

# 2025 질의회신 사례집

